

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해외 입법례 연구

- 상사법원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연구보고서 상-25-02

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해외 입법례 연구

- 상사법원을 중심으로 -

2025. 6. 30.

2025년도 대법원 연구보고서

연구기관 : 한국법학원

연구책임 : 김배정 연구위원

감수 : 이진효 교수 (세명대학교)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상사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중재와 소송

제1절 개관	14
제2절 상사중재의 개념과 현황	15
I. 상사중재의 개념	15
1. 상사중재의 의의	15
2. 상사중재의 절차	16
II. 상사중재의 현황	20
III. 검토	21
제3절 상사소송의 개념과 현황	22
I. 상사소송의 개념	22
1. 상사소송의 의의	22
2. 상사소송의 종류	23
3. 비송사건의 소송화	24
II. 상사소송의 현황	26
1. 민사부 내 상사·기업 전담 재판부	26
2. 회사사건 가처분 접수 현황	28
III. 검토	29

제4절 소결 29

제3장

상사법원의 운영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제1절 개관 32

제2절 미국 35

- I. 개관 35
- II. 각 주별 상사법원의 구성 39
 - 1. 뉴욕 상사법원 39
 - 2. 델라웨어 상사법원 43
 - 3. 텍사스 상사법원 48
- III. 검토 66

제3절 싱가포르 66

- I. 개관 66
- II.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법적 지위 67
- III.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구성 68
 - 1. 상사사건의 범위 68
 - 2. 관할 및 이송 69
 - 3. 재판부의 구성 70
 - 4. 외국 변호사의 소송대리 72
 - 5. 판결문의 비밀유지명령 73
- IV. 검토 74

제4절 독일 74

- I. 개관 74

II. 법원조직법상 상사부에 관한 사항	76
1. 상사부의 법적 지위	76
2. 상사사건의 범위	76
3. 상사부의 관할	76
4. 상사법관의 자격	77
III. 독일의 상사법원 설립에 관한 법제도	78
1. 도입배경	78
2.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의 주요 내용	81
IV. 독일의 상사법원 설립 유형	85
1. 개관	85
2. 바덴뷔르템베르크 상사법원	86
3. 베를린 상사법원	88
4. 브레멘 상사법원	89
5.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상사법원	92
V. 검토	95
제5절 일본	96
I. 개관	96
II.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96
III. 비즈니스 코트	97
1. 현황	97
2. 관할 사건	99
IV. 검토	100
제6절 소결	101

제4장

상사법원의 설치에 관한 국내로의 시사점

제1절	개관	104
제2절	상사법원 도입시 시사점과 개정 제안	106
I.	상사사건의 범위 확정	106
1.	내용	106
2.	개정 제안	107
II.	상사법원의 유형	108
1.	내용	108
2.	개정 제안	109
III.	상사법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법정	110
1.	내용	110
2.	개정 제안	110
IV.	법정용어의 확대	112
1.	내용	112
2.	개정 제안	112
V.	상사법원 내 국제재판부 설치	114
1.	내용	114
2.	개정 제안	115
VI.	법관의 전문성 구축을 위한 전문가 지원제도의 내실화	116
1.	내용	116
2.	개정 제안	118
VII.	검토	121
제3절	소결	121

제5장 결론

결론	124
----------	-----

참고문헌

참고문헌	130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서론

제 1 절 | 연구의 목적

전문법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사법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문법원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기업환경 및 관련 법제의 변화에 따른 회사소송, 국제적 해상분쟁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의 법률 개정에 따라 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사법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전문법원 중에서도 상사법원의 도입 필요성과 국내로 도입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상사법원을 도입한 미국(뉴욕, 델라웨어, 텍사스)의 상사법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독일 상사법원, 일본 비즈니스 코트의 설립근거 법률과 사법제도를 포괄하여 비교·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상사법원의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법원조직법 및 대법원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전문법원으로서 상사법원의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기존 국제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상사중재와 상사법원에서 재판절차에 따라 다루어지는 상사소송에 관한 이론과 운영 현황을 검토한다. 이로써 상사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상사법원의 국제적 운영 현황과 근거 법률을 비교·검토한다. 주로 미국, 싱가포르, 독일,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다룬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 판례 등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관련 연구기관 및 외부 전문가¹⁾에 의한 감수를 통하여 최종 검토를 진행하였다.

1) 이진효 교수 (세명대학교)

제2장 상사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중재와 소송

제1절 개관

제2절 상사중재의 개념과 현황

제3절 상사소송의 개념과 현황

제4절 소결



제2장

상사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중재와 소송

제 1 절 | 개관

국제적인 기업경영에 있어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중재제도와 소송제도가 언급된다. 중재제도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에 따라 국제상사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 또는 국내 법원에서 소송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중재제도가 중립적이고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확정적 결과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재제도를 대체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의 소송제도를 택하는 경향이 다소 낮아진다.²⁾ 이에 따라 국제적인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제도를 활용할 때에는 ‘UNCITRAL Arbitration Rules(이하 ‘UNCITRAL 중재 규칙’이라 한다)’³⁾을 적용하여 왔다.⁴⁾

2) Viraj Fulena/Hemant Chitto, “International Commercial Litigation and Arbitration Research Essa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 Research Volume 06 Issue 02, IJSSHR, February 2023, p. 1315.

3) UNCITRAL 중재 규칙은 1976년 처음 채택되었으며, 중재당사자들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이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해결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1), 중재지(\$18)와 중재절차 중 사용할 언어(\$19)의 결정에 대한 유연성 등이 인정되고 최종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UNCITRAL, “UNCITRAL Arbitration Rules (2021)”, UNITED NATIONS Vienna, 2021).

4) 국내 중재사건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https://kcab.or.kr/data/rules_view.do?sb_seq=95&sb_clsfl=1&page=1&search_word_kind=titl&search_word=#a>

중재제도가 비용적 측면이나 분쟁해결시간을 단축한다는 측면 등에서 소송제도보다는 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업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의 내용이 종래의 계약상 이행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도 주주제안, 합병, 분할, 신주발행, 이사의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사항, 주주간 의결권 구속계약 등 회사법상 특징을 드러내는 분쟁들이 많아지고 있다.⁵⁾⁶⁾ 그에 따라 상사사건, 특히 기업 관련 분쟁에 관한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상사소송 전담재판부를 통하여 상사 관련 판결의 축적을 통해 상사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상사거래의 분쟁해결제도로서 이용되는 중재제도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상사법원의 심리대상인 상사소송의 개념과 현황을 검토한다.

제 2절 | 상사중재의 개념과 현황

1. 상사중재의 개념

1. 상사중재의 의미

상사중재란 무역분쟁 등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수출주

5) 송옥렬 외 2, “기업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소송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23-0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 3면.

6) 가령 기관투자자들이 스톱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업주(대주주)의 전횡적 경영을 방지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소송이나 다중대표소송과 같은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소송은 회사법상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이진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772면).

도형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높은 무역의존도를 가진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무역분쟁을 수반하게 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1966년 3월 중재법을 제정하고 국내 유일한 상설상사분쟁해결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설치함으로써 상사중재제도를 법제화하였다.⁷⁾

이에 따라 중재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 중재제도는 중재당사자들이 제3의 사인인 중재인에 의한 판정에 구속되기로 하는 합의로서 사적자치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않는다. 중재제도는 소송에 비해 비공식성, 증거선택의 비엄격성, 항소권한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낮고 신속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하지만, 제3의 사인인 중재인의 개입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재인의 역할과 자격은 중요한 요소이다.⁸⁾

2. 상사중재의 절차

(1) 중재절차의 의의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인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로, 소송과 같이 강제력이 아닌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에 기반을 둔다. 중재절차는 민사소송법 대신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며, 절차는 중재개시부터 중재판정에 이르기까지 진행된다. 중재는 중재기관이 개입하는 기관중재와 당사자 합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임시중재로 나뉘며, 국제·국내 중재, 상사·해사 중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⁹⁾

7) 최장호, “우리나라 기업의 상사분쟁 관리와 ADR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632면.

8) 이주원/신군재, “중재인의 중재절차 진행상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 대한상사중재원의 절차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2, 26면.

9) Ibid, p. 28.

(2) 중재절차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중재판정이 있기까지의 모든 진행과정을 의미한다. 중재신청은 소의 제기과 같이 시효의 중단효과가 있다고 보므로 중재절차의 시기와 종기는 중요하다.¹⁰⁾ 그러나 현재 중재법과 중재기관 규칙은 중재절차의 개시일에 관한 기준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즉 국내 중재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중재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정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¹¹⁾을 개시일로 본다. 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¹²⁾ 제14조 제3항에서는 ‘중재절차는 사무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시작된다’고 정하고 있고, 국제중재규칙¹³⁾ 제8조 제2항에서는 ‘중재절차 개시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모두 ‘사무국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중재절차의 개시일로 본다.¹⁴⁾ 이와 같이 중재법은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은 ‘사무국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중재절차의 개시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중재절차는 중재신청 → 중재인 선정 → 중재심리 → 중재판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중재인은 심리의 방식·일시·장소를 결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대등한 발언 및 방어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필요한 증거는 당사자 또는 스스로 수집할 수 있다. 구술심리

10) Ibid, p. 29.

11) 중재법상 중재요청서는 중재법에 따른 임의중재를 하는 경우 중재를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중재를 하자고 하는 요청서이며, 중재규칙상 중재신청서는 기관중재에서 중재규칙에 따른 기관중재의 경우 중재기관에 제출하는 중재신청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Ibid, p. 29).

12) 2025년 3월 1일 시행.

13) 2016년 6월 1일 시행.

14) 다만 국내중재규칙 제15조 제1항 전단에서 ‘피신청인은 제14조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의 접수사실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국제중재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피신청인은 사무국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사무국으로부터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은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의 기준일을 ‘사무국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아닌 ‘그 접수된 날을 사무국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함으로써 피신청인 간 중재절차에 임할 수 있는 기간에 불리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가 원칙이나, 합의시 서면심리도 가능하다. 심리가 종결되면 판정부는 판정을 내리고 판정문을 양측에 송달하며, 이로써 절차는 종료되는데, 구체적인 중재절차는 다음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절차도¹⁵⁾



(3) 중재인

중재인은 법관과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임되는 제3자로 상거래 경험이나 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지거나 법률전문가 등이 선임된다. 중재인의 권한은 당사자와의 계약에 따라 성립되며 이는 위임계약 또는 유상 용역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기관에서는 중재인의 전문성이 중재서비스의 척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중재인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판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고, 판정결과는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구속력을 갖는데, 이러한 중재인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즉 유상인 경우 고용계약, 무상인 경우 위임계약으로 보기도 하며, 중재당사자와 중재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되는 특수한

15) 김광수,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주요 기능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대한상사중재원, vol.129 Winter 2013, 83면.

위임계약, 중재인의 보수가 이들의 능력이나 분쟁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를 받는 용역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⁶⁾

중재인의 지위(권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살펴본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재인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임되기 때문에 공익의 수호자인 법관과 동일시하기 어렵는데, 국제상사중재에서 당사자자치를 제한하는 성격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과연 중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정립된 견해가 부재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¹⁷⁾ 대체로 국제적 강행규정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유형을 ① (유럽연합의 대리상지침에 따른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최우선강행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국제적 강행규정에 기한 청구가 소송물이 되는 경우, ②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서 전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소가 제기된 국가의 법규로 존재하는 경우, ③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청구의 당부가 달라지는 경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¹⁸⁾ 중재인 지위에 관한 논의가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위 세 가지 유형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에 따라 중재가능성과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중재에서 일정한 범위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적용 또는 고려될 수 있도록 하되, 중재판정의 취소단계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단계에서는 법원의 사후적 통제가 적용시켜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¹⁹⁾ 그러므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와 승인·집행거부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중재판정에 대한 실질재심사를 하는 것 보다는 중재에서 준거법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과 사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 내지 고려함으로써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한다.²⁰⁾

16) 김광수, 앞의 논문, 30-31면.

17) 김민경,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적 강행규정”,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359면.

18) 김민경, 위의 논문, 360-361면.

19) 김민경, 위의 논문, 369면.

20) 김민경, 위의 논문, 388면.

II. 상사중재의 현황

매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상사중재에 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재사건의 접수현황은 2020년 405건, 2021년 500건, 2022년 342건, 2023년 368건, 2024년 349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1] 최근 5년간 중재 접수실적²¹⁾

(단위 : 건, 억 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건수	349	368	342	500	405
금액	7,417	15,715	4,874	8,460	5,831

그러한 배경으로는 대체로 중재제도가 시간적 및 비용적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분쟁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²²⁾ 즉 투자중재의 경우 공정성, 투명성,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²³⁾

또한 중재를 선호하는 요인 중 하나는 신속한 해결을 위한 것이기에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를 신속절차와 일반절차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속절차는 원칙적으로 1인의 중재인과 국내중재의 경우 신청금액이 1억 원 이하 또는 국제중재의 경우 5억 원 이하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반면 일반절차는 1인 중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재절차와 3인 중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재절차로 구분되는데, 1인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신청금

21) 대한상사중재원, “2024년 클레임 통계”, 2025.03.03., 2면.

22) 투자분쟁절차는 통상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것이 아닌 투자자의 본국과 투자유치국 사이에 투자분쟁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투자협정이나 기타 조약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어 제한적이다. 통상 투자분쟁으로 투자유치국이 투자협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제기할 수 있고, 세계은행 산하의 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ICSID 사무국이 ICSID 협약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며, 그 외의 기관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대체로 상설중재재판소(PCA)를 사무국으로 하여 국제연합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한창완/김준우, “투자분쟁, 상사중재, 국내소송의 병행적 활용에 관한 소고”, 통상법률 통권 제160호, 법무부, 2023, 5면).

23) Stephan Wilsk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AND ARBITRATION — ALTERNATIVES, SUBSTITUTES OR TROJAN HORSE?”, 11(2) CONTEMP. ASIA ARB. J. 153, 2018, p. 155.

액은 국내중재시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국제중재시 5억 원을 초과해야 하며, 3인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신청금액은 국내중재시 5억 원 초과, 국제중재시 5억 원 초과사건 중 당사자합의 또는 사무국의 결정에 의할 수 있다. 대체로 신속절차 사건이 전체 접수사건의 51%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를 모두 포함하여, 2024년 상사중재의 평균처리일은 358일이고, 전년(289일) 대비 13.48%(69일)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연간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²⁴⁾

(단위 : 건, 일, %)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률	
	처리건수	평균처리일	처리건수	평균처리일	처리건수	평균처리일
국내	345	352	312	258	10.58	36.43
국제	59	389	44	513	34.09	-24.17
합계/평균	404	358	356	289	13.48	23.88

국내사건의 경우 2023년에는 258일이었으나, 2024년에는 352일로 증가하였다. 반면 국제사건의 경우 2023년에는 513일이었으나, 2024년에는 389일로 감소하였다. 국내사건의 경우 특히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한 요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상사분쟁이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도 고려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III. 검토

상사중재제도는 근 60년 동안 활용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자리잡았다. 이는 중재제도는 중재당사자가 직면한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관한 중재가 요구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점, 중재절차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른 기업의 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분쟁해결의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고, 무

24) 대한상사중재원, 위의 자료, 5면.

엇보다 법정지국과 집행국이 상이한 경우 뉴욕협약²⁵⁾에 따른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이 용이한 이점 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²⁶⁾

본 연구에서는 상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상사법원제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그들에게 발생한 분쟁상황에 적절한 구제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중재제도는 소송제도와 함께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제 3절 | 상사소송의 개념과 현황

1. 상사소송의 개념

1. 상사소송의 의의

상사소송이라는 용어에 관한 의미가 법률상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통상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소로써 다루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회사간 내지 회사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회사와 관련된 쟁점을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회사소송으로도 지칭될 수 있는데, 이 또한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며, 회사에 관한 상법 기타 특별법상의 법률문제를 쟁점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하는 강학상 용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회사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송당

25) 정식명칭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며, 뉴욕협약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작성되어 1959년 6월 7일 정식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1973년에 4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본 협약은 국내에서 1973년 2월 19일 제정되고 1973년 5월 9일 발효되었다. 협약 제1조 제1호 1문에서는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역 내에서 내려진 관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26) 본문의 출처원문과 외국의 중재제도에 관한 사항은, 김정환/박준선,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연구총서 2017-15, 사법정책연구원, 2017 참조.

사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법상 법률문제가 쟁점이 되는 소송을 포함한다.²⁷⁾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에서는 ‘회사등 관계소송등’에 관한 규정을 됴으므로 ‘회사관계소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회사관계소송이란 ①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서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가 있으며(제15조 제1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며(제15조 제3항), ③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15조 제3항).

그러나 상사소송, 회사소송, ‘기업과 관련된 분쟁’의 유형이나 범위를 확정하고 개념화 하는 작업은 어렵기에 ‘널리 기업이 당사자이면서 그 쟁점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로 현재 법원에서 상사전담 재판부에서 다루는 사건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²⁸⁾

2. 상사소송의 종류

소송의 종류는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구분되는데, 상법상 중요한 대부분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²⁹⁾ 주로 이행의 소는 명의 개서절차이행청구소송, 대표소송, 위법배당금반환청구소송이 해당되고, 확인의 소는 주주권확인 소,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부존재확인 소가 있으며, 형성의 소에는 회사설립 무효·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이사해임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 주식교환·이전무효의 소 등으로

27) 임재연, 『회사소송』 개정판, 박영사, 2014, 3면.

28) 송옥렬 외 2, 앞의 보고서, 7면.

29) 다만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부존재확인 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상법학계에서는 확인의 소로 보지만, 민사소송법학계에서는 형성의 소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 5365 판결에서는 확인의 소로 보지만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간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Ibid, pp. 5-6).

분류할 수 있다.³⁰⁾

3. 비송사건의 소송화

비송(非訟)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의 본질과 구별기준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 법원은 어떤 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정하는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그 사건을 비송사건으로 보고 있다.³¹⁾ 가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에서는 당사비송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제72조 내지 제108조), 사채에 관한 사건(제109조 내지 제116조),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제117조 내지 제128조)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비송사건절차법상 비송사건들은 소송사건들과 달리 분류되는데, 비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해야 하고(제11조),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며(제17조 제1항),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제19조 제1항). 비송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직권주의를 취하지만 소송사건은 변론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여러 종류의 절차적인 수단을 중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실상 개개의 사건들이 속성상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실무에서는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비송사건의 소송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회사와 관련된 비송사건으로는 가치분 신청이 상당한데, 경영권 분쟁 상황을 해결하거나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일시이사 선임 신청,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신청,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 등이 있다.³²⁾

30) Ibid, p. 6.

31) 강동욱/박성민, “상사비송사건의 소송화와 그 문제점”, 인권과 정의, 통권 431호, 대한변호사협회, 2013, 27-28면.

32) Ibid, pp. 31-33.

상사 관련 가처분, 즉 회사가처분의 본안소송화는 피해자 및 이해관계인의 손해가 크고, 원상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서 가처분의 본안소송화란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종국판결에 의해 권리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가처분이 사실상 본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³⁾ 우리법은 본안소송의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전에 당사자로 하여금 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고, 가처분은 다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재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현상의 진행을 본안의 확정판결 전까지 방지할 경우, 본안에서 승소했다라도 그동안 채권자가 입을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협에 처할 가능성을 예방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병행하게 된다. 이러한 보전소송은 신속성, 잠정성, 종속성(부수성)과 독립성, 재량성, 기습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중 회사가처분을 포함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보전처분의 보안소송에 대한 종속성과 잠정성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내려진 가처분결정과 본안소송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실상 회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의 경우 대체로 소수주주가 제기하게 되는 것이고 소수주주가 승소한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려우므로, 신주 발행금지가처분이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경우와 같이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애초에 채무자인 회사가 우려하는 상황(즉 채권자인 소수주주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상황)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가처분의 본안소송화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적용될 것은 아니고, 가처분제도의 신속성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판 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현행 가처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³⁴⁾

그러므로 상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중요성이 상당한 부분이며, 특히 회사와 관련된 가처분 사안은 개별주주의 이익 보다는 전체 주주 또는 회사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진행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사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더 나은 개선방안을 강

33) 윤은경, “회사소송연구 - 회사가처분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제8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19-220면.

34) 윤은경, 앞의 논문, 219-220면 및 226-227면.

구해야 한다.

II. 상사소송의 현황

1. 민사부 내 상사·기업 전담 재판부

우리 법원은 사건의 처리에 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특히 필요하거나 처리기준의 일관성 및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하여 각급 법원에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과 서울고등법원(민사항소)에서 전문분야가 상사·기업 등으로 지정된 재판부를 의미한다.³⁵⁾

각급 법원의 전문분야별 ‘상사·기업 사건’의 처리현황을 살펴본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상사·기업’분야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국제거래, 상사’로 포섭하여 통계를 내고 있으며, 기타항목에서 일부 법원에서는 기업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거래, 상사’분야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552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88건)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고, 조정으로 처리된 사건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표-3] 2023년도 각급 법원 전문분야별 사건처리 현황 (민사 및 기타)³⁶⁾

(2023. 12. 31.)

법원별	전문분야	민사							기타
		교통 /산재	노동	지적 재산	건설	언론 /환경	의료	국제거래 /상사	
서울고등법원	-	332	113	727	121	74	552	412	976
대전고등법원	-	49	-	-	-	8	-	-	-
대구고등법원	-	40	-	63	-	6	-	-	-
부산고등법원	-	32	2	-	8	13	2	-	17

35) 대법원, “2024 사법연감”, 212면.

36) 2025. 06. 29. 현재 대법원 사법연감 전자자료(237-238면)에 수록된 <별표 3-3> “2023년도 각급 법원 전문분야별 사건처리 현황” 중 민사 및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 일부만을 발췌함.

광주고등법원	-	20	-	-	-	7	-	-	-
수원고등법원	-	81	13	254	6	23	-	-	-
서울중앙지방법원	1,472	1,042	913	1,629	231	243	88	12,013	1,925 기업(민사)(989)
서울행정법원	-	-	-	-	-	-	-	-	6,157
서울동부지방법원	172	211	-	72	-	54	-	3,024	1
서울남부지방법원	127	130	-	-	20	41	-	3,997	147
서울북부지방법원	216	195	2	308	-	63	-	2,595	23
서울서부지방법원	76	137	15	258	54	59	32	1,987	20
의정부지방법원	72	187	-	471	-	17	12	776	52
인천지방법원	167	432	3	150	13	80	39	5,038	320
수원지방법원	-	56	25	141	1	14	95	4,597	195
대전지방법원	186	-	-	-	-	-	-	4,287	245
청주지방법원	-	11	-	133	-	11	-	1,308	16
대구지방법원	-	-	15	73	-	21	-	2,715	45
부산지방법원	159	343	28	324	8	41	4	1,893	49
울산지방법원	84	-	-	-	-	-	-	-	49 기업(2)
창원지방법원	55	103	4	161	-	23	-	1,723	
광주지방법원	283	-	6	412	6	8	-	2,123	
전주지방법원	62	-	-	-	-	-	-	1,422	
제주지방법원	-	34	-	126	-	1	-	134	

다음으로 민사부가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을 살펴본다. 민사본안사건 제1심의 경우 5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는 비율이 2020년에는 합의사건이 32.7%, 단독사건이 59.3%를 유지했으나, 2021년에 들어서는 합의사건이 27.1%, 단독사건은 58.2%로 낮아졌다. 또한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건 수의 경우에도 제1심 합의사건은 2020년에는 3천 건 가량(3,854건)이었으나 2021년에 들어서 5천 건 가량(4,898건)으로 증가하였다. 대체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통계는 일반 민사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상사소송(기업 관련 분쟁)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³⁷⁾

이에 상사·기업 전담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민사본안사건과 유사하게 처리기간이 지연되었다. 가령 제1심 첫 기일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평균적으로 5-6개월 이후로 지정되었으며,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신중한 재판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신속한 재판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³⁸⁾

2. 회사사건 가처분 접수 현황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상사소송에 관한 통계자료는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민사소송의 통계자료에 집계되어 제공되고 있어 그 정확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나마 다음과 같이 회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접수 통계 정도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표-4] 최근 5년간 지방법원 회사사건 가처분 접수 현황³⁹⁾

(단위 : 건)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합계	741	739	881	907	870

이러한 현황자료도 가처분의 유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각 법원별 접수 건수만 집계되고 있다 보니 그 변화추이에 따른 요인을 분석하기란 한계가 있다.

37) 송옥렬 외 2, 앞의 보고서, 14-15면.

38) Ibid, pp. 18-19.

39) 2025. 05. 20. 현재 대법원 사법연감 전자자료에서 2020년-2024년에 해당하는 각 연도별 사법연감 자료 중 회사사건에 해당하는 비송사건의 접수현황을 전국 지방법원의 합계내역만 발췌하였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719>>

III. 검토

국내에서는 상사소송이나 회사소송에 관한 확립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재판부도 민사부 내 상사·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고 있지만 기업과 관련한 분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처리되고 있고, 법원조직상 상사·기업 분야에는 전문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사소송의 절차나 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란 한계가 있다. 상사소송 내지 회사소송은 민사소송에 포섭되는 개념이지만 상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한지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연 상사법원이 전문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건 수요와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사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4절 | 소결

이 장에서는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재와 소송의 개념과 그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의 중재제도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상사중재는 국제적 상사분쟁을 포함한 해결방식으로 기능하기에 국제협약을 기초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상사법원에서 상사사건을 소송으로써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상사중재제도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떠한 분쟁해결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분쟁사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을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중재제도와 소송제도는 양립하여 존재할 필요가 있다.

중재제도는 사적자치에 기초한 분쟁해결방식이지만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질서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법원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와 법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원이 어느 정도 중재절차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국제중재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을 사법부의 법적 관점에 따른 오류를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고정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⁴⁰⁾

40) 김정환/박준선, 앞의 보고서, 217-218면.

제3장 상사법원의 운영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제3절 싱가포르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6절 소결



상사법원의 운영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제 1 절 | 개관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경영의 국제화가 당연시되면서 상사사건의 규모는 확장되고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된다. 그 이면에는 기업경영이 국내를 대상으로 하느냐 국제를 대상으로 하느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겠지만, 기업경영은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ESG 경영에 기초한 건실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환경적 요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나아가 이들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에 대한 책무를 가지며 수행된다. 이는 회사법이나 경쟁법, 기후 관련 법제 등 다양한 법률을 중첩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수반하기에 상사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에 따라 지난 20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는 국제상사법원⁴¹⁾을 설립하였다. 국제상사법원은 ‘국제적인’ 상사사건만을 관할로 하고 있으며, 주로 국제적 상사분쟁을 유치하고자 국제중재와의 관계를 염두하고 설립되고 있다.⁴²⁾ 즉 국제상사법원은 국제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제상사법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지만, 2019년 기준 11개의 국제상사법원이 설립되었다.

41)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상사법원은 조약에 따라 여러 나라가 모여 설립한 전통적인 국제법원이나 국제재판소의 지위를 가진다기보다는 몇몇 진취적인 국가가 기존의 자국 법원 산하에 설립한 국제상사전문재판부나 법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럼에도 두바이국제금융센터법원이나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전통적인 ‘국제법원이나 국제재판소’의 근접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별로 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김준기,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와 전망- 국제상사법원, 국제투자법원 및 국제중재의 비교고찰과 그 함의 -”, 비교사법 제28권 제3호, 한국사법학회, 2021, 314-315면).

42) 특히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그 예이다(송옥렬 외 2, 앞의 보고서, 121면).

[표-5] 전 세계 주요 국제상사법원⁴³⁾

설립연도	국제상사법원	관할권 / 지역
1895	런던 상사법원 (London Commercial Court, LCC)	영국 / 유럽
1995	뉴욕주 대법원 상사재판부 (Commercial Division of the New York State Supreme Court, NYCD)	미국 / 북미
2006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원 ⁴⁴⁾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 Court)	아랍에미리트 / 중동
2010	카타르 국제법원 및 분쟁해결센터 ⁴⁵⁾ (Qatar International Court and Dispute Resolution Centre, QIC)	카타르 / 중동
2015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ICC)	싱가포르 / 아시아
2015	아부다비 국제시장법원 (Abu Dhabi Global Market, ADGM Court)	아랍에미리트 / 중동
2017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법원 (The Kazakhstan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Court, AIFC)	카자흐스탄 / 아시아
2018	중국 국제상사법원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CICC)	중국 / 아시아
2018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국제상사분쟁조정위원회 (The Chamber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of the Frankfurt Regional Court, FRC)	독일 / 유럽
2018	파리국제법원 및 유럽상사법원 (International and European Commercial Chamber of the Paris Court, ICCP)	프랑스 / 유럽
2019	네덜란드 상사법원 (Netherlands Commercial Court, NCC)	네덜란드 / 유럽

43) Weixia Gu/Jacky Tam, “The Global Ri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Typology and Power Dynamics”,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No. 2, The University of Chicago, 2022, p. 448 “table 1 : An overview of the major ICCs across the globe” 인용.

44) 두바이국제금융센터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시에 설치된 금융 자유무역지대이다. 2006년 영어를 사용하는 보통법 재판소로서 DIFC 법원이 설치되었으며, 2015년 11월 법원행정처와 DIFC 법원 간 MOG(Memorandum of Guidance)를 체결한 바 있다(대한민국 법원, “법원행정처-DIFC 법원 간

이들 법원은 국제기구가 아닌 각 국가에 의해 설립된 사법기관으로써 국제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⁴⁶⁾⁴⁷⁾ 국제상사법원이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각광받는 이유는 국내 소송 절차와 국제중재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라는 점이다.⁴⁸⁾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설립되었기에 적어도 소송당사자 중 일방은 국제상사법원이 소재한 국가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자여야 하며, 상사분쟁(commercial matters)만을 심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재판부가 자국 법관과 외국의 법관을 포함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제상사분쟁의 중립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⁴⁹⁾⁵⁰⁾ ③ 소송당사자에게 중재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자율성에 미치지 않는 못하지만 기존 소송보다는 유연한 범위에서 자율성을 인정한다.⁵¹⁾ ④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법원에 등록된 외국 변호사로부터 소송상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법정언어를 영어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소송절차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사건의 유형이 비

MOG 체결”, 2015.11.04.). (최종방문 2025.06.25.)

<<https://www.scourt.go.kr/portal/news/ExchangeViewAction.work?gubun=18&seqnum=156>>

45) 2025년 6월 4일 QIC는 카타르 국제금융센터법원(Qatar Financial Centre Court, QFC Court), 즉 QFC민사상사법원과 규제재판소에 적용되는 규칙 및 절차를 개정한 바 있다.

<<https://www.qicdrc.gov.qa/media-center/news/qicdrc-introduces-new-rules-modernise-judicial-procedures-and-enhance-access>>

46) Man Yip/Giesela Rühl, “New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A Comparative Analysis - and a Tentative Look at Their Success”, UNIVERSITY OF OXFORD, 17 June 2024.

<<https://blogs.law.ox.ac.uk/oblb/blog-post/2024/06/new-international-commercial-courts-comparative-analysis-and-tentative-look>>

47) 국제상사법원의 설립경과, 소송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정환,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0-11, 사법정책연구원, 2020 참조.

48) Dalma R. DEMETER/Kayleigh M. SMITH, “The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on Arbit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October 2016, p. 442.

49) Stephan Wilske, op. cit., pp. 157-158.

50) 그런 중국 국제상사법원은 법관의 국적을 중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법부가 다소 경직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11조(1)). 그에 따라 국제상사전문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ercial Expert Committee)를 설립하여 국제상사분쟁을 조정하고 외국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다양성을 보완하고 있다(Stephan Wilske, op. cit., p. 178).

51) 중재는 중재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당사자의 자율성이 존중된다. 그에 따라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담당법관을 지정할 수 없지만 중재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 절차, 준거법 등을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인정된다(김정환, 앞의 보고서, 12면).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관할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개의 정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소송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별도의 불복절차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국제상사법원은 중재제도의 단심제에 국한되는 절차의 한계를 해소시킨다.⁵²⁾ 그밖에 국제상사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은 법원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과 관련된 지역 법조계와 일련의 서비스 제공업체(통번역사, 숙박업체, 회계 등)에 수익창출수단이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⁵³⁾ 이와 같은 국제상사법원의 특징을 통해 중재제도보다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국제상사법원의 일부를 포함하여 상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법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싱가포르, 독일, 일본 순으로 국가별 사례를 검토한다. 이들 국가는 상사법원⁵⁴⁾이나 상사재판부를 둬으로써 상사사건을 전문으로 심리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국제상사법원과 달리 국내 상사분쟁을 수렴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살펴본다.

제2절 | 미국

1. 개관

미국의 경우 상사법원에 관한 설명은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Chancery Court)으로부터 시작한다.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792년 설립되었고 그 자체가 상사법원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었지만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개시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성실의무, 직접강제, 기업회계 등과 같이) 회사법상 중요한 쟁점들이 형평법의 쟁점으로 다루어졌었기에 회

52) 김정환, 앞의 보고서, 16면.

53) Stephan Wilske, op. cit., p. 156.

54) 본 연구에서 상사법원이란 상사분쟁을 처리하는 법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의 사법체계 내에서 상사사건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화된 법원으로 정리한다(김효정, “상사법원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44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25, 139면).

사법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성을 인정받는 법원으로 자리잡았다.⁵⁵⁾

미국의 경우 상당히 많은 주에서 상사법원이 운영되고 있다(표-5).⁵⁶⁾ 여기에서 상사법원을 정의함에 있어 단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지 않고, ‘주 민사법원 수준에서 기업 및 상사소송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형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⁵⁷⁾ 그렇기에 상사법원 내지 상사사건 전담 재판부라고 볼 수 있는 형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⁵⁸⁾ 즉 ① 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상사법원, ② 상사사건 중에서도 ‘복잡한(complex)’ 상사사건만을 관할로 하는 복잡상사법원(complex business courts), ③ 다수당사자가 관련되고 내용이 복잡한 민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복잡민사법원(complex civil courts)도 다루는 소송의 상당 수가 상사사건이기에 상사법원의 범주로 설명되고 있다.⁵⁹⁾

①의 경우 상사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건유형의 목록과 최소분쟁규모가 제시되며, ②의 경우 사법 게이트키퍼에 의해 복잡한 상사사건으로 처리될지 여부가 결정되고, ③의 경우 노스캐롤라이나 주 상사법원이 혼합형 상사법원의 대표적 사례로 설명될 수 있다.⁶⁰⁾

55) 송옥렬 외 2, 앞의 보고서, 123면.

56) 모든 주에서 상사법원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가령 미네소타 주에서는 시범 프로젝트 일환으로 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는데, 대체로 상사법원은 2차적 사법시스템으로서 상사사건의 개인당사자 보다는 법인당사자에게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전문법원 자체는 법원 통합 및 단순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사법부는 이미 상사법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수한 사건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Ember Reichgott, “Business Courts: Efficient Justice or Two-tiered Elitism?”, William Mitchell Law Review Volume 24 Issue 2, 1998, pp. 317-318).

<<http://open.mitchellhamline.edu/wmlr/vol24/iss2/4>>

57) Lee Applebaum/Mitchell Bach/Eric Milby/Richard L. Renck, “Through the Decades: The Development of Business Court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Business Lawyer; Vol. 75, Summer 2020, p. 2054.

58) 유형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상사법원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요소를 가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 특징으로는 ① 기업이나 상사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관할한다는 점, ② 상사사건 전담법원이 단일 또는 복수로 존재한다는 점, ③ (상사사건 전담 법관이 이와 관련이 없는 민사 또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법원의 시스템과는 달리) 상사법원에서는 동일한 법관에 사건을 전담함으로써 소송 전과정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Ibid, p. 2054).

59) 송옥렬 외 2, 앞의 보고서, 124면.

60) Lee Applebaum/Mitchell Bach/Eric Milby/Richard L. Renck, op. cit., pp. 2055-2056.

[표-6] 미국 주요 주의 상사법원 현황⁶¹⁾

	설립연도	주(州)
1	1993	일리노이 ⁶²⁾
		뉴욕 ⁶³⁾
2	1995	노스캐롤라이나
3	1996	뉴저지
4	2000	펜실베이니아 ⁶⁴⁾
		매사추세츠
		네바다
5	2001	로드아일랜드
6	2003	메릴랜드
7	2004	플로리다
8	2005	조지아
9	2006	오리건
10	2007	콜로라도, 사우스캐롤라이나
11	2008	메인, 뉴햄프셔
12	2009	앨라배마, 오하이오
13	2010	델라웨어 ⁶⁵⁾
14	2012	미시간,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15	2015	애리조나, 테네시
16	2016	인디애나
17	2017	위스콘신
18	2019	와이오밍, 켄터키
19	-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66/67)}
20	2024	유타 ⁶⁸⁾ , 텍사스

- 61) Joseph R. Slight III/Elizabeth A. Powers, “Delaware Courts Continue to Excel in Business Litigation with the Success of the 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of the Superior Court”, *The Business Lawyer*; Vol. 70, Fall 2015, p. 1044; 송옥렬 외 2, 앞의 보고서, 124면 ‘<표 IV-2> 미국 주요 주의 상사법원 요약’을 인용하였으며, 일부 최근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 62) 최초의 상사법원으로 증권소송, 상사계약, 영업비밀, UCC, 상업용 부동산, 주주대표소송, 상사집단소송, 회계부정, 환경보험, 회사기관 사건을 다룬다. 그러나 일반보험, 변호사과오, 제조물책임, 의료과오, 부동산경매 사건은 제외한다.
- 63) 뉴욕 주 상사법원은 계약위반, 충실의무 위반, 부실표시, 상사불법행위, 회사의 위법행위 회사구조조정, 상사계약, 영업비밀, 재무제한특약, 근로계약, UCC, 상업용 부동산, 주주대표소송, 상사집단소송, 상사거래, 은행, 회사기관, 환경보험, 상사보험, 회사해산 사건은 포함하나, 전문가보수, 주거용부동산, 일반보험, 변호사과오 사건은 제외한다.

이하에서는 상사법원을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되는 뉴욕, 기업 관련하여 선구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진 델라웨어, 가장 최근 상사

- 64) 펜실베이니아 주 상사법원은 회사 내부 분쟁, UCC, 상사매매, 기업금융, 증권, 상사재산,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상사불법행위, 경업금지, 집단소송 주주대표소송 사건을 포함하나, 개인불법행위 또는 제조물책임 관련 집단소송, 강제중재, 거주안전, 환경, 공용수용, 전문가과오, 근로관계, 대리, 개인부동산, 신분관계 관련 분쟁은 제외한다.
- 65) 델라웨어 주는 2010년 일반법원(Superior Court)에 복합상사소송재판부(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CCLD)를 설립하였다.
- 66) 코네티컷 주의 경우 상사법원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기에 별도로 “상사법원”이라는 명칭의 법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상사 관련 복잡한 소송은 코네티컷 주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였다(Lee Applebaum/Mitchell Bach/Eric Milby/Richard L. Renck, op. cit., p. 2057). 그 이유는 코네티컷 주는 상사사건의 당사자가 다수이거나 복잡한 법률 또는 사실문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소송당사자가 당해 사건을 복잡소송절차(Complex Litigation Docket)로 회부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CLD양식(JD-CV-39)을 제출해야 하며, 요청 건당 약 335달러의 수수료가 발생됨), 코네티컷 주의 고등법원이 하트포드(Hartford), 스태포드(Stamford), 워터베리(Waterbury) 등 여러 사법관할구역에 심리대상사건목록(Docket)을 마련하여 다수의 소송당사자 및 법적 쟁점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규모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복잡한 소송” 사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ALFA International, “Connecticut_Business-Litigation_Compendium”, 2020, pp. 1-2).
- 67) 여기에서 “복잡소송절차(Complex Litigation Docket)”란 까다로운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코네티컷 주 법원행정처장이 설립한 제도이다. 복잡소송절차에 해당하는 소송사안인지 여부는 민사부 수석행정판사 또는 민사부 수석행정판사가 지정하는 기타 상급법원 판사가 여러 요소(가령 소송당사자의 수, 변호인의 수, 청구금액 및 청구내용, 예상기간, 법적 쟁점의 복잡성, 공판 전 절차의 범위와 복잡성, 복잡소송절차의 필요성, 소송관할구역에서의 분쟁해결대체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사건의 적격성을 결정할 수 있다(Connecticut Judicial Branch, “FACTS ABOUT THE CONNECTICUT JUDICIAL BRANCH COMPLEX LITIGATION DOCKET”, Rev. 6/5/18, 2018, pp. 1-2).
- <https://www.jud.ct.gov/external/super/FACTS_092020.pdf>
- 68) 유타 주의 경우 텍사스 주와 같이 2023년 상사법원 도입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2024년 시행되었다. 유타 주는 새로운 법원의 명칭을 고등법원의 지위를 가지는 ‘상사법원(Business and Chancery Court)’으로 지정하였으며, 2024년 가을 단독판사 체제로 출범하였다. 상사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당사자가 배심재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 진행시킬 수 있는데, 이는 상사법원이 유타 주의 지방법원과 주 전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최저소가는 \$300,000이며, 상업활동에 관련된 사건(가령 계약 및 신탁의무 위반, 내부 지배구조, 매각, 합병, 해산, 법정관리 또는 청산, 상사보험 관련 분쟁, 기밀유지계약, 프랜차이즈 분쟁, 블록체인 및 DAO 관련 분쟁, 주주대표소송 등)만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구두변론이 시작되기 최소 48시간 이전에 법원은 당사자에게 해당 청구에 대한 잠정적인 판결을 제공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과 명령은 유타 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고 있다(ABA, “Recent Developments in Business Courts 2024”, Mar 07, 2024).
- <https://www.americanbar.org/groups/business_law/resources/business-law-today/2024-march/recent-developments-business-courts-2024/>

법원을 도입했던 텍사스 등 세 곳에서의 상사법원 도입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II. 각 주별 상사법원의 구성

1. 뉴욕 상사법원

(1) 도입

뉴욕 주는 복잡한 상사소송의 지연, 고비용, 일관되지 않은 절차로 인한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5년 ‘상사재판부(Commercial Division)’를 정식 설치하였다.⁶⁹⁾ 초기 뉴욕 카운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상사소송을 전담하는 상사부(Commercial Part)를 민사재판부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하였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재판부는 상사사건 전담법관(Specialist Judge)을 지정함으로써 일반법관에 비해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다.⁷⁰⁾

(2) 관할

뉴욕은 11개 카운티에 상사재판부를 두고 있으며, 상사재판부에 제소 가능한 사건은 각 카운티별로 설정된 최저소가 및 사건의 상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⁷¹⁾ 즉 소가는 최저 \$50,000부터 최고 \$500,000까지 설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이자, 비용, 변호인 수수료를 제외시키고 있다(대법원 상사재판부 규칙 §202.70(a)).⁷²⁾

69) Lexology, The Commercial Division: Past, Present and Future, 2023.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553aa830-bcf5-4458-af3a-e0e2b75fc9f2>>

70) Ibid.

71) 고은정, “한국의 상사법원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0호, 법무부, 2022, 208면.

72) Section 202.70 Rules of the Commercial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https://ww2.nycourts.gov/rules/trialcourts/202.shtml#70>>

[표-7] 뉴욕 주 카운티별 최저소가 기준

	카운티	최저소가
1	Albany County	\$50,000
2	Bronx County	\$75,000
3	Eighth Judicial District (제8사법구역)	\$100,000
4	Kings County	\$150,000
5	Nassau County	\$200,000
6	New York County	\$500,000
7	Onondaga County	\$50,000
8	Queens County	\$100,000
9	Seventh Judicial District (제7사법구역)	\$50,000
10	Suffolk County	\$100,000
11	Westchester County	\$100,000

이와 같이 상사재판부에서 심리되는 상사사건은 금전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⁷³⁾ 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소송목적물의 가치(value of the object of the action)’로 측정한다. 즉 소송목적물의 가치는 상사재판부에서의 사건심리요청서와 상사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될 당시 소장에게 기재된 주장을 토대로 평가하는데, 이때 소송이 의도하는 이익의 가치, 보호되는 권리의 가치,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 중 가장 높은 가치를 소송목적물의 가치로 본다.

상사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12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202.70(b)), 세부사항으로는 ① 계약 또는 수탁의무 위반, 사기, 허위 진술, 불법행위(불공정경쟁 등) 또는 법률 위반(위반사항이 상사거래에서 발생했음이 주장되는 경우), ② 통일상법전이 규정하는 거래(개별 협동조합 또는 공동주택에 관한 거래는 제외함), ③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옐로스톤 금지명령을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 관련 거래를 의미하며⁷⁴⁾, 여기에는 임대료

73) §202.70(a)에서 정하는 최저소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주주대표소송, 상사집단소송, 해산(법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파트너십 및 합작사업), 「뉴욕 주 민사소송법 및 규칙(Civil Practice Law and Rules, CPLR)」 article 75(중재: section 7503)에 따른 중재의 중단 또는 강제 중재, 중재판정 및 관련 금지명령 구제신청의 승인 또는 거부, 해당 중재합의에서 미국 외의 영역에서 중재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202.70(b)(3), (4), (11) and (12)).

지급만을 위한 소송은 제외함), ④ 주주대표소송, ⑤ 상사집단소송, ⑥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관련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사거래, ⑦ 법인의 대내적 업무, ⑧ 회계사 또는 보험 계리사의 과실 및 상업적 문제에서 대리인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과실, ⑨ 환경보험, ⑩ 상사보험(이사 및 임원, 오류 및 누락, 사업중단 등에 따른 보험), ⑪ 해산, ⑫ 본조에서 언급한 상사거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및 규칙에 따른 중재절차를 중단 또는 강제하거나 중재판정 등에 따른 구제가 승인 또는 거부되거나, 중재합의가 미국 외의 영역에서 중재를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반면 상사재판부에서 심리하지 않는 사건은 7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202.70(c)), 세부사항으로는 ① 전문가 수수료 확보를 위한 소송, ②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에 따른 보험보장에 관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 ③ 주거용 부동산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상업용 부동산에 관한 사건, ④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개발계약, ⑤ 기본 사건의 성격과 관계없이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 ⑥ 보험사가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비상업적 보험을 해지하기 위한 제기된 소송, ⑦ §202.70(b)(8)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호사 과실에 관한 소송이 있다. 이들 사건은 최저소가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상사재판부에서 심리하지 않는다.

(3) 절차

대법원 상사재판부 규칙 §202.19에서는 효율적인 사건관리를 위하여 ‘차등적 사건관리(Differentiated Case Management)’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사건의 일정 및 증거처리 전략을 사전에 정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⁷⁵⁾ 사건관리는 예비회의(Preliminary Conference), 컴플라이언스 회의(Compliance Conference),

74) 미국의 엘로스톤 국립공원은 연약한 지반 아래에서 흐르는 열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법원은 제한구역에 무단 침입한 자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한국일보, “엘로스톤 출입금지 구역 들어갔다 징역형”, 2021.08.31.). (최종방문 2025.06.20.)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831/1378422>>

75)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Rules of the Commercial Division, 2022.

<<https://ww2.nycourts.gov/rules/trialcourts/202.shtml>>

기일 전 회의(Pretrial Conference) 절차로 나뉜다.

① 예비회의

상사재판부는 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예비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202.19(b)(1)), 당해 회의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신속(Expedited), 표준(Standard), 복잡(Complex) 사건으로 배정할 수 있다(§202.19(b)(2)).⁷⁶⁾ 이와 관련해서는 §202.70의 rule 7부터 rule 15가 적용되며, 신청절차는 §202.8 대신 §202.70의 rule 16부터 rule 24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⁷⁷⁾

② 컴플라이언스 회의

증거개시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기 전까지 증거개시절차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잠재적 합의안을 모색하며, 증거개시통지서 제출기한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202.19(b)(3)).

③ 기일 전 회의

기일 전 회의는 증거개시통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202.19(c)(1)), 기일 전 회의에서 법원은 회의일로부터 8주 이내에 기일을 정해야 한다 (§202.19(c)(2)).

(4) 검토

1995년 뉴욕 주 상사재판부 도입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은 사전관리회의를 통해 사건종결에 이르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⁷⁸⁾ 이 밖에도 뉴욕 카운티의 상사재판부에서는 조정 및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

76) 배정절차는 증거개시절차의 완료일정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속사건은 증거개시절차가 8개월 이내, 표준사건은 12개월 이내, 복잡사건은 15개월 이내 완료되어야 한다.

77) 고은정, 앞의 논문, 209면.

78) 김효정, 앞의 논문, 141면.

(ADR)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 이외의 해결 경로를 제도화하였는데,⁷⁹⁾ 이와 같이 ADR 요소를 기존 재판처리절차에 통합시킴으로써 원스톱 법률허브를 구축하였다.⁸⁰⁾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자소송(NYSCEF), 통합 일정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의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해 재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⁸¹⁾ 문서작성에 있어서도 서면 양식, 하이퍼링크 활용 등 전문적 형식을 표준화하여 재판의 신뢰성을 높였으며,⁸²⁾ 변호인에 대해서는 소송능력, 전문성, 준비수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⁸³⁾ 이와 같은 제도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상사법원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⁸⁴⁾ 델라웨어·미시간 등 타 주에서 유사한 모델의 상사법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⁸⁵⁾

2. 델라웨어 상사법원

(1) 도입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2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복잡한 기업법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부로 자리잡았지만, 이 법원의 관할권은 ‘형평(equity)’에 국한되기에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해결가능한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 관련 분쟁은 관할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델라웨어 고등법원은 형평법원과 달리 폭넓은 민사사건을 다루며, 판사 1인당 연평균 400건 이상의 민사사건과 수천 건의 중범죄 사건을 병행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

79) 2012년에 발표된 “21세기 상사소송 대책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뉴욕 카운티 상사재판부 사건 5건 중 1건은 반드시 ADR로 처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2014년 7월 28일부터 2016년 1월까지 시행하였다. 다만 이 제도를 상사재판부에 회부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ADR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시범사업은 종료하고 회부가능한 사건을 상사재판부에서 나아가 다른 재판부까지 확대하였다(고은정, 앞의 논문, 207-208면).

80) Weixia Gu/Jacky Tam, op. cit., pp. 458-459.

81)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Rules of the Commercial Division, 2022. <<https://ww2.nycourts.gov/rules/trialcourts/202.shtml>>

82) NY Courts, Style Guide for Commercial Division Briefs, 2020.

83) Commercial Division Rules, Rule 7(a), updated 2022.

84) ABA Business Law Section, Specialized Business Courts in the United States, 2021.

85) Ibid.

전까지 복잡한 상사사건들도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한 경로로 배당이 이루어지기에 사법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절차를 지연시키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2010년 5월 뉴캐슬 카운티 고등법원(New Castle County, NCC) 산하에 복잡상사소송부(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CCLD)를 설치하게 되었다.⁸⁶⁾

(2) 관할

가. 상사사건의 범위

복잡상사소송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으로는 기업 간 민사분쟁을 중심으로 하며, ① 소송당사자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이 \$1,000,000 이상인 사건, ② 법정합의에 따른 배타적 결정이나 그러한 결정에 의한 법원의 판결을 수반하는 사건, ③ 법원장이 복잡상사소송부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으로 지정한 사건(적격사건)이 해당된다. 이때 적격사건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은 소송당사자가 ‘민사사건 정보진술서(Superior Court Civil Case Information Statement, CIS)’⁸⁷⁾상 ‘민사소송법(Civil Case Code)’란에는 복잡상사소송부(CCLD)를 기재하고, ‘민사소송유형(Civil Case Type)’란에는 복잡상사소송(Complex Commercial Litigation)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복잡상사소송은 뉴캐슬 카운티 고등법원(NCC)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건은 관할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즉 ① 개인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 모든 사건, ② 담보권 실행에 관한 사건, ③ 유치권에 관한 사건, ④ 선고를 진행 중인 사건, ⑤ 계약당사자가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정의 목적을 위하여 행동하는 개인이거나 그 계약이 개인 또는 단체고용계약과 관련된 사건이 해당 된다.⁸⁸⁾

86) Joseph R. Slight III/Elizabeth A. Powers, op. cit., pp. 1039-1040.

87)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민사사건 정보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 답변서 또는 1차 답변서는 송달되지 않고 기각될 수 있다. 해당 양식은 본 연구보고서 후단에 첨부된 ‘[별지3] 델라웨어 복잡상사소송부, 민사사건 정보진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88)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Delaware, Administrative Directive of the President Judge of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Delaware, No. 2010-3, 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2010, pp. 1-2.

나. 재판부의 구성

복잡상사소송부의 소속 법관은 고등법원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각 법관의 임기는 대법원장이 교체하지 않는 한 3년이다.⁸⁹⁾ 복잡상사소송부에서 관할하는 사건은 별도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속 법관⁹⁰⁾에게 순환방식으로 배정된다. 이때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은 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전담하며, 3년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⁹¹⁾

(3) 절차

복잡상사소송부에서는 제기된 사건들이 심리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건관리명령을 하면,⁹²⁾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개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사실증언 및 전문가 증언을 거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 중 특기할 만한 것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조율하는 것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자증거개시 운영 지침(E-Discovery Plan Guidelines)’의 제정을 통해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⁹³⁾

우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소송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가 있거나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소송당사자는 첫 번째 기일의 21일

89) 델라웨어 헌법에서는 법관의 임기와 관련하여 ‘...(생략)...주지사가 상원에서 선출된 모든 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각각 12년의 임기로 임명한다...(생략)...’고 정하고 있다(Delaware Constitution, Art. IV, § 3).

<<https://delcode.delaware.gov/constitution/constitution-05.html>>

90) 2025년 6월 1일 발효된 복잡상사소송부 법관 임명에 관한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 1명의 법원장과 5명의 법관이 소속되어 있다(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Delaware, Administrative Directive of the President Judge of the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Delaware No. 2025-3, Amended Assignment of Judges to the 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Effective June 1, 2025).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courts.delaware.gov/forms/download.aspx?id=292808>>

91)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Delaware, supra note 88, pp. 2-3.

92) 최초 사건관리명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상급법원의 민사규칙이 적용된다.

93)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Delaware, Administrative Directive of the President Judge of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Delaware, No. 2010-3, 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Appendix B : E-Discovery Plan Guidelines, 2010.

전까지 소송에서 요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의 증거개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를 통해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즉 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② 각 유형의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가 생성될 유형과 그에 관한 문제, ③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생성 범위(보관자, 보관기간, 파일유형, 생성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검색프로토콜 등), ④ 재판준비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보존 방법, ⑤ 소송당사자 또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와 관련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기밀성 및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소유권 주장 방법이나 권리보존 방법, ⑥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보존 및 생산비용을 소송당사자에게 분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⑦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발견과 관련된 기타 문제 등이 논의대상이 된다.⁹⁴⁾

소송당사자는 위 협의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계획과 협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각 당사자의 입장을 명시한 서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⁹⁵⁾

위의 서면보고서를 토대로 법원은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관한 증거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때 해당 증거개시 계획 또는 명령이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비용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과도한 부담이나 비용의 사유를 명시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증거개시와 관련된 증거개시 강제신청이나 보호명령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과도한 부담이나 비용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출처에서 취득한 정보임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법원은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가 합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출처에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개시의 빈도나 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다.⁹⁶⁾

94) Ibid.

95) Ibid.

96) Ibid.

(4) 검토

델라웨어 주에서는 기업 간 민사사건만을 전담하는 복잡상사소송부를 특정 주의 고등법원 산하에 설치함으로써 상사사건을 집중시켜 상사법관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관되고, 예측가능하며, 전문화된 심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복잡상사소송부에서는 적격사건 처리를 위한 통일된 절차와 사건관리 양식을 수립해야 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들은 사건관리의 통일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력해야 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⁹⁷⁾ 이러한 점에서 고등법원이라는 단일시스템 하에서 주 전역에 대하여 단일 관할권이 미치는, 즉 통일된 체계를 가진 상사법원으로 기능한다는 특징을 보인다.⁹⁸⁾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소송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된 정보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밀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간 분쟁에서 민감한 사안들을 고려한 사법절차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 홈페이지에 복잡상사소송부 항목을 개설하여 사건관리명령 사례, 임시명령(CCLD Standing Order)⁹⁹⁾ 또는 공식문서(protocols), 최근 의견서, 배심원 사례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¹⁰⁰⁾ 이는 하나의 일관된 관할기준만 적용하고 공시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성(simplicity)’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가진다고 평가된다.

97) 이를 위하여 사건을 배정받은 법관은 사건에 관한 모든 답변서가 제출된 후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이 회의에서 소송당사자들은 재판 및 사건관리명령서 작성에 관하여 법관과 협의해야 한다.

98)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Delaware, supra note 88, pp. 3-5.

99) 복잡상사소송부의 임시명령은 표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등 유연한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임시명령은 현재 제1호(동의안 및 서면요약서 확장 및 무료 사본, 2010), 제2호(소송준비에 관한 사항, 2010), 제3호(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변론서 및 기타 서류에 CCLD 반영에 관한 사항, 2011), 신규 변호사의 법정 참여기회에 관한 CCLD 임시명령(2022)이 적용되고 있다.

<<https://courts.delaware.gov/superior/complex.aspx>>

100) 아래 홈페이지에는 ‘델라웨어 고등법원 복잡상사소송부의 민사소송 의견 및 명령’이 적용된 사례가 게시되어 있다. (최종방문 2025.05.28.)

<<https://courts.delaware.gov/opinions/index.aspx?ag=Superior%20Court&typ=Civil&div=CCLD>>

3. 텍사스 상사법원

(1) 도입

가. 도입배경

2007년부터 텍사스 주에서는 수 차례 상사법원 도입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¹⁰¹⁾ 그러다 2022년 텍사스사법위원회(Texas Judicial Council)는 기업들의 자원이 수 년 간 불확실한 소송에 얽매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상사사건에 관한 전문법원의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사법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대법원으로 하여금 상사법원 시범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¹⁰²⁾ 그리하여 2023년 입법회기가 도래하면서 기업과 의원들은 상사법원 설립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고,¹⁰³⁾ 최종적으로 2023년 상사 관련 분쟁을 전담하여 심리하는 전문법원인 상사법원(business court)과 상사사건의 항

101) 처음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7년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부(Judicial Panel)를 두고, 복잡한 사건을 처리할 경험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당사자들에게 사건의 이송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이는 상원에서 25대 5의 표결로 통과되었지만 하원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도입되지 못하였다. 이후 2009년 유사한 법안이 상정된 바 있으며, 이러한 상사법원의 도입을 위한 노력이 2015년까지 중단되었다가 2015년과 2021년에는 대법원(chancery court)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닌 지방법원으로서 상사법원(business district court)의 형태로 개편된, 즉 지금의 상사법원 형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Jack Buckley DiSorbo, "A Primer on the Texas Business Court", Baylor Law Review Vol. 76:2, 2024, pp. 381-384).

102) 즉 대법원으로 하여금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사법원의 도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텍사스 주 전체에 시행되기 앞서 세부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사법원 시범프로그램을 수립할 것(1A), 상사법원은 기본 법원 조직의 일부 또는 병존할 수 있어야 하고 상사법원의 전담법관의 자격요건을 확립할 것(1B), 지역별로 상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일 것(1C), 복잡한 사건의 소송당사자에게 상사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1D), 복잡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사법기술 및 상근변호사의 확보)을 충분히 제공할 것(1E)을 제시하였다(Texas Judicial Council, "2022 Civil Justice Committee - Report and Recommendations", 2022, pp. 11-12).

<chrome-extension://efaidnbmnmbpcjpcglclefindmkaj/https://www.businesscourtsblog.com/wp-content/uploads/2023/01/01860474.pdf>

103) Jack Buckley DiSorbo, op. cit., p. 384.

소심을 담당하는 제15항소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어¹⁰⁴⁾ 2024년 9월 1일부터 상사법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텍사스 내에서 전문법원으로서의 상사법원과 제15항소법원의 도입을 긍정적으로만 다루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상사법원의 전문법관은 임명이 아닌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인구밀도가 낮고 상업분쟁을 예측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경우 상사법원의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수 차례 법안을 수정하여 지금의 구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다. 즉 ① 상사법원이 하나의 지역구에 설치될 경우 지역구 내 어디에서든 소송제기와 철회가 유연하기에 지역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고, 그에 따라 최종 11개로 분할된 상사법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② 상사법원의 관할권을 정함에 있어 특정 관할권에 사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에 관한 소송, 개인상해에 관한 소송, 의료소송, 은행이나 대출기관으로부터의 대여금 반환 소송은 상사사건에서 제외시키게 되었다.¹⁰⁵⁾

나. 상사법원 및 제15항소법원 설립의 위헌성 여부

상사법원의 설립과 제15항소법원의 관할권 등을 포함한 사항들이 텍사스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들로 인하여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시도가 있어 왔다. 즉 현재의 상사법원을 도입하는 것과 제15항소법원의 관할구역은 1869년 당시 텍사스 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법권의 범위와 항소법원의 관할구역에 반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텍사스 헌법 자체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1876년 대대적인 헌법 개정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전문(특별)법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하원 및 상원 법안이 2023년 통과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논의되었던 사항을 과거와 현

104) 2023년 5월 29일 종료된 제88회 텍사스 의회에서는 상사법원 설립에 관한 하원 법안(HB19) 및 상원 법안(SB1045)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6월 9일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2023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https://capitol.texas.gov/BillLookup/history.aspx?LegSess=88R&Bill=HB19>>

<<https://capitol.texas.gov/BillLookup/history.aspx?LegSess=88R&Bill=SB1045>>

105) Jack Buckley DiSorbo, op. cit., pp. 385-386.

재 텍사스 헌법을 중심으로 다룬다.

① 상사법원의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텍사스 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사법원의 도입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1869년 텍사스 헌법(Constitution of Texas 1869)을 근거로 한다. 당시 텍사스 헌법 제5조 제1항 제1 문에서는 텍사스 주에 설립할 수 있는 법원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즉 ‘이 주의 사법권은 대법원, 지방법원, 이 헌법에 의하거나 헌법에서 정한 권한에 따라 의회가 설립하는 하급법원(Inferior Courts)과 치안판사(Magistrates)에 부여된다’고 하여 특별법원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위 조문을 1876년 ‘이 주의 사법권은 대법원, 항소법원, 지방법원, 카운티법원, 위원회법원, 치안판사법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법원에 귀속된다’는 사항으로 개정하면서 하급법원과 관련된 사안을 의회에서 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¹⁰⁶⁾ 이를 근거로 상사법원의 도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② 상사법원과 소속 법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상사법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상사법원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¹⁰⁷⁾ 상사법원은 텍사스 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정법원이지만¹⁰⁸⁾ 헌법에 따른 지방법원이 아닌 하급법원인 법정법원일 뿐이라고 한다. 즉 상사법원은 지방법원이 아니므로 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1869년 당시 텍사스 헌법에 따르면 ‘각 사법구역마다 주지사가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얻어 한 명의 법관을 임명하고, 그 임기는 8년으로 한다. ..(중략)... 다만 1876년 7월 4일 이후 실시되는 첫 총선거에서는 대법원과 지방법원 법관의 선출방식을 변경할지

106) Ibid, p. 389.

107) 2023년 9월 1일 자로 상사법원의 설립에 관한 하원 법안(HB19)이 발효되었기에 상사법원의 법적 근거에 관한 논란은 종식되었다고 볼 것이다.

108) 텍사스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사법부’-‘제A부. 법원’-‘제25A장 상사법원’에서 상사법원은 텍사스 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정법원임을 밝히고 있다(Sec. 25A.002. CREATION. The business court is a statutory court created under Section 1, Article V, Texas Constitution).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GV/htm/GV.25A.htm>>

여부를 국민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선거에 의한 선출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여지를 두었다(article 5. sec. 6).¹⁰⁹⁾ 이후 1876년 당시 텍사스 헌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해당 법원의 판결에는 법관 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법관들은 주의 유권자들에 의해 총선거에서 선출되고, ...(중략)... 이들의 임기는 6년이며...(생략)...'라고 정함으로써 법관은 임명이 아닌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였다(article 5. sec. 5).¹¹⁰⁾ 1876년 텍사스 헌법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article 5. sec. 6(b)).¹¹¹⁾

최종적으로 상사법원은 지방법원에 부여된 권한을 가진다고 보므로(Sec. 25A.004(a), Sec. 24에서 정하는 지방법원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¹¹²⁾ 그에 따라 특별법관은 주지사가 임명하고(Sec. 24.006(c)), 새로운 사법구역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 법관, 형사항소법원 항소법원 또는 지방법원 법관직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

109) Constitution of Texas (1869)

Article V: Judicial Department

SECTION VI. The State shall be divided into convenient Judicial Districts, for each of which one Judge shall be appointed by the Governor,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for a term of eight years, who shall after his appointment reside within the District, and shall hold a Court three times a year in each County thereof, at such time and place as may be prescribed by law; provided, that at the first general election after the 4th of July, 1876, the question shall be put to the people, whether the mode of election of Judges of the Supreme and District Courts shall not be returned to.

<<https://tarlton.law.utexas.edu/c.php?g=812156&p=5795231>>

110)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Texas (1876)

Article V: Judicial Department

SEC. 5. The Court of Appeals shall consist of three judges, any two of whom shall constitute a quorum, and the concurrence of two judges shall be necessary to a decision of said court. They shall be elected by the qualified voters of the State at a general election.

<<https://tarlton.law.utexas.edu/constitutions/texas-1876-en/article-5-judicial-department>>

111) Constitution of Texas (2025)

Article 5. Judicial Department

Sec. 6. COURTS OF APPEALS; JUSTICES; JURISDICTION.

(b) Each of said Courts of Appeals shall hold its sessions at a place in its district to be designated by the Legislature, and at such time as may be prescribed by law. Said Justices shall be elected by the qualified voters of their respective districts at a general election, for a term of six years and shall receive for their services the sum provided by law.

112)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GV/htm/GV.24.htm#24>>

지사가 차기 총선거에 이르기까지 임명하여 충원하고, 해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출에 의하여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법관을 충원하도록 정하고 있다(article 5. sec. 28).

③ 제15항소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논의

상사법원의 설립에 관한 하원 법안(HB19) Sec. 25A.003에서는 상사법원의 관할구역이 텍사스 주의 모든 카운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¹¹³⁾ 이와 같이 제15항소법원의 관할권이 주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것은 현행 텍사스 헌법 제5조 제6항에 반한다고 보았다. 텍사스 헌법에서는 중급항소법원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즉 ‘주는 항소법원 관할구역으로 나뉘며, 항소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부(section)로 구성될 수 있고, 항소법원은 각 관할구역의 경계와 동일한 관할권을 가지며, 지방법원이나 카운티 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제한 및 규정에 따라 원심 또는 항소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미친다. 그러나 해당 법원의 판결은 항소 또는 오류로 제기된 모든 사실관계에 있어 확정적이어야 한다. 항소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원심법원 및 항소법원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article 5. sec. 6(a)).¹¹⁴⁾

113) Sec. 25A.003. BUSINESS COURT JUDICIAL DISTRICT; DIVISIONS. (a) The judicial district of the business court is composed of all counties in this state.

114) Constitution of Texas (2025)

Article 5. Judicial Department

Sec. 6. COURTS OF APPEALS; JUSTICES; JURISDICTION.

(a) The state shall be divided into courts of appeals districts, with each district having a Chief Justice, two or more other Justices, and such other officials as may be provided by law. The Justices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prescribed for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The Court of Appeals may sit in sections as authorized by law.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judges sitting in a section is necessary to decide a case. Said Court of Appeals shall have appellate jurisdiction co-extensive with the limits of their respective districts, which shall extend to all cases of which the District Courts or County Courts have original or appellate jurisdiction, under such restrictions and regula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law. Provided, that the decision of said courts shall be conclusive on all questions of fact brought before them on appeal or error. Said courts shall have such other jurisdiction, original and appellate, as may be prescribed by law.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CN/htm/CN.5.htm>>

이는 제15항소법원의 설립에 관한 상원 법안(SB1045)에 관한 공청회에서 법안 발의자인 Joan Huffman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상 사법권의 확정에 있어 의회(입법부)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한 결과이고, 이는 새로운 법원의 설립과 설립되는 법원의 범위와 관할권을 주 내 모든 카운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지에서 다루고 있다고 한다.¹¹⁵⁾

이러한 상사법원의 도입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쟁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관할을 확정 함에 있어 헌법상 저촉되는 사항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사법부의 구조

텍사스 사법부 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한다. 즉 일반적으로 최저소가, 민·형사 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각급법원에서 심리하는 사안이 구분된다. 치안법원의 경우 \$20,000 이하의 민사소송이나 벌금형만 적용되는 형사범죄 등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며, 시법원의 경우 일정 부분 제한된 민사관할권이 적용되는 사건을 심리하는데, 이들은 1심 법원으로서 기능하지만 기록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기록사건으로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카운티 법원의 경우 \$200부터 \$20,000 사이의 민사사건 등을 심리하며, 당해 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제1항소법원 내지 제14항소법원에 중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중간항소에 관한 판결에 불복할 경우 형사사건은 형사항소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 민사사건이나 청소년 사건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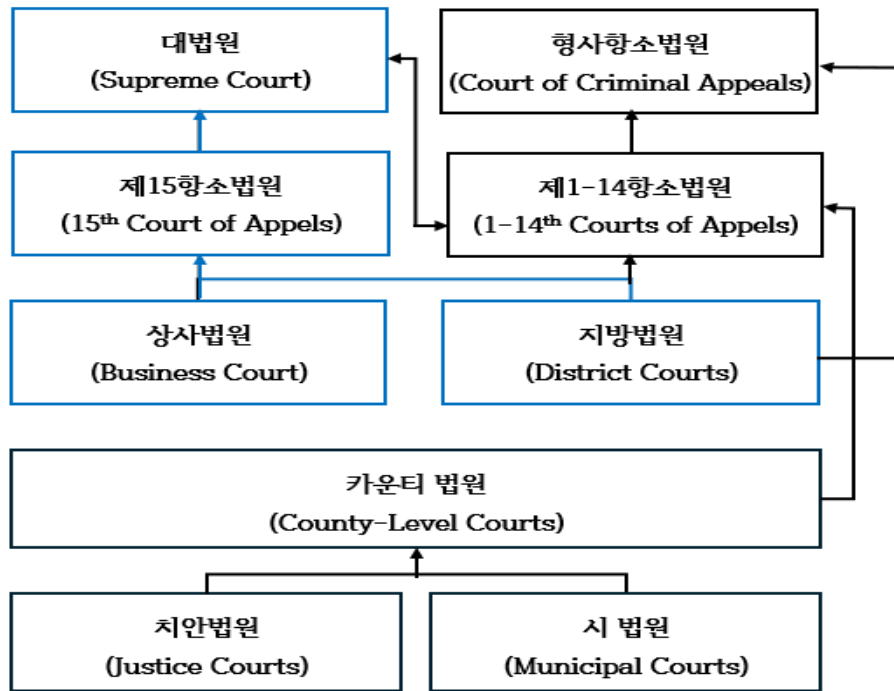
카운티 법원의 상급법원인 지방법원은 \$200 이상의 민사소송 등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제1항소법원 내지 제14항소법원에 중간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당해 사건이 복잡한 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항소법원에 중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소법원 내지 제14항소법원에 제기한 중간항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형사사건은 형사항소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 민

115) Jack Buckley DiSorbo, op. cit., pp. 394-395.

사건이나 청소년 사건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항소 법원에 제기한 중간항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여 심리를 계속 할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상사법원은 지방법원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지방법원과 동시에 관할 권이 부여된다. 상사법원은 최저소가 기준이 \$5,000,000를 초과하는 복잡한 상사사건을 다루며, 국내·국외의 준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소송당사자가 되어도 무방하다. 상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제15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계속하여 심리할 수 있다.

[그림-2] 텍사스 사법부의 구조¹¹⁶⁾



116)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상사사건의 심급구조를 별도로 표기한 것이다.

(2) 관할

가. 상사법원의 사법구역

텍사스 상사법원의 사법구역은 텍사스 주의 모든 카운티로 구성되며, 본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divisions)’로 존재한다. 텍사스 주의 각 상사법원부는 11개의 사법구역으로 구분되고, 각 사법구역을 구성하는 카운티에 대하여 관할권이 미치는데(Sec. 74.042.),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8] 텍사스 상사법원의 사법구역별 관할¹¹⁷⁾

	상사법원부 (Business Court Division)	사법구역 (Administrative Judicial Region)	관할 카운티 (County) ¹¹⁸⁾
1	제1상사법원부	제1사법구역	콜린, 델러스, 엘리스, 패닌, 그레슨, 카우프만, 록월
2	제2상사법원부	제2사법구역	앤젤리나, 배스트롭, 브라노스, 버레슨, 챔버스, 그라임스, 하딘, 재스퍼, 제퍼슨, 리, 리버티, 매디슨, 몽고메리, 뉴턴, 오렌지, 포크, 샌하신토, 트리니티, 타일러, 워커, 윌러, 워싱턴
3	제3상사법원부	제3사법구역	오스틴, 벨, 블랑코, 보스케, 버넷, 콜드웰, 콜로라도, 코말, 코만치, 코리엘, 폴스, 페이엣, 곤잘레스, 과달루페, 해밀턴, 헤이즈, 힐, 람파사스, 라바카, 라노, 맥레넌, 밀람, 나바로, 로버트슨, 샌사바, 트래비스, 윌리엄슨
4	제4상사법원부	제4사법구역	아란사스, 아타사사, 비, 백사, 캘훈, 드윗, 디밋, 프리오, 골리앗, 잭슨, 카네스, 라살, 라이브 오크, 매버릭, 맥멀렌, 리퓨지오, 산 패트리시오, 빅토리아, 웹, 윌슨, 자파타, 자발라
5	제5상사법원부	제5사법구역	브룩스, 캐머런, 듀발, 이달고, 짐 호그, 짐 웰스, 케네디, 클레버그, 누에시스, 스타, 윌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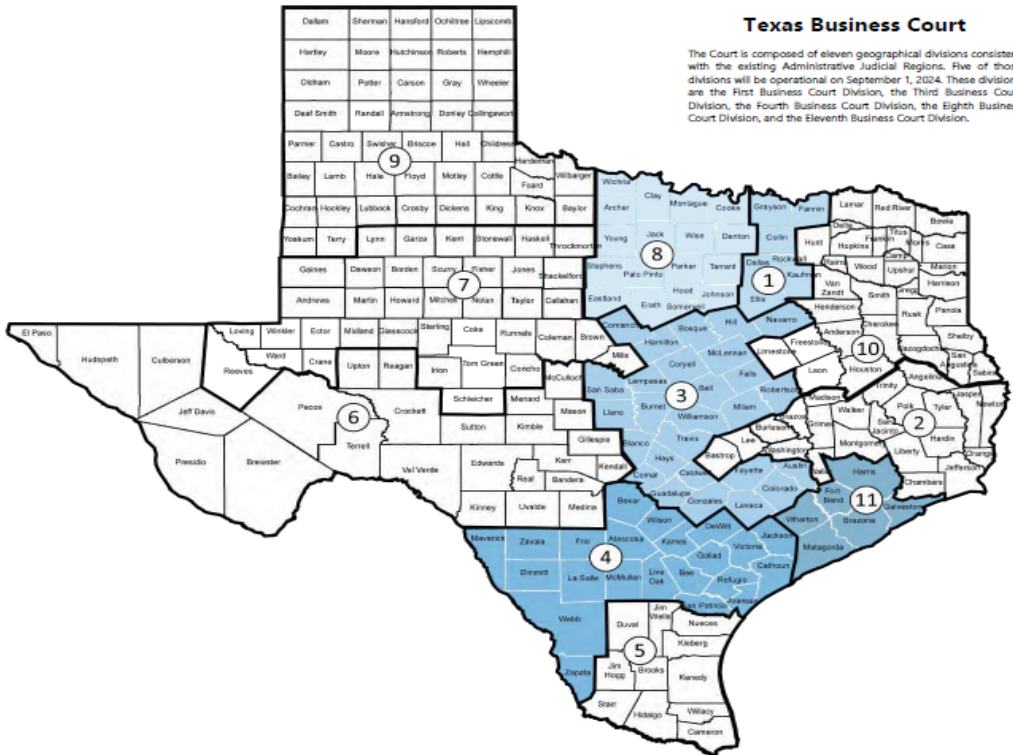
117) Sec. 25A.003.

118) Sec. 74.042.

6	제6상사법원부	제6사법구역	반데라, 브루스터, 크로켓, 켈버슨, 에드워즈, 엘패소, 길레스피, 허드스페이스, 제프 데이비스, 켄달, 키, 김블, 키니, 메이슨, 맥컬로크, 메디나, 메나드, 페코스, 프레시디오, 레이건, 리얼, 서튼, 테렐, 업튼, 우발데, 발 베르데
7	제7상사법원부	제7사법구역	앤드류스, 보든, 브라운, 캘러핸, 코크, 콜먼, 콘초, 크레인, 도슨, 엑터, 피셔, 게인스, 가르자, 글래스콧, 해스켈, 하워드, 아이리온, 존스, 켄트, 러빙, 린, 마틴, 미들랜드, 밀스, 미첼, 놀란, 리브스, 러넬스, 슬라이허, 스키리, 새클퍼드, 스틸링, 스톤월, 테일러, 스톡모턴, 톰 그린, 워드, 잉클러
8	제8상사법원부	제8사법구역	아처, 클레이, 쿡, 텐튼, 이스트랜드, 에라스, 후드, 잭, 존슨, 몬태규, 팔로 핀토, 파커, 서머벨, 스티븐스, 태런트, 위치타, 와이즈, 영
9	제9상사법원부	제9사법구역	암스트롱, 베일리, 베일러, 브리스코, 카슨, 카스트로, 차일드리스, 코크런, 콜링스워스, 코틀, 크로스비, 달람, 데프 스미스, 디킨스, 돈리, 플로이드, 포드, 그레이, 헤일, 홀, 핸스포드, 하디먼, 하틀리, 험필, 호클리, 허친슨, 킹, 녹스, 램, 립스콧, 러빅, 무어, 모틀리, 오칠트리, 올덤, 파머, 포터, 랜달, 로버츠, 셔먼, 스위셔, 테리, 휠러, 월바저, 요아쿰
10	제10상사법원부	제10사법구역	앤더슨, 보위, 캠프, 캐스, 체로키, 델타, 프랭클린, 프리스톤, 그렉, 해리슨, 헨더슨, 홉킨스, 휴스턴, 헌트, 라마, 레온, 라임스톤, 매리언, 모리스, 나코 그도체스, 파놀라, 레인즈, 레드리버, 러스크, 사빈, 샌어거스틴, 셸비, 스미스, 타이터스, 업셔, 벤잔트, 우드
11	제11상사법원부	제11사법구역	브라조리아, 포트벤드, 깰버스턴, 해리스, 마타고르다, 와튼

아래 그림은 텍사스 상사법원의 사법구역별 카운티 현황이다. 이 중 음영처리 된 부분은 다른 사법구역의 상사법원부와 임명되는 법관의 인원이 차이가 있음을 표기한 것이다. 즉 상사법원 제1부, 제3부, 제4부, 제8부, 제11부에는 각각 2명의 법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상사법원부는 각각 1명의 법관을 임명하도록 한다.

[그림-3] 텍사스 상사법원의 사법구역별 카운티 현황¹¹⁹⁾



나. 상사사건의 범위

① 지방법원으로서의 민사관할권의 대상

상사법원은 위와 같은 사법구역에 관할이 미치기도 하지만 가처분 명령, 집행명령, 몰수, 가압류, 압류, 명령서¹²⁰⁾를 발행하고, 지방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한 허가 등을 포함하여 지방법원에 부여된 권한을 가진다(Sec. 25A.004.(a)).

119) Texas Courts, “Local Rules of the Texas Business Court Effective March 1, 2025”, 2025, p. 64. “Texas Business Court”.

<<https://www.txcourts.gov/media/1459346/local-rules-of-the-business-court-of-texas.pdf>>

120) 하급법원에 판결집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supersedeas)이나 항소인이 법원에 상환보증(supersedeas bond)을 제출함으로써 항소기간 동안 판결에 따른 지급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1〉 상사법원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소송에 대하여 지방법원으로서 민사관할권을 가지며,¹²¹⁾ 여기에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하는 소송, 최저소가가 \$5,000,000를 초과¹²²⁾ 하는 소송을 포함한다. 즉 ① 대표소송, ② 회사(organization)¹²³⁾의 내부통제(action regarding the governance), 내부분서(governing documents)¹²⁴⁾, 내부업무와 관련된 소송, ③ 주 또는 연방증권법이나 거래규제법에 따라 회사, 회사나 회사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¹²⁵⁾나 경영진이 작위 또는 부작위,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인수인, 감사인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④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an owner of an organization)¹²⁶⁾가 주주, 회사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나 이들의 지위에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 ⑤ 주주(owner), 회사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경영진이 회사 또는 주주에게 부담해야 하는 충실의무 또는 신인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⑥ 주주 또는 이사(governing person)¹²⁷⁾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121) 2025년 제89차 입법회에서 법안 개정(HB40)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당해 법률은 2023년 9월 1일 발효되었으나, 2024년 9월 1일 시행되었기에 2023년 Chapter 380 (HB19)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1일 이전에 제기된 소송 중에서도 상사법원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소송은 당사자 합의를 기초로 이송신청과 상사법원의 허가에 따라 상사법원으로 이송시켜 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이송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복잡한 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하며, 2024년 9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소송을 해결 함에 있어 상사법원의 효율성 (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상사법원의 역량을 고려하여 사건의 이송을 허가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사사건의 상사법원으로서의 이송 및 심리에 관한 규정의 효력은 2025년 9월 1일 발효되고, 2035년 9월 1일 만료된다(Sec. 25A.021.).

<<https://capitol.texas.gov/tlodocs/89R/billtext/html/HB00040F.HTM>>

- 122) 이때 이자, 법정 손해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벌금,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은 제외한다.
- 123) 이는 영리 또는 비영리를 불문하고 외국 또는 국내법인이나 협회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법인, 유한책임조합, 합명회사, 유한책임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사업신탁, 부동산 투자신탁, 합작회사, 주식회사, 협동조합, 은행, 신용협동조합, 저축대출기관, 보험회사 등이 포함된다(Sec 25A.001.(10)).
- 124) 이는 회사의 설립과 내부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회사의 준거법에 따라 채택된 문서나 협정을 말한다. 여기에는 설립증명서, 법인정관 및 조직정관, 규정, 파트너십 계약, 회사(운영)계약, 주주계약, 의결권 계약 또는 의결권 신탁계약, 주주권 이전 제한에 관한 주주간 계약 등이 포함된다(Sec 25A.001.(3)).
- 125) 즉 ‘Controlling person’은 직·간접적인 지배자, 임원 또는 회사를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Sec. 25A.001.(11)).
- 126) 주주로 표기하였지만, ‘Owner’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주,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 또는 유한 파트너 또는 파트너십 이익의 양수인, 유한책임회사의 회원이나 회원권의 양수인, 비영리단체의 회원 등이 포함된다(Sec. 25A.001.(1)).

서명한 서면계약 이외에도 주주 또는 이사가 가지는 회사에 대한 의무에 기해 책임을 묻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송, ⑦ 회사의 정관(Business Organizations Code)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이 해당된다(Sec. 25A.004.(b)).

〈①-2〉 또한 위에 기술한 소송의 당사자가 공개회사인 경우 상사법원은 분쟁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법원으로서 민사관할권을 가진다(Sec. 25A.004.(c)).

〈①-3〉 상사법원은 이자, 법정 손해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벌금,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을 제외한 최저소가가 \$5,000,000를 초과하는 다음의 소송에 관하여 지방법원으로서 민사관할권을 가진다. 즉 ① 적격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 ② 계약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계약이나 후속합의에 의해 상사법원이 소송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동의한 사업, 상업계약 또는 투자계약 또는 거래로 인한 소송(단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외함), ③ 은행, 신용조합 또는 저축대출기관이 아닌 조직의 대리인으로서 임원 또는 운영자가 금융법 또는 상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소송, ④ 지적재산의 소유, 사용, 라이선스, 대여, 설치, 성과에 관한 소송, ⑤ 민사소송 및 구제법 CHAPTER 134A(영업비밀)¹²⁷⁾에 관한 소송이 해당된다(Sec. 25A.004.(d)).

〈①-4〉 상사법원은 앞서 〈①-1〉, 〈①-2〉, 〈①-3〉에서 언급한 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 및 구제법 CHAPTER. 37(선언적 판결)에 따른 가치분 명령이나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에서 지방법원으로서 민사관할권을 가진다(Sec. 25A.004.(e)).

② 상사법원의 보충관할권

상사법원은 앞서 〈①-1〉, 〈①-2〉, 〈①-3〉, 〈①-4〉에서 언급한 소송이 동일한 사건이나 논쟁의 일부를 형성하는 다른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때에도 보충관할권을 가진다. 이러한 상사법원의 보충관할권은 모든 소송당사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재판부의 소속 법관

127) 이사로 표기하였지만, ‘Governing person’은 회사의 내부문서와 준거법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단독 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관리하고 지휘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가령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사회 구성원, 일반 합자회사 또는 유한합자회사의 파트너, 경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영자, 사원에 의해 관리되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부동산 투자신탁의 신탁관리자, 사업신탁의 수탁자를 이른다(Sec 25A.001.(3)).

128)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CP/htm/CP.134A.htm#134A>>

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단 소송당사자가 이러한 합의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당해 소송은 원래의 관할법원에서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Sec. 25A.004.(f)).

다만 소송당사자와 법원 재판부의 소속 법관들의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해 청구(소송)가 상사법원의 보충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한 상사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 즉 상사법원의 보충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청구라 함은 ① 민사소송에서의 청구, ② 자유기업 및 반독점법(Texas Free Enterprise and Antitrust Act of 1983)에서 정하는 '경쟁금지계약에 관한 사항(chapter 15 - subchapter E. Covenants Not to Compete)'¹²⁹⁾과 '사기적 거래 관행에 관한 사항(chapter 17. Deceptive Trade Practices)'¹³⁰⁾, 부동산법, 가족법, 보험법, 재산법¹³¹⁾과 관련된 청구, ③ 농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에 관한 청구, ④ 보험증권에 따른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청구가 해당 된다(Sec. 25A.004.(g)).

③ 상사법원의 관할 제외

상사법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상사법원의 보충관할권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하지 않는다. 즉 ① 민사소송 및 구제법 CHAPTER. 74(의료책임)에 관한 사건, ② 당사자가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③ 법률상 과실을 주장하는 사건, ④ 소비자 거래¹³²⁾와 관련된 것으로서 연방법 또는 주법을 위반한 사건이 해당 된다(Sec. 25A.004.(h)).

다. 중재합의

상사법원은 중재합의를 진행하거나, 중재인의 임명 또는 중재판정의 검토를 위한 소송, 중재합의에 의해 허가된 기타 사법적 조치에 관하여 지방법원으로서 민사관할권을 가진다. 다만 중재분쟁에 포함된 청구가 <①-1>과 <①-3>에 해당하여 상사법원의 민사관할권이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 된다(Sec. 25A.004.(d-1)).

129)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BC/htm/BC.15.htm#15>>

130)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BC/htm/BC.17.htm#17>>

131)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PR/htm/PR.53.htm#53>>

132) BUSINESS AND COMMERCE CODE Sec. 601.001.에서 정하는 거래로서 상인과 1명 이상의 소비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라. 재판부의 구성

① 헌법에 따른 법관의 자격

텍사스 헌법에서는 사법부 법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즉 주는 항소법원 관할구역으로 나뉘며, 각 관할구역에는 대법원장, 2명 이상의 법관, 법률이 정하는 기타 공무원이 임명된다. 법관은 대법원 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을 충족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재직하는 법관의 과반수 찬성이 요구된다(article 5. sec. 6(a)). 각 법관은 각 관할구역의 유권자들에 의해 총선거로 선출되고,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로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article 5. sec. 6(b)).

② 정부법에 따른 법관의 자격

텍사스 정부법에서는 상사법원의 법관은 일정한 연령,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 즉 ① 만 35세 이상으로 ②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¹³³⁾ ③ 법관으로 임명되기 최소 5년 전부터 상사법원의 사법구역 내 카운티에서 거주해야 하고, ④ 텍사스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경력이란 복잡한 민사기업소송 업무, 기업거래법 업무, 텍사스 주에서 민사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법관으로 재직하였거나, 상술한 세 가지 경력을 종합하여 판단한다(Sec. 25A.008.(a)). 또한 ⑤ 상사법원의 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취소, 정지되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Sec. 25A.008.(b)).

상사법원은 방문법관(visiting judge)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방문법관도 위에서 열거한 상사법원 법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직에 있거나 은퇴한 법관, 전직 법관 또는 대법관도 대법원장에 의해 상사법원부의 방문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상사법원부의 방문법관은 지방법원의 방문법관의 지위를 가지며, 그에 따라 Chapter 74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이나 결정, 기피의 대상이 되는 등 지방법원의 법관에 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Sec. 25A.014.(a)). 대법원장은 현직 상사법원의 법관을 상사법원의 법관이 관할하는 지

133) 미국 시민권자임을 요한다는 점에서 외국인으로서 국제법관이 임명되기에는 제한이 있다.

방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법정 카운티법원의 방문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또한 Chapter 74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이나 결정, 기피의 대상이 되는 등 지방법원의 법관에 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Sec. 25A.014.(b)).

③ 정부법에 따른 법관의 임명

상사법원의 법관은 주지사가 상원의 의견(advice)과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데,¹³⁴⁾ 상사법원부마다 인원의 차등을 두고 있다(Sec. 25A.009.(a)). 즉 상사법원 제1부, 제3부, 제4부, 제8부, 제11부에는 각각 2명의 법관을 임명하며, 제2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9부, 제10부에는 각각 1명의 법관을 임명한다.¹³⁵⁾ 법관의 임기는 짝수 해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 간 재직해야 하며, 재임명이 가능하다. 이때 매 짝수년도 9월 15일까지 상사법원의 법관들은 다수결로 1명의 법원장(administrative presiding judge)¹³⁶⁾과 다른 상사법원부(different division of the court)에서 근무하는 법관 1명을 2년의 임기가 적용되는 임시법원장¹³⁷⁾으로 선출함으로써 법원장이 공석일 경우 임시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재직하도록 한다. 이때 상사법원의 법관들은 법관 1명을 임시법원장으로 선출하여 가능한 잔여 임기 동안 신속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ec. 25A.009.(d)). 또한 질서 있고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사법원의 법관들은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 관하여 서로를 대신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Sec. 25A.009.(f)).

134) 이는 기존 주 법원의 법관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35) 이때 임명되는 법관은 교육, 직원 및 사무실 구성, 상사법원 판례,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연구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정부와의 고용이 시작되며,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Sec. 25A.009.(a-1)).

136) 상사법원의 법원장은 법원을 대신하여 행정 및 인사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자이다(Sec. 25A.017(b)).

137) 임시법원장은 임시법원장에게 위임된 법관의 공식업무, 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Sec. 25A.009.(d-1)).

④ 정부법에 따른 상사법원 전담 재판연구원의 임명

상사법원은 상사분쟁을 시의적절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상사법원의 소속 법관들에게는 대부분의 지방법원이나 카운티 법원의 법관들에게 부여되지 않는 권한 중 하나인 재판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Sec. 25A.017.(i)(3)). 법률상 의회는 각 지방법원이나 카운티 법원의 법관이 전담 재판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할 의무가 없지만, 상사법원에 한하여 대규모 상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조력할 수 있는 재판연구원의 인력배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³⁸⁾

(3) 절차

가. 소송절차

대법원은 정부법 Sec. 25A.0041.에 따라 상사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¹³⁹⁾ 즉 ① 다른 주에서 운영되는 상사법원 및 상사법원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복잡한 상사소송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상사법원의 목적, ② 텍사스 헌법과 텍사스 주의 사법부 내에서 기능하는 법원으로서 상사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과 절차의 공통점, ③ 기본적인 공정성 문제나 당사자의 헌법적 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보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과 상사법원 간의 사건 이송 가능성의 제한, ④ 법원이 선례와 관행을 발전시켜 가면서 소송당사자와 그 변호인이 상사법원 및 제

138) Jack Buckley DiSorbo, op. cit., p. 370.

139) 또한 대법원은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수립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즉 ① 소장이나 약식절차에 의해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② 합리적인 증거기준을 확립하며, ③ 쟁점이나 권리를 주장하거나,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기간을 제한하여 정할 수 있고, ④ 지방법원의 법원장이나 상사법원의 법원장을 포함하여 다른 법관이나 재판부에서 상사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검토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또한 ⑤ 중간항소를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⑥ 신속하게 항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으며, ⑦ 상사법원의 관할권 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Sec. 25A.0041.(b)).

15항소법원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갈지에 대한 지침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텍사스 상사법원은 ‘텍사스 민사소송규칙(Texas Rules of Civil Procedure)’의 사법절차를 따르고 있다. 즉 대법원은 상사법원으로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송(환송)하거나 상사법원의 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민사소송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Sec. 25A.020.(a)), 그에 따라 상사법원은 텍사스 민사소송규칙 및 증거규칙에 부합하는 실무 및 절차에 관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Sec. 25A.020.(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동시 또는 전속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항소법원은 상사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대한 항소, 상사법원의 소송이나 명령과 관련된 본래의 절차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진다(Sec. 25A.007.(a)). 또한 상사법원의 항소나 본안소송에 적용되는 절차는 지방법원의 항소 또는 본안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Sec. 25A.007.(c)).

나. 원격소송절차

상사법원은 법관, 소송당사자, 변호인, 증인, 법정속기사(court reporter) 또는 기타 개인을 포함한 1명 이상의 참가자가 기술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원격소송절차(remote proceeding)’를 허용하고 있다(Sec. 25A.017.(a)). 즉 상사법원은 법원에 제기된 사건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배심원 재판 이외의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구두 증언을 청취하는 재판과정에서는 당사자 또는 변호인을 원격으로 출석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Sec. 25A.017.(e)). 원격소송은 법정 또는 텍사스 주에서 상사법원의 법관에게 제공하는 시설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며(Sec. 25A.017.(f)), 소송절차가 원격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합리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원격소송절차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Sec. 25A.017.(g)).

(4) 검토

텍사스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상사법원을 가장 늦게 도입하였고,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상사법원의 사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텍사스 상사법원은 특히 상사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하였다는 점, 관할권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정치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상사법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입법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상사법원의 관할권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타의 상사법원제도를 채택한 국가와 달리 11개의 상사법원부를 둬으로써 텍사스 주의 모든 카운티에 관할이 미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사법원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제15항소법원을 통한 항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절차의 구축을 통해 상사사건의 전담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상사법원의 전속관할권과 보충관할권으로 구분하여 사건의 유형에 따라 상사법원에서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재판적을 확정하는 부분 등 지역적 영역에 있어서도 관할권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법률로써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¹⁴⁰⁾

상사법원의 법관들이 상사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 관하여 서로를 대신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일정한 요건 하에 원격소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텍사스 상사법원은 상사사건의 재판 효율성과 효과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질서 있고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지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송당사자를 국내 및 국제 법인을 불문하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법원의 법관은 미국 시민권자로 제한하고 있고, 방문법관 제도 이외의 국제법관 등의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성 요소의 보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텍사스 헌법상 법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상사법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델라웨어 3년, 독일 5년 등으로 정하고 있는 여타의 기준에 비하여 단기에 속한다. 다만 텍사스 상사법원은 11개의 상사법원부를 둬으로써 다른 상사법원부의 전문

140) Sec. 25A.006.

법관으로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 2년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재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지속성을 통해 전문성 유지라는 측면이 보완된다고 할 것이다.

III. 검토

미국의 상사법원은 많은 주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상사법원을 설립한 뉴욕, 기업소송에 관한 중심으로 자리잡은 델라웨어, 상사소송의 신흥 메카로 거듭나기 위하여 상사법원의 사법체계를 확립한 텍사스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들 상사법원은 세부적인 특징은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사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재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사중재가 가지는 중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고자 한 점이 공통된다.

제3절 | 싱가포르

I. 개관

2015년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ICC)이 설립되었다.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재판절차규칙(procedural rules)과 실무지침(practice directions)을 갖추고 있어 국제상사분쟁 당사자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¹⁴¹⁾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은 당초 국제사회를 위한 ‘독립적인 국제상사법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¹⁴²⁾ 싱가포르가 국제분쟁조정 허브국가로서 발전하기 위한 3개 전략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3개 전략으로는 1991년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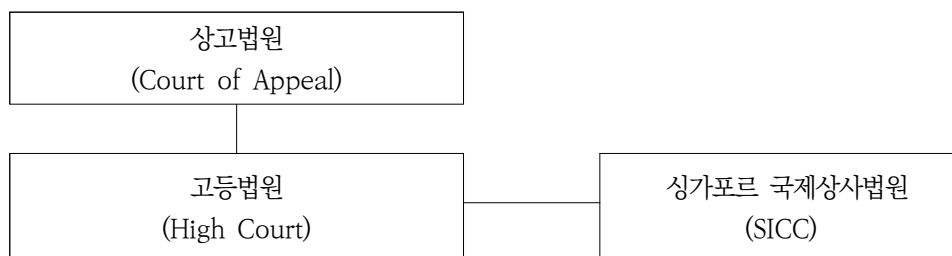
141) 김정환, “국제상사분쟁의 해결과 국제상사법원 -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29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252면.

142) Weixia Gu/Jacky Tam, op. cit., p. 467.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의 설립, 2014년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SIMC)의 설립을 추진한 것이며, 2013년 5월 13일 법무부장관이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to study the viability of developing a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ICC, the SICC Committee)'를 발족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구성, 관할권, 권한, 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¹⁴³⁾ 이러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설립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투자와 그로 인한 무역거래의 증가가 지속될 것을 감안할 때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중립적이고 잘 정비된 분쟁해결절차를 갖춘' 기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헌법과 사법절차법, 법원조직법 등을 개정하게 되었다.¹⁴⁴⁾ 이하에서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법적 지위와 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II.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법적 지위

[그림-4]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지위¹⁴⁵⁾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중재기관인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등과는 달리 국제적인 상

143) Report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Committee, November 2013, p. 3-9.
 <chrome-extension://efaidnbmninnibpcapjpcglclefindmkaj/https://www.mlaw.gov.sg/files/Annex-A-SICC-Committee-Report.pdf>

144) 김정환, 앞의 논문, 253면.

145) 김정환, 앞의 논문, 254면 '[그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지위' 인용.

사사건만을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포르 대법원의 일부인 고등법원 산하 특별부서로서 설립되었다.¹⁴⁶⁾ 싱가포르 대법원은 고등법원(일반부 및 항소부)과 상고법원(Court of Appeal),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법원은 민사 및 형사사건¹⁴⁷⁾에 관한 1심 및 주법원(지방법원 등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상고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민사 및 형사사건의 상고심 관할권을 가진다.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대법원법 §18D(1)에 따른 국제적이고 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사건, 대법원법 §18D(2)에 따른 국제상사중재 관련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직접 청구된 사건이거나 고등법원 일반부로부터 이송된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¹⁴⁸⁾ 또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소송절차는 싱가포르 대법원 법원규칙(Rules of Court)¹⁴⁹⁾이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대법원법 §18 이하의 규정과 법원규칙 Order 110 이하의 규정에 따른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구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III.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구성

1. 상사사건의 범위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기에 심리대상이 되는 사건의 본질은 ‘국제적이고 상업적’인 특징을 가져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46) 대법원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969) §18A에 설립근거(“일반부에는 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으로 알려진 부서가 있다”)를 두고 있으며, 법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18C), 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사항(§18D) 등 §18A 내지 §18M까지 국제상사법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https://sso.agc.gov.sg/Act/SCJA1969?ProvIds=P13-#top>>

147) 최저소가가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민사소송,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한 형사범죄를 취급한다.

148) Supreme Court Singapore, Role and structure of the Supreme Court.
<<https://www.judiciary.gov.sg/who-we-are/role-structure-supreme-court/role>>

149) <https://sso.agc.gov.sg> 참조.
<<https://sso.agc.gov.sg/SL/SCJA1969-R5/Historical/20210102?DocDate=20210121&ValidDate=20210102&ViewType=Print>>

우선 소송의 분쟁이 국제적이라는 것은 ① 소송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② 소송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싱가포르에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③ 소송당사자 중 적어도 1명의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당사자 간 상업적 관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 또는 소송의 주체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 ④ 소송당사자들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이 한 개 이상의 국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의미한다(Rules of Court O. 110, r. 1(2)(a)).

다음으로 소송의 본질이 상업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① 소송물이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나 교환을 위한 모든 거래를 포함하고 있거나,¹⁵⁰⁾ ② 지식재산 관련 소송, ③ 소송당사자들이 소송의 대상이 상업적이라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의미한다(Rules of Court O. 110, r. 1(2)(b)).

2. 관할 및 이송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제상사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국제상사소송의 당사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는데, 당사자 간 합의는 그러한 약정에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F(2)),¹⁵¹⁾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에 따르며, 싱가포르 국

150) 유통계약, 상업적 대행, 팩토링 또는 리스, 컨설팅이나 엔지니어링 또는 라이선싱, 투자/금융/은행/보험, 개발계약, 합작투자 등의 사업협력, 회사의 합병 등의 회사인수, 항공/해상/철도/도로 등을 통한 물품 또는 여객의 운송 등이 해당된다.

151)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소송이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18D(1)-국제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의 사건- 또는 §18D(2)-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사건-에 따른 관할권이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다(Rules of Court O. 110, r. 8(1)).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관할을 거부할 수 없다. 즉 ① 당사자 간 서면계약에 따른 관할권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 간의 소송이 싱가포르 이외의 관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 관한 관할권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Rules of Court O. 110, r. 8(2)), ② 전항과 같이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국제적 및 상업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Rules of Court O. 110, r. 8(3)).

제상사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이나 이를 집행함에 있어 싱가포르 외부의 법원 또는 재판소를 통한 구제절차를 포기¹⁵²⁾하겠다는 것으로 간주된다(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F(1)).

소송당사자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싱가포르 대법원의 상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29A(1)).¹⁵³⁾ 이러한 관할권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명령은 당해 법원에 제기된 모든 사건, 고등법원 일반부에서 국제상사법원으로 이관된 사건,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에 대한 항소사건, 상고법원에 제기된 모든 사건에 유효하게 적용된다(Rules of Court O. 110, r. 2).

3. 재판부의 구성

(1) 법관의 임명과 심리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법원장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기가 정하여 진다. 이때 법원장은 대법관, 선임법관 또는 국제법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나(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B(1)),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법원장을 겸한다(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B(2)).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모든 소송은 단독 법관 또는 3명¹⁵⁴⁾의 법관에 의해 심리 및 판결이 이루어진다(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G). 이때 3명의 법관으로 구

152) 그러한 포기는 구제수단을 포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153) 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29A(1) In the following cases, permission is required before an appeal may be brought against a decision of the General Division made in the exercise of its original or appellate civil jurisdiction: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4) 3명의 법관으로부터 심리를 받는 경우는 소송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거나,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를 수 있으며(Rules of Court O. 110, r. 53(1)), 3명의 법관 중 누구든지 그 소송에서 중간신청이나 사건관리회의를 심리할 수 있다(Rules of Court O. 110, r. 53(1A)). 또한 대법원법 §54(1) 및 §58에도 불구하고 상고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소송당사자들의 동의가 있거나 대법원장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5명의 법관에 의해 심리되어야 한다(Rules of Court O. 110, r. 53(2)).

성될 때에는 대법원장이 법관 중 1명을 재판장으로 임명하며(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H(2)), 법관의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H(3)). 또한 법관 1명이 어떠한 이유로든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건은 재심리되어야 하고(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H(4)), 다른 2인의 법관은 소송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을 계속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H(5)). 이때 2명의 법관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되지만(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H(6)(a)), 2명의 법관이 청구, 반소 또는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반소 또는 신청은 기각된다(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H(6)(b)).

(2) 국제법관의 임명과 심리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소속 법관은 외국인으로서 국제법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는데,¹⁵⁵⁾ 이때 대법원장은 국제법관으로서 필요한 자격, 경험 및 전문적 지위를 갖춘 자라고 판단되는 자를 임명할 수 있다(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95(4)(c)). 국제법관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임명될 수 있으며(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95(5)(b)), 특정 사건에 한하여만 심리 및 판결을 할 수 있다(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95(5)(a)). 국제법관이 심리 및 판결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는 의회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Constitution of the Republic

155) 이는 국제적 분쟁해결의 핵심은 재판부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즉 국제상사중재의 원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사자들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이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법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싱가포르 외에도 아부다비, 두바이, 카타르,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에서도 국내 및 국제법관을 임명하고 있으며, 이때 임용되는 국제법관은 은퇴한 영국법관이나 호주, 캐나다, 홍콩,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등 보통법 국가의 법관으로 구성함으로써 이들의 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인다고 한다. 반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중국(다만 중국은 국제법, 상법 및 자국 관할법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상법전문가위원회’를 두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특징을 보임)의 경우 자국의 법관들로만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에 국제재판소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된다(Man YIP/Giesela Rühl, “Success and Impac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A First Assessment”, Yearbook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24 (2022–2023), p. 7).

of Singapore §95(10)).

4. 외국 변호사의 소송대리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법정에서 외국 변호사의 변론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싱가포르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특정 사건에 한하여 변론권을 인정한다.¹⁵⁶⁾ 즉 외국 변호사나 외국 법률전문가도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소송당사자나 상고사건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할 수 있다(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M). 이때 외국 변호사나 외국 법률전문가 등은 Part 4B of the Legal Profession Act 1966¹⁵⁷⁾에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즉 ① 외국법에 관한 교육, 연구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외국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②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또는 상고법원이 외국법 문제를 증거가 아닌 제출에 기초하여 외국법 문제를 결정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할 자로 명시된 자이어야 한다(Legal Profession Act 1966 §36O(1)(a)). 그러나 여기에는 ① 자격증명이 가능한 변호사(advocate)와 법무사(solicitor), ② §15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자,¹⁵⁸⁾ ③ §36P에 따라 등록된 외국 변호사¹⁵⁹⁾는 포함되지 않는다(Legal Profession Act 1966 §36O(1)(b)).

위와 같이 외국 변호사의 소송대리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지만, 외국 변호사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중재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 변호사의 소송대리에 관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소송제도는 싱가포르 증거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연한 증거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

156) 김정환, 앞의 논문, 258면; Legal Profession Act 1966 §15.

157) <<https://sso.agc.gov.sg/Act/LPA1966?ProvIds=P14B-#P14B->>

158) 이는 임시변호사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은 특정 사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법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① 왕실 자문변호사(His Majesty's Patent as King's Counsel), ② 왕실자문변호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 대상이 된다(Legal Profession Act 1966 §15(1)(a)).

159) 이들은 외국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나 상고소송의 예비절차에서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또는 상고법원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변론을 하거나, 싱가포르 법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Legal Profession Act 1966 §36P(1A)).

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¹⁶⁰⁾

5. 판결문의 비밀유지명령

다국적 기업은 비밀유지의 문제로 소송보다는 중재를 선호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의 비밀유지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만 인정된다.¹⁶¹⁾ 즉 법원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건에 관한 비밀유지를 명령할 수 있다.¹⁶²⁾ 즉 ① 사건을 비공개로 심리하도록 하는 명령, ② 어느 누구도 사건과 관련된 정보나 문서를 공개하거나 출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③ 법원기록을 봉인하도록 하는 명령이 있으며¹⁶³⁾,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령할 수 있다(Rules of Court O. 110, r. 30(1)). 법원이 비밀유지를 위한 명령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사건이 국외사건인지 여부, 비밀유지에 관한 소송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Rules of Court O. 110, r. 30(2)).

소송당사자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당사자가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당사자가 소송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함)을 법원에 알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비밀유지를 원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거나, 그 비밀을 유지해야 할 사항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할 때에는 판결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판결문의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Rules of Court O. 110, r. 31(2)(3)). 그러나 법원의 비밀유지에 관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의 공개는 상사 판례의 발전과 상관습법의 근원이 된 국제상사법의 발전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므로¹⁶⁴⁾ 법원은 그 판결이 중요한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Rules of Court O. 110, r. 31(1)).

160) 김효정, 앞의 논문, 146면.

161) 박준선, 앞의 논문, 224면.

162) 법원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Rules of Court O. 110, r. 30(12)).

163) 법원기록이 봉인된 경우에는 당사자 외의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Rules of Court O. 110, r. 30(10)).

164) 박준선, 앞의 논문, 224-225면.

IV. 검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중재기관인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등과는 달리 국제적이고, 상업적인 사건만을 심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싱가포르 대법원의 일부인 고등법원 산하 특별부서로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독립된 법원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싱가포르 내부에서는 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이 국제중재제도 육성사업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존재하기는 하나 이 두 기관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가 보다는 분쟁당사자들의 분쟁해결방식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¹⁶⁵⁾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심리사건 및 임기 등의 제한이 있기는 하나 국제법관의 임명을 인정함으로써 국제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확장시켰으며, 판결문의 공개가 중요한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제도의 이점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상사법원의 관할을 적용할지 여부를 소송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심리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국제적 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의 표본이 되는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 독일

I. 개관

독일의 상사법원은 프랑스 나폴레옹 상법전의 영향과 종교전쟁 등 역사적 관계 속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을 비롯한 중부유럽에서 벌어진 종교전쟁 이후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는 상법 성문화 작업을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1673년 상업법령(Ordonnance du commerce)과 1681년 해상법령(Ordonnance

165) 박준선, 앞의 논문, 226면.

de la marine)을 제정하였다. 이 두 법률은 1807년 나폴레옹 상법전(Code de commerce)의 기초가 되었다. 나폴레옹 상법전은 프랑스 뿐만 아니라 폴란드, 룩셈부르크, 독일의 일부 지역 등의 상법 체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 프랑스 상법전(1808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한 특별상사법원의 설립에 관한 것이다. 특별상사법원은 상인으로만 구성되어 상거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유형의 프랑스 상사법원이 독일 라인란트 지역으로 이전되면서 상사법원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물론 독일의 최초 상사법원은 1804년 뉘른베르크에 설립되었는데, 당시 변호사 한 명과 상인 두 명으로 구성되었던 법원의 특징은 ‘독일의 사법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오늘날 상사법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⁶⁶⁾

현재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만하임, 프랑크푸르트암마인 등의 각 지방법원은 상사재판부를 두고 있으며, 베를린, 본, 브레멘, 쾰른,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만하임, 슈투트가르트의 각 지방법원은 국제상사재판부를 두고 있다. 국제상사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국제상사분쟁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만, 국제 상사법의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상사재판부도 존재한다.¹⁶⁷⁾ 그러나 소송사건의 감소 및 독일의 사법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주장됨에 따라 독일 내에서는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Justizstandort-Stärkungsgesetz)을 시행함으로써 각 주법을 통해 상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큰 변화를 시도하였다.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은 기존의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써 상사재판부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의 법원조직법상 상사재판부 설립에 관한 사항,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의 주요 내용, 현재 도입된 각 주별 상사법원의 특징을 검토한다.

166) Eberhard Kramer, “Die Geschichte der Handelsgerichtsbarkeit”, 17. Oktober 2002, p. 2.

167) 김효정, 앞의 논문, 144면.

II. 법원조직법상 상사부에 관한 사항

독일 법원조직법 제7편 상사부라는 편제 하에 제93조 내지 제114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다. 주로 상사부의 법적 지위, 상사사건의 범위, 상사부의 관할, 상사법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1. 상사부의 법적 지위

주 정부는 법규에 따라 각 관할구역 또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상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재판부는 지방법원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소재할 수 있으며(§93(1)), 주정부는 상사부의 설치권한을 주사법부에 위임할 수 있다(§93(2)). 또한 지방법원에 귀속되지 않는 모든 민사사건은 상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포함하여 민사부에서 심리하며(§71(1)), 지방법원에 상사부가 설치된 경우 당해 상사부는 상사사건에 대하여 민사부를 대체한다(§94).

2. 상사사건의 범위

상사사건이란 민사소송을 통해 일정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① 당사자 쌍방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인(법인 포함)에 대한 청구권, ② 금융 및 은행 소송, ③ 기업 관계(회사 또는 상업 파트너십 구성원 간, 또는 상업 파트너십 관리자와 회사 간)에 발생하는 청구, ④ 주식회사 관련 소송, ⑤ 지식재산 관련 소송(등록상표, 등록디자인 침해에 따른 청구), ⑤ M&A 소송(이전 소유자와 인수자 간의 상업적 사업인수와 관련된 법적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 ⑥ 불공정경쟁 소송, ⑦ 해사소송, ⑧ 손해배상 청구를 제외한 경쟁소송이 포함된다(§95).

3. 상사부의 관할

원고가 상사부에서 심리를 받기를 신청한 경우 상사부가 소송을 심리하고, 구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원고는 구법원에 상사부에서 심리할 것을 신청해야 한다(§96). 또한 상사부 관할에 해당되지 않는 소송이 심리에 회부된 경우 그 소송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민사법원에 회부되며, 소제기 또는 반소가 상사부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본안심리와 그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직권으로 민사부에 사건을 이송해야 하고, 피고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없다 (§97(2)). 반면 상업적 평가를 토대로 충분히 판결할 수 있는 대상 및 상관행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상사부가 자체 전문지식을 토대로 재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114).

4. 상사법관의 자격

독일은 연방법관과 주법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을 제정하였다. 독일 연방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제98조 제1항¹⁶⁸⁾과 제3항¹⁶⁹⁾은 독일의 연방법관과 주법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¹⁷⁰⁾을 연방법률과 주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연방은 연방법률인 독일 연방법을, 16개 주에 서는 주법률인 주법관법을 각기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¹⁷¹⁾

그에 따라 상사부는 선임 전문법관(senior professional judge) 1명과 명예법관(honorary judge)을 겸임하는 2명의 일반인 법관(lay judge)으로 구성된다.¹⁷²⁾ 일반인 법관은 독일인으로서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인 간의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직무의

168) §98(1) Die Rechtsstellung der Bundesrichter ist durch besonderes Bundesgesetz zu regeln. (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별도의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169) §9(3) Die Rechtsstellung der Richter in den Ländern ist durch besondere Landesgesetze zu regeln, soweit Artikel 74 Abs. 1 Nr. 27 nichts anderes bestimmt.
(각 주법관의 법적 지위는 제74조 제1항 제27호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주법률으로 정한다.)

170) 여기에서 법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법관의 유형, 법관직의 부여, 행사, 변경, 종료와 관련된 모든 복무법과 조직법상의 규정을 말한다.

171) 김봉철,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2020-12, 사법정책연구원, 2020, 9면.

172) 김효정, 앞의 논문, 169면.

특성에 따라 상업등기부나 조합등기부에 상인, 법인의 임원, 법인의 영업책임자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109(1)).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실무가를 개입시키지 않고 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다.¹⁷³⁾ 또한 해상지역에서는 해상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명예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110). 명예법관은 임기 내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법관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112), 명예법관으로서의 자격 일부를 상실하거나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명예법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된다(§113). 이러한 상사법관의 임기는 5년이고 재임용도 가능한데(§108), 법원조직법은 상사법관의 임명절차, 형식, 시기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법률에 따라 정해지거나, 주법무부장관이 상사법관의 임명권을 가진다.¹⁷⁴⁾

III. 독일의 상사법원 설립에 관한 법제도

1. 도입배경

독일의 사법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2020년 9월 연방 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BMJ)는 민사법원의 1심 재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러한 원인을 분석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2023년 4월 발표된 “민사법원 접수 건수 감소의 원인 분석”에 관한 최종보고서¹⁷⁵⁾에 따르면 약 7,500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송의 감소 원인이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소송에 임하는 노력과 비용의 가중, 소송절차의 장기화, 승소 가능성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¹⁷⁶⁾ 또한 2005년 이후에는 중재기관에 접수된 사건 수가 약 5만 건에서 약 6만

173) 김효정, 앞의 논문, 170면.

174) 김주경,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7-06, 사법정책연구원, 2017, 146면.

175) Caroline Meller-Hannich/Armin Höland/Monika Nöhre Et al, “Erforschung der Ursachen des Rückgangs der Eingangszahlen bei den Zivilgerichten”, Abschlussbericht zum Forschungsvorhaben, Berlin, 21. April 2023.

176) Ibid, p. 342.

건으로 증가한 반면 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약 50만 건이 감소하는 등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의 활용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¹⁷⁷⁾

특히 기업인만 참여하는 소송절차나 대규모 경제 분쟁의 경우 소송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소송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소송의 지연문제와 비효율성, 재판과정이 독일어로 이루어지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법원조직법 제184조 제1문)¹⁷⁸⁾으로 인하여 기업의 내부절차나 영업비밀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로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케 한다는 점 등이 독일에서의 소송을 주저하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법원에 설치된 상사사건 전담재판부(법원조직법 제93조)¹⁷⁹⁾를 통해 상사사건(법원조직법 제95조)과 관련하여 기업간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이는 기업이 독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주저하는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¹⁸⁰⁾

무엇보다 변호인들이 기업에 대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송제도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 중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사항은 기업/상법 영역에서는 ‘소송절차 지연(71.5%)’, ‘승소 불확실(66.9%)’,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42.2%)’이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영역의 경우에도 각각 ‘소송절차 지연(69.5%, 70.7%)’, ‘승소 불확실(64.9%, 58.2%)’,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34.2%, 34.2%)’을 순으로 나타냈다.

177) Ibid, p. 341.

178) Gerichtsverfassungsgesetz(GVG) §184 S.1 “Die Gerichtssprache ist deutsch(법정용어는 독일어이다).”

179) GVG §93 (1) Die Landesregierungen werden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bei den Landgerichten für deren Bezirke oder für örtlich abgegrenzte Teile davon Kammern für Handelssachen zu bilden. Solche Kammern können ihren Sitz innerhalb des Landgerichtsbezirks auch an Orten haben, an denen das Landgericht seinen Sitz nicht hat(주정부는 법규명령으로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또는 격리된 지역에 상사부를 둘 수 있다. 상사부는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및 지방법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도 둘 수 있다). (2) Die Landesregierungen können die Ermächtigung nach Absatz 1 auf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übertragen(주정부는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주법무부에 위임할 수 있다).

180) Ibid, pp. 11-12.

[표-9] 기업에 대하여 소송제도를 권장하지 않는 요인¹⁸¹⁾

(단위 : %)

	승소 불확실	소송 비용	소송절차 지연	소송절차 및 사법시스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	법률비용 보험의 불충분	법률지원 가능성의 부존재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전체 (n=1,899)	66.2	52.0	59.9	5.2	24.2	36.9	19.2	36.9
법률 영역								
일반 민법 (n=1,070)	68.7	54.0	58.5	4.9	21.2	44.0	24.1	12.7
의료과실법 (n=72)	80.6	61.1	68.1	5.6	23.6	59.7	26.4	20.6
건축법 (n=239)	59.0	42.7	77.4	7.1	38.9	17.2	6.7	33.1
가족법/상속법 (n=484)	69.0	59.9	56.0	4.5	15.3	48.8	37.6	38.6
기업/상법 (n=396)	66.9	42.9	71.5	6.3	42.2	13.1	3.5	39.4
중소기업 (n=763)	64.9	8.8	69.5	5.6	34.2	17.7	4.8	37.0
대기업 (n=184)	58.2	34.2	70.7	6.0	34.2	7.6	1.1	44.0
부동산법 (n=279)	66.3	47.3	69.9	5.7	29.0	20.4	7.9	36.6
임대/재산 소유권법 (n=466)	68.5	54.3	53.4	3.9	15.2	46.6	26.4	34.3
소비자법 (n=83)	73.5	55.4	62.7	6.0	24.1	56.6	33.7	33.7

181) Ibid, "Tabelle 113: Frage 12: Welche Gründe haben Sie generell dafür, Ihren Mandanten von der Klage abzuraten?, Abgleich mit Sachgebieten und Mandantschaft", pp. 394-396에서 표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는 변호사 1,899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한 것으로 복수응답이 반영된 결과이고, 요인별 평균 %와 편차가 5% 이상인 경우 음영처리를 하였다.

독일은 위와 같이 독일 내에서의 소송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고 국제상사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2025년 4월 1일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Justizstandort-Stärkungsgesetz)’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주는 상사법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물론 독일 내에서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국제상사문제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이미 존재했었고, 그 중 일부는 영어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역의 세계화와 영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상사재판부로서 기능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었고, 독일 사법부의 현대화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¹⁸²⁾

2.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의 주요 내용

(1) 개관

2024년 10월 7일 독일 연방의회는 독일을 사법의 중심지로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였고, 상사법원과 민사소송에서 영어를 법정언어로 인정하기 위한 내용의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을 통과시켰다.¹⁸³⁾ 이 법은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 독일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일부 조문을 개정(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조직법과 관련하여 주정부에 상사법원의 설립 권한이 있다는 사항, 상사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대상사건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영어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법원조직법 개정 사항

2025. 4. 1. 시행된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Justizstandort-Stärkungsgesetz)’에 따른 상사법원은 법원조직법 §119b의 신설을 통해 관할권이 인정되고 있다.¹⁸⁴⁾ 이를 통해 상

182) <https://www.rosepartner.de/blog/commercial-courts-in-deutschland.html> (최종방문 2025.06.10)

183) <https://www.recht.bund.de/bgb/1/2024/302/VO.html> (최종방문 2025.06.12.)

184) <https://www.gesetze-im-internet.de/gvg/BJNR005130950.html> (최종방문 2025.06.12.)

사법원의 설립 권한, 심리절차, 심리대상 사건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상사법원의 설립 및 관할 확정

주정부는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하나 이상의 상사법원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19b(1)).¹⁸⁵⁾ 그에 따라 한 주에 수 개의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고등법원의 지위를 넘어서는 상사법원을 둘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119b(3)). 또한 여러 주에서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의 형태로 공동상사법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상사법원의 관할은 합의에 의해 국경을 벗어나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119b(6)). 이러한 국제적 협정에 관한 사항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119b(7)).

② 상사사건의 이송 및 심리

상사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상사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나, 합의에 있어 어떠한 형식적인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사법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원고는 소장을 통해 상사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119b(2)). 또한 독일 민사소송법 §611(1)에 따라 소송당사자 일방이 사건을 상사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다른 소송당사자도 동의한 때에는 사건은 다른 법원에서 상사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185) §119b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법원조직법상 고등법원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1개 이상의 민사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119a(1)). 그 전문분야로는 은행·금융업 관련 소송, 건축·건축가계약 및 건설용역과 관련된 기사계약 관련 소송, 치료 관련 소송, 보험계약관계 관련 소송, 언론·라디오·영화 및 텔레비전을 통한 각종 인쇄물·영상매체 및 음성매체의 발표에 기초한 청구권에 관한 소송, 상속소송, 도산소송·「취소법」에 따른 취소사건·「기업안정·구조조정법」에 근거한 소송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을뿐 ‘상사사건’을 전문분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본 규정의 신설에 따라 고등법원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상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③ 상사사건의 유형

상사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최저소가가 50만 유로를 초과하고,¹⁸⁶⁾ 다음 세 가지 분쟁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즉 기업 간 분쟁(단 지식재산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은 제외함), 기업 인수 또는 지분 취득 관련 분쟁, 기업과 경영진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 간 분쟁이어야 한다(§119b(1)).

법원조직법에서는 상사법원에서 처리하는 상사사건의 유형을 기업의 경영적·법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거래, 지분계약을 포함한 재산이전, 기업관련자의 책임으로 구분하여 광범위하게 확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같이 비즈니스 코트에서 관할하는 사건 43가지를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업경영의 예측불가능한 쟁점을 포섭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의 당사자가 주주와 기업을 배제하고 기업과 기업의 경영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 등의 유효성 내지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 대세적 효력과 관련된 분쟁을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¹⁸⁷⁾

(3) 민사소송법 개정 사항

가. 제3자 소송참가와 영문서면

법원조직법 §184a(1)에 따라 영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장에 명시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소송절차를 영어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내용을 소장에 명시해야 한다(§606).

그러나 영어로 진행되는 소송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문서면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제3자에게 있음을 독일어로 통지해야 하고(§607(1)), 제3자가 영어로 작

186) 최저소가의 기준을 정한 것은 복잡한 상사사건이 아님에도 상사법원에서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사안이 폭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또한 독일의 최저소가의 경우 미국의 상사법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소가기준을 두었던 경우(\$50,000)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과연 제소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이 심리사건의 증가를 방지하고, 복잡한 상사사건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나아가 제소기준의 높아 상사법원이 전문법원으로써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김효정, 앞의 논문, 161면).

187) 김효정, 앞의 논문, 161면.

성된 서면을 이해하지 못하여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독일어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607(2)), 제3자에게 영어서면과 독일어 번역문을 함께 발송해야 한다. 이때 서면의 발송일은 영문서면과 독일어 번역문이 발송된 날로 하며, 그 발송으로 인하여 기한이 유지되거나 시효가 다시 시작되거나 중단되는 때에는 그 효력은 영문서면이 제3자에게 최초로 발송된 날 발생한다(§607(3)). 또한 영문서면의 번역에 따른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607(4)).

또한 영어로 진행된 소송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상고장은 영어로 제출해야 하지만(§609(1)), 연방최고법원에 영어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상고장은 독일어로 제출해야 한다(§609(2)).¹⁸⁸⁾

나. 영업비밀보장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에서 다루는 민사소송법의 개정 사항 중 주된 내용은 ‘비밀 유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소송 중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일 영업비밀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2(1)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정보에 관하여는 독일 영업비밀보호법 §16 내지 §20가 적용된다고 보았다(§273a).

여기에서 독일 영업비밀보호법 §2(1)에 따른 영업비밀정보란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다루는 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합법적인 권리자가 기밀유지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따른 합법

188) §609 Rechtsmittelschrift

- (1) Rechtsmittelschriften gegen Entscheidungen in Verfahren, die in englischer Sprache geführt worden sind, sind in englischer Sprache einzureichen.
- (2) In Verfahren vor dem Bundesgerichtshof gilt Absatz 1 nur, wenn ein Antrag nach § 184b Absatz 1 Satz 1 Nummer 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gestellt wird. Wird der Antrag abgelehnt, ist die Rechtsmittelschrift auf Anforderung des Gerichts in deutscher Sprache nachzureichen.

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렇게 영업비밀정보와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경우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분쟁대상인 정보가 영업비밀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로 분류할 수 있고(§16(1)), 영업비밀 소송에 관여하거나 소송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증인, 전문가, 기타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은 기밀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야 하고, 소송절차가 아닌 외부에서 이를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서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16(2)). 이러한 영업비밀보장 의무는 소송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적용되나,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통해 분쟁대상인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거나 분쟁대상인 정보가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취급하는 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거나 접근이 용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8).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수의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정보로의 접근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해야 하고(§19(1)), 법원이 분쟁대상인 정보를 기밀대상으로 분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가 진술열람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영업비밀정보가 포함된 진술은 삭제한 파일로 제공할 수 있다(§16(3)).

IV. 독일의 상사법원 설립 유형

1. 개관

독일의 사법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 4월 발효된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에 따라 연방주 차원에서 상사법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법원은 국제상사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물론 일부 지방법원에는 국제상사분쟁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가 구성되어 있었고, 일부 재판부는 영어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지만, 상사재판부roman 대응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그리하여 상사법원을 고등법원 내 상사법원이나 지방법원 내 전문부서인 상사부를 신설하였다.

이하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상사법원과 슈투트가르트 상사법원, 베를린 상사법원, 브레멘 상사법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상사법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2. 바덴뷔르템베르크 상사법원

(1) 내용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 4월 4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에서는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 산하에 바덴뷔르템베르크 상사법원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지방법원 산하에 상사법원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기업인수와 기업법 분야의 분쟁을 중심으로 다룬다.¹⁸⁹⁾ 소송당사자들은 서로 합의 하에 분쟁금액이 5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상사법원을 1심 법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상사법원이 1심 법원으로 기능하는 때에는 소송당사자는 합의 하에 사전허가 없이도 언제든지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상사법원과 슈투트가르트 상사법원은 관할권의 확정과 소송사건 등을 정함에 있어 슈투트가르트 모델 조항(Stuttgarter Musterklause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물론 이 조항은 법원조직법의 상사법원에 관한 규정 일부와 ‘1998년 11월 20일 사법권한에 관한 법무부령(Verordnung des Justizministeriums über Zuständigkeiten in der Justiz (Zuständigkeitsverordnung Justiz - ZuVOJu))’ 제7조에서 정하는 상사법원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 것이기에 크게 차이는 없다.

즉 (1) 본 계약, 그 유효성, 해석 및 이행(부속서 포함) 또는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전속적 국제 및 현지 관할 법원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이며, (2) 당사자들은 (분쟁금액이 50만 유로 이상인 사건에 대하여)¹⁹⁰⁾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의

189) <https://www.commercial-court.de/> (최종방문 2025.06.13.)

190) 1998년 11월 20일 사법권한에 관한 법무부령(Verordnung des Justizministeriums über Zuständigkeiten in der Justiz (Zuständigkeitsverordnung Justiz - ZuVOJu)) 제7조 (상사법원) 규

바덴뷔르템베르크 상사법원이 제1심 법원으로서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¹⁹¹⁾

또한 위 법무부령 제7조 (3)항에 따라 상사법원의 법정언어는 독일어와 영어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슈투트가르트 조항 (4)에서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무부령 제7조 (4)항에 따라 상사법원은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산하의 상사법원(즉 상사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할 수 있음을 정하였다.

정에 따르면, (2) 상사법원은 법원조직법 제119조b항 2의 조건에 따라 카를스루에 및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 관할구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며, 분쟁가액이 50만 유로 이상인 다음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즉 1. 독일 민법 제14조에 따른 기업법 분야의 기업 간의 민사소송, 2. 회사 또는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3. 회사와 경영진 또는 감독위원회 구성원 간의 분쟁이 해당된다. 또한 (1)항(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에는 상사법원으로서 1개 또는 그 이상의 상급법원이 설치된다)에 따른 관할권은 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이 있거나 다른 전속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동 법무부령 제13조 (2)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7 Commercial Court

- (1) Beim Oberlandesgericht Stuttgart werden ein oder mehrere Senate als Commercial Court eingerichtet.
- (2) Der Commercial Court ist im ersten Rechtszug für die Bezirke der Oberlandesgerichte Karlsruhe und Stuttgart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119b Absatz 2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für folgende Streitigkeiten mit einem Streitwert ab 500 000 Euro zuständig:
 1. bürgerliche Rechtsstreitigkeiten zwischen Unternehmern nach § 14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auf dem Gebiet des Gesellschaftsrechts;
 2. Streitigkeiten aus oder im Zusammenhang mit dem Erwerb eines Unternehmens oder von mindestens 3 Prozent der Anteile an einem Unternehmen;
 3. Streitigkeiten zwischen Gesellschaft und Mitgliedern des Leitungsorgans oder Aufsichtsrats.Die Zuständigkeit nach Satz 1 gilt auch, soweit eine ausschließliche Zuständigkeit des Landgerichts oder ein sonstiger ausschließlicher Gerichtsstand besteht. Von Satz 1 ausgenommen sind die in § 13 Absatz 2 genannte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sowie Streitigkeiten und Verfahren nach § 119b Absatz 1 Satz 4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 (3) Die Gerichtssprachen am Commercial Court sind Deutsch und Englisch.
- (4) Dem Commercial Court werden die Verhandlung und Entscheidung über die Rechtsmittel der Berufung und der Beschwerde gegen Entscheidungen der Commercial Chambers am Landgericht Stuttgart zugewiesen.

<<https://www.landesrecht-bw.de/bsbw/document/jlr-GerZustJuVBWV63P7>>

191) <https://www.commercial-court.de/stuttgarter-musterklausel> (최종방문 2025.06.13.)

(2) 검토

바뎀뷔르템베르크 상사법원과 슈투트가르텐 지방법원 산하의 상사법원의 경우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의 개정사항인 반영된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하는 상사법원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 소송에 관한 사항을 관할대상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특기할 점은 ‘회사 또는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서 ‘회사 주식의 3%’라는 세부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나 의결권행사 제한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회사 지분의 3%가 가지는 의미는 결코 가벼울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회사 지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회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상사법원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3%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경영 관점에서는 경영권이나 의결권 확보 측면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영역이므로 3% 이상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베를린 상사법원

(1) 내용

2025년 4월 1일 베를린에서는 건설 및 건축법을 전문으로 하는 상사법원이 고등법원 산하,¹⁹²⁾ 그리고 베를린 제2지방법원 산하에 설립되었다.¹⁹³⁾ 이를 통해 독일과 해외 건설사업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베를린 제2지방법원 산하의 상사법원에 제기된 사건에 대한 항소는 연방법원, 즉 고등법원 산하의 상사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된다. 베를린 상사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은 ‘건설 및 건축계약, 건설서비스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계약’으로 인하여 기업 간 발생하는 분쟁에 해당하며, 분쟁가액은 5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상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92) <https://www.berlin.de/gerichte/kammergericht/das-gericht/commercial-court/> (최종방문 2025.06.13.)

193) <https://www.berlin.de/gerichte/landgericht-zivil/das-gericht/zustaendigkeiten/commercial-chambers/artikel.1546578.php> (최종방문 2025.06.13.)

관할법원의 지정과 관련하여, 분쟁가액이 5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소송당사자는 지방법원 산하의 상사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고등법원 산하의 상사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상사법원의 법관 구성과 관련하여, 제9민사부(Civil Chamber 9)는 3명의 전문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사부(Commercial Affairs Chamber)는 1명의 전문법관과 2명의 상사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검토

앞서 살펴보았던 건축법 분야의 경우에도 독일 내에서 소송을 권장하지 않은 요인 중 다수를 차지했던 부분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이 자리잡고 있는데, 건설 및 건축법 전문 상사법원이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베를린 상사법원은 건축 및 건설계약 관련 분쟁을 주로 심리하므로 이 외의 분쟁사건의 경우 기존과 같이 베를린 제2지방법원 산하에 있는 국제상사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지방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영어로 구두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제상사법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절차에 있어 선택의 기회가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다.¹⁹⁴⁾

4. 브레멘 상사법원

(1) 내용

브레멘에서는 항공우주, 물류 및 해상무역을 위하여 한자고등법원 산하에 한자상사법원(Hanseatic Commercial Court Bremen, HCCB)을 개설하였고, 이를 위하여 2025년 4월 3일 '자유 한자 도시 브레멘의 항공우주, 물류 및 해상무역을 위한 한자상사법원의 설립 및 조직에 관한 조례 -브레멘 상사법원 조례-(Verordnung zur Errichtung und

194) <https://www.berlin.de/gerichte/landgericht-zivil/das-gericht/zustaendigkeiten/internationale-kammern/artikel.1546518.php> (최종방문 2025.06.13.)

Ausgestaltung des Hanseatic Commercial Court for Aerospace, Logistics and Maritime Trade der Freien Hansestadt Bremen (Bremische Commercial Court Verordnung - BremCCVO))'를 공포하였다.¹⁹⁵⁾ 브레멘 상사법원 조례는 총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 자유 한자 도시 브레멘의 항공우주, 물류 및 해상무역을 위한 한자상사법원의 설립 및 관할권(Einrichtung und Zuständigkeit des Hanseatic Commercial Court for Aerospace, Logistics and Maritime Trade der Freien Hansestadt Bremen (Hanseatic Commercial Court Bremen - HCCB)), 제2조 법정 언어(Gerichtssprache)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제1조 한자상사법원의 설립 및 관할권과 관련하여, 브레멘의 한자고등법원 산하에 상사법원으로서 상급법원을 설치하며, 이는 자유 한자 도시 브레멘의 항공우주, 물류 및 해상무역을 위한 한자상사법원으로 정함을 밝히고 있다(§1(1)). 또한 브레멘 한자상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분쟁가액이 50만 유로 이상인 기업간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한자고등법원 내 상사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1심으로 판결하며(§1(2)), 법정 언어는 독일어와 영어를 인정한다(§2).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사건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독일 상법 제4편에 규정된 운송, 운송주선 또는 창고거래와 독일 상법 제5편에 규정된 계약유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1(2)1.), ② 다음의 계약이 소송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수소생산설비 또는 그 구성요소(§1(2)2.a)),¹⁹⁶⁾ 수소의 매수 또는 매도(§1(2)2.b)), 민간항공기술(§1(2)2.c)),¹⁹⁷⁾ 우주, 지구궤도 또는 천체에서 사용되거나 우주

195) Gesetzblatt der Freien Hansestadt Bremen, "Verordnung zur Errichtung und Ausgestaltung des Hanseatic Commercial Court for Aerospace, Logistics and Maritime Trade der Freien Hansestadt Bremen (Bremische Commercial Court Verordnung - BremCCVO)", vom 2. April 2025.

196) 여기에는 해당 설비의 개발, 제조, 판매, 설치, 유지관리, 수리, 사용권의 양도 또는 훼손을 포함한다.

197) 여기에는 민간항공 분야의 기술, 시스템, 구성요소 또는 서비스의 개발, 제조, 유지보수, 운영 또는 규제를 포함한다. 특히 항공기, 엔진, 항공전자장비 또는 기타 항공 관련 구성요소의 개발, 생산 또는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나(§1(2)2.c)aa)), 항공기 또는 구성요소의 기술적 결함 또는 오작동 발생 시 책임문제와 관련된 분쟁(§1(2)2.c)bb))을 포함한다.

에서 사용되는 기술, 장치, 차량 또는 기반시설(우주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한다 (§1(2)2.d)).¹⁹⁸⁾ 또한 상기 언급된 소송사건의 유형과 관련하여 분쟁가액이 50만 유로 이상인 민사상 분쟁에 관한 지방법원 판결의 항소사건도 심리한다(§1(3)).

(2) 검토

한자상사법원은 독일 사법관할 강화법의 발효 당일 최초로 적용하여 등장한 사법기관으로, 항공우주, 수소에너지, 국제 해상무역, 물류 등을 담당하는 해양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브레멘에 항공우주 관련 전문상사법원을 설립하게 된 요인 중에서도 독일은 항공우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¹⁹⁹⁾ 특히 브레멘 지역에는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의 다양한 연구소 본부가 소재하고, Airbus, ArianeGroup 및 OHB 등 독일 내 주요 항공우주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NASA의 오리온 우주선에 장착될 로켓 상단부 등을 ESA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²⁰⁰⁾ 이러한 국가의 주력 경쟁산업, 지역적 강점 등을 고려한 상사법원의 설립과 운용은 상사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198) 여기에는 우주기술의 개발, 제조, 판매, 유지보수, 수리, 사용권 양도, 사용 또는 훼손과 관련된 분쟁 (§1(2)2.d)aa)), 우주활동 또는 물체로 인한 손상과 관련된 분쟁 (§1(2)2.d)bb)), 우주연구 및 상업우주활동과 관련된 분쟁 (§1(2)2.d)cc))을 포함한다.

19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독일, 항공우주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 2006.05.04. (최종방문 2025.06.12.)

<http://kistep.re.kr/gpsNewsForeignView.es?mid=a30301000000&list_no=13232&nPage=3517>

200) 주함부르크총영사관, “북독일 4개주 정세 및 경제동향(2024.7.8.-7.21)”, 2024.07.23.

<https://overseas.mofa.go.kr/de-hamburg-ko/brd/m_9687/view.do?seq=134024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q_2=0&company_cd=&company_nm=>>

5.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상사법원

(1) 내용

2025년 4월 초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산하에 상사법원을 개설하였으며, 여기에서는 50만 유로 이상의 기업거래, 기업법, 건설법, 보험법 관련 분쟁을 다룬다. 이때 기업이 고등법원을 제1심으로 다루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리하게 된다.²⁰¹⁾

상사법원에 의한 소송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2025년 4월 1일 ‘상사법원 및 상사부 설립에 관한 조례(Verordnung über die Einrichtung eines Commercial Courts und von Commercial Chambers (Commercial-Court- und Commercial-Chambers-Verordnung))’를 발효시켰다.²⁰²⁾ 상사법원 및 상사부 설립에 관한 조례는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 상사법원(Commercial Court), 제2조 상사부(Commercial Chambers), 제3조 발효(Inkrafttreten)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제1조 상사법원과 관련하여, 상사법원은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 설립되며(§1(1)), 다음의 분쟁 중 가액이 5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상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1(2)), 이러한 소송은 영어로 진행될 수 있다(§1(3)). 즉 상사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송사건의 유형을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독일 민법 제14조에 규정된 기업 간 민사소송(산업재산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청구권은 제외함)으로써(§1(2)1), 여기에는 건설 및 건축계약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계약에서도 건설 작업과 관련된 경우(§1(2)1.a)), 보험계약 특히 이사 및 임원책임보

201) Anna Englert, “Inkrafttreten des Justizstandort-Stärkungsgesetzes: Neue Impulse für die deutsche Rechtsordnung”, 14. April 2025. (최종방문 2025.06.13.)

<<https://www.taylorwessing.com/de/insights-and-events/insights/2025/04/inkrafttreten-des-justizstandort-staerkungsgesetzes>>

202) Verordnung über die Einrichtung eines Commercial Courts und von Commercial Chambers (Commercial-Court- und Commercial-Chambers-Verordnung), Vom 1. April 2025.

<https://recht.nrw.de/lmi/owa/br_vbl_detail_text?anw_nr=6&vvd_id=22229&ver=8&val=22229&sg=0&menu=0&vvd_back=N> 최종방문 2025.06.13.)

협(D&O 보험)과 관련된 경우(§1(2)1.b)), 기업법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1(2)1.c)). ② 회사 또는 회사 주식의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분쟁(§119b(1)2., GVG), ③ 회사와 경영진 또는 감독위원회 구성원 간의 분쟁이 해당 된다(§119b(1)3., GVG).

제2조 상사부와 관련하여, 상사부는 뒤셀도르프(Düsseldorf) 고등법원 관할의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함(Hamm) 고등법원 관할의 빌레펠트(Bielefeld) 및 에센(Essen) 지방법원, 쾰른(Köln) 고등법원 관할의 쾰른 지방법원에 상사법원인 전문부서로 설립된다(§2). 상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다루게 된다.

즉 ① 분쟁가액이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사건이 해당된다. 즉 회사 또는 회사 주식을 주요 거래로 하는 매수 또는 교환계약, 회사, 회사의 일부 또는 회사의 주식매수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또는 그러한 매수 또는 매각에 앞서 진행된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분쟁을 포함하고(§2(2)1.a)), 회사법 합의에 기초한 회사 또는 회사주식의 인수(§2(2)1.b)), 기업결합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결합계약(§2(2)1.c))이 포함된다. ② 분쟁가액이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사건으로서 그 소송의 본질이 통신 및 정보기술 분야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기계 및 장비의 부품을 포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판매, 유지관리, 수리 또는 사용의 양도(§2(2)2.a)), (가령 IT 컨설팅 계약 또는 IT 교육 계약 등) 정보 및 통신기술과 관련된 서비스(§2(2)2.b))를 포함한다. ③ 분쟁가액이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사건으로서 그 소송의 본질이 설비 또는 설비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경우(§2(2)3.a)),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es)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거나(§2(2)3.aa)),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의 축진을 목표로 하는 경우(§2(2)3.bb)), 재생에너지법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청구에 근거하는 경우(§2(2)3.b))가 포함된다. ④ 법원조직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금액(5천 유로)을 초과하면서 본 조례 제1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발생하는(상사법원의 관할대상이 되는) 기타 사건을 포함한다.

또한 각 지역의 상사법원은 전문분야를 달리 확정하고 있는데, 분쟁가액이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사건으로서 기업거래와 관련된 경우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담당하며(§2(3)1.),

분쟁가액이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사건으로서 그 소송의 본질이 통신 및 정보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쾰른 지방법원이 담당한다(§2(3)2.). 또한 분쟁가액이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사건으로서 그 소송의 본질이 설비 또는 구성요소와 관련된 경우이거나 재생에너지법과 관련된 경우에는 빌레펠트 및 에센 지방법원이 담당하며(§2(3)3.), 분쟁가액이 5천 유로를 초과하는 사건으로서 상사법원의 관할대상이 되는 기타 사건의 경우 각 관할구역에 따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쾰른 지방법원, 에센 지방법원, 빌레펠트 지방법원이 담당한다(§2(3)4.). 다만 이러한 소송은 각 법원에 사건을 할당하는 범위 내에서 민사부와 상사부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2(5)), 소송당사자는 소송과정에서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2(6)).

(2) 검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상사법원으로서 기능하는 주요 4개의 각 지방법원은 그 전문분야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빌레펠트 및 에센 지방법원의 경우 재생에너지법, 쾰른 지방법원의 경우 정보기술 분야의 분쟁,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경우 기업거래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를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상사법원을 설치한다고 하여 각 상사법원이 상사거래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법원별 전문분야를 확정하여 관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도 재고해 볼 만하다. 이는 상사법원이 모든 상사거래를 포섭한다고 할 경우 상사거래와 관련된 전(全)분야의 전문법관을 확보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전문성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상사법원별로 전문분야를 특정한다면 동일 및 유사사건의 축적에 따라 전문성을 기를 수 있으며,²⁰³⁾ 이를 통해 소송당사자들도 승소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등 유용할 수 있다.

203) 중재판정의 경우 선례에 구속되지 않고, 중재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소송절차에 따른 판결과 같이 선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당사자들로 하여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김정환, 앞의 보고서, 14면).

V. 검토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가들에 비해 독일은 전문법원으로서 상사법원의 도입을 위한 법률이 최근 시행되었고, 이를 근거로 각급 법원에서는 상사법원을 속속 설치하기에 분주하다. 미국의 상사법원이나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경우 관할 대상이 되는 상사사건의 범위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법한데, 독일의 경우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색과 주력산업 등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전문분야를 관할대상 사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법원의 취지에 부합하게 전문성 강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또한 독일 사업관할 강화법의 개정을 통한 민사소송법 개정사항 중 당사자가 소송절차에서 영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그 소송이 제3자 소송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발송한 영문서면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하여, 소송은 중재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제기될 수 있고 국제적 사안이든 상사분쟁 사안이든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소송당사자 이외에도 제3자가 소송참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또한 분쟁대상인 정보가 기밀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재판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보호의무가 적용된다는 점 등의 사항은 다국적 기업 등을 포함하여 소송과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자료의 비밀성으로 인해 소송을 꺼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사소송의 활성화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개관

일본의 경우 상사법원에 관한 연구나 각 지방재판소 내지 고등재판소 등에 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등의 움직임은 없는 듯하다. 오히려 일본은 2003년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판의 장기미제화를 지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일환으로 2022년 비즈니스 코트 (Business Court)를 개원함으로써 국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하에서는 일본 사법기관이 국제적 분쟁의 허브로서 기능하고자 사법 서비스 개혁을 단행한 일련의 내용을 살펴본다.

II.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일본은 상사법원을 도입하는 것을 논하는 것보다도 기존 법원청사를 활용하여 주요 분과를 집약시킴으로써 국제적 법률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한 배경을 찾아본다면, 일본이 장기미제 사건 등 소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을 2003년 제정하고 2005년 7월 16일 공포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당해 법률은 ‘법관이 심리에 충실’하고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한다.²⁰⁴⁾

또한 11명으로 구성된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검토회(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検討会)’를 구성하여 법원의 심리기간이 장기화 되는 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 검증결과를 2년마다 공표하고 시책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검증작업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 검토회가 2017년까지 72회에 걸쳐 활동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법부 사법개혁에 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²⁰⁵⁾

204) 제1조 이 법은 사법을 통해 권리이익을 적절히 실현시키고, 그 외의 사법에 요구되는 역할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적정하며 충실한 절차 하에서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제도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5) 最高裁判所事務総局, “裁判の迅速化に係る 検証に関する報告書”, 令和5年7月, p. 1.

이러한 검증보고서에서는 법원의 심리기간이 장기화 되는 요인으로 ① 사건의 성질과 내용에 내재하는 요인, ② 당사자에 관한 요인, ③ 법원에 관한 요인, ④ 그 외의 요인 등으로 가설을 세우고,²⁰⁶⁾ 이 중 법원에 관한 요인으로는 법관이 사건 쟁점의 파악이나 정리가 불충분한 채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증거조사의 범위가 확장되어 심리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²⁰⁷⁾ 그리고 2017년 1월 22일에 개최된 검증보고에 따르면 ‘웹회의를 통한 재판절차의 디지털화’가 심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었다.²⁰⁸⁾

III. 비즈니스 코트

1. 현황

약 20년이 지나도록 일본은 재판심리기간을 단축시키면서도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와 일련의 시스템을 갖춰왔다. 그 결과물 중 2022년 10월 등장한 비즈니스 코트(Business Court)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동경지방법판소는 지적재산(지적재산권부), 상사 및 공정거래(상사부), 도산(도산부)에 관한 소송을 관할하는 ‘Business Court’를 개원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각급 법원별로 상사법원 내지 상사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문법관을 임명하고 이를 위한 법제를 정비하는 분주함을 보였지만, 일본의 경우 기존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재판부 전부와 동경지방법판소의 상사·도산 및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courts.go.jp/vc-files/courts/2023/10_houkoku_zentai.pdf>

206)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第1回), 2005. 07. 15., p. 4.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courts.go.jp/vc-files/courts/file2/20505101.pdf>

207) Ibid, pp. 7-8.

208) 第72回検討会(令和7年1月22日開催), p. 4.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courts.go.jp/saikosai/vc-files/saikosai/2024/72kentokai.pdf>

재판부를 옮겨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해 비즈니스 관련 부서를 집약 및 상호 연계함으로써 디지털화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전문성과 국제성을 강화시켜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법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²⁰⁹⁾

소위 상사법원, 전문법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법관에 의해 불충분한 소송절차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가령 동경지방법판소 지적재산권부에서는 특허나 발명과 관련한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때 전문적인 내용이나 첨단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관의 판단에 따라 법원조사관이나 전문위원과 같은 전문가를 재판에 참가하게 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술설명회를 통해 법관, 법원조사관, 전문위원은 소송당사자로부터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²¹⁰⁾ 법관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을 성급히 갖춰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거나 불완전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상호보완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비즈니스 코트에는 민사소송의 디지털화·IT화를 위하여 판사실에 화상회의용 부스 14개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사자와 변호사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출석함으로써 소송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정 절차(지재조정)의 경우에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었다.²¹¹⁾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재판 및 조정절차의 디지털화는 심리지연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209) 上西拓也, “ビジネス・コート（東京地方裁判所中目黒庁舎）の開庁”, 2022.10.13. (최종방문 2025.06.15.)
<https://portal.shojihomu.jp/archives/33563#_ftn1>

210) 知的財産高等裁判所, “知財高裁って何?”, 2025.05.12. (최종방문 2025.06.15.)
<https://www.courts.go.jp/ip/aboutus/vcmsFolder_1902/vcms_1902.html>

211) 이유리나, “일본 아사히 신문 등, 최초 비즈니스 분야 법원 ‘비즈니스 코트’ 업무 개시 보도”, 지식재산동향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최종방문 2025.06.15.)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21562>

2. 관할 사건

비즈니스 코트에서는 관할 사건을 43건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으며, 민사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 관할 사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10] 비즈니스 코트 관할 사건²¹²⁾

	관할 사건
1	회사 등에 관한 소송 사건 • 회사 설립·합병 무효, 결의무효·취소의 소 등 회사법상의 소 • 주식지불금출자금, 주주권, 제명 또는 퇴사 등에 관한 사건 • 회사 이외의 법인의 이사들의 지위와 정관 변경 등 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건 등
2	독점금지법 제24조의 금지 및 동법 제25조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3	소비자계약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청구 사건 (유지(금지)청구에 관한 소)
4	1~3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
5	4의 사건의 담보 또는 보증 취소와 관련된 사건
6	4의 보전집행사건을 기본사건으로 하는 집행잡(雜)사건
7	4의 사건의 이의, 취소 사건
8	어음·수표소송 사건
9	어음·수표소송 판결의 이의신청 사건
10	어음·수표소송 판결의 이의신청에 부수되는 집행정지 사건
11	10의 사건의 담보 또는 보증 취소와 관련된 사건
12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에 관한 소송 사건
13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제12조, 회사법 제8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 사건
14	12 및 13의 사건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사건
15	14의 사건의 담보 또는 보증 취소와 관련된 사건
16	14의 보전집행사건을 기본사건으로 하는 집행잡(雜)사건
17	14의 사건의 이의, 취소 사건
18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중재 사건
19	지적재산권에 관한 상사중재 사건
20	지적재산권에 관한 발신자정보공개명령 사건
21	20의 사건의 종국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22	특허청장의 처분취소 행정 사건

212) “ビジネス・コート（東京地裁中目黒庁舎）における事件受付のご案内”

<<https://www.courts.go.jp/tokyo/vc-files/tokyo/2022/R41027-bc-jiken-uketuke.pdf>>

23	증재법에 규정된 사건
24	민사비송사건
25	상사비송사건(특별청산사건 제외)
26	파산 사건
27	면책 사건
28	재생 사건
29	회사갱생 사건
30	특별청산 사건
31	선박소유자등 책임제한 사건
32	유탁 ²¹³⁾ 등 손해배상책임제한 사건
33	소규모개인 재생 사건
34	급여소득자등 재생 사건
35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에 의한 간이확정절차
36	승인원조 ²¹⁴⁾ 사건
37	기업의 사적정리 ²¹⁵⁾ 에 관한 특정 정리 사건
38	26-37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잡(雜)사건
39	비즈니스 코트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기본사건 또는 본안사건으로 하는 잡(雜)사건 • 집행정지, 증거보전, 증거수집처분, 열람제한, 소송비용액 확정 등 (38의 사건은 제외)
40	비즈니스 코트에서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된 항소제기 사건
41	40의 사건에 수반되는 집행정지 사건
42	41의 사건의 담보 또는 보증 취소와 관련된 사건
43	비즈니스 코트에서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된 항고제기 사건

IV. 검토

별도의 독립된 상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국제적 분쟁해결의 허브국가로 기능하며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 기존 법원조

213) 기름 유출 등의 해양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며, 일본에서는 1975년 「선박유류오염 등 손해배상보장법(船舶油濁等損害賠償保障法)」을 제정한 바 있다.

214) 도산절차에 관한 승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承認援助法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215) 도산처리의 한 방식으로 파산이라는 법적정리에 의하지 않는, 즉 법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적정리를 의미한다. 사적정리의 경우에도 재건갱생형과 해체청산형으로 구분되지만 상거래채권자들에게 의하지 않고 금융채권만 감면 및 지급유예에 의한 재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장원규, “일본의 도산관련 법제 및 절차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 2013, 12-14면).

직의 변형을 가하지 않고 전문법관의 타이틀을 내세워 법관으로 하여금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도 사법개혁을 이뤄내었다. 즉 법관의 전문성을 전문위원이나 법원조사관을 통해 보완하고, 기술설명회 등의 절차를 인정함으로써 충분한 심리를 토대로 판결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 특허법원의 기술지원제도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²¹⁶⁾²¹⁷⁾

제6절 | 소결

국제적으로 많은 관할권에서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국제상사법원이 상사분쟁의 주요 매커니즘으로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여전히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분쟁해결방식으로 우선시되고 있으므로 국제상사법원이 국제상사중재제도와 일반 법원에 비하여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은 무엇인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²¹⁸⁾ 나아가 각 국가별 상사법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착안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른 유형의 상사법원이나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고 그 관할 대상 사건의 범주가 일률적이지 않았지만, 각 주별로 상사법원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기

216) 우리 특허법원은 실용신안권에 관한 소송에 있어 기술적 쟁점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심리관(17명) 및 기술조사관(6명)을 두고 있으며, 기계/통신/전기·전자/화학/약품/농림/건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111명)를 둬으로써 소송기일에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해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기술설명회를 통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있다(특허법원, “창의적인 기술과 공정한 법의 만남, 특허법원”, 2020, 18-19면).

217) 우리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54조의2 규정을 통해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법원에 둘 수 있으며(제1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제2항),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제3항),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제4항), 기술심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5항).

218) Man Yip/Giesela Rühl, supra note 46, p. 13.

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소송당사자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의 영업지와 그에 따른 관할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소속 법관은 싱가포르 국적의 법관에 한정하지 않고 상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외국 법조인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일정한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 변호사에게 법정 변론권을 허용한다는 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을 통해 비로소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한 중재, 조정, 소송의 삼각시스템을 갖추고, 전통적인 재판제도와 중재제도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²¹⁹⁾

독일의 경우처럼 각급별 전문법원을 설치하더라도 특성화 내지 지역산업과 연계성 있는 전문영역을 관할 대상 사건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고, 일본의 비즈니스 코트 사례도 기존의 사법제도 하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국내 상사법원 도입 여부를 논할 때 참고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일환으로 기존 법원조직을 크게 변형하지 않는, 법원청사를 활용하여 상사사건 전담부를 민사부 산하에 두어 지적재산, 상사 및 공정거래, 도산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내 사법제도 하에서도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219) 박준선, 앞의 논문, 212-213면.

제4장 상사법원의 설치에 관한 국내로의 시사점

제1절 개관

제2절 상사법원 도입시 시사점과 개정 제안

제3절 소결



상사법원의 설치에 관한 국내로의 시사점

제 1 절 | 개관

국내에서는 다양한 전문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관하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다수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문법원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²²⁰⁾ 이외에도 상사법원, 해사법원, 노동법원 등도 해당이 된다. 이 중 상사법원은 국제상사법원,²²¹⁾ 상사법원, 회사법원으로 구분하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나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상사법원의 설치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²²²⁾ 그러나 국내에서는 어느 분야의 전문법원인지, 어떠한 형태로 설립이 필요한지에

220)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2017.03.01.), 부산(2023.03.01.), 수원(2023.03.01.)에 설치되어 있으나, 광주/대전/대구에는 부재하므로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인천광역시도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상공인무치리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전/대구/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기존에 회생법원 설치 관련 의원안 4건(민형배의원안, 김교홍의원안, 주호영의원안, 배준영의원안)은 병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었고, 대안이 2024.10.20.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즉 대전/대구/광주지역의 회생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6년 3월 1일 시행되고,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법제사법위원장,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 11.)

221) 2024년 5월 대법원은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을 위한 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상사·지식 재산과 관련한 국제분쟁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시아 특별법원’ 설립 추진을 위한 첫 걸음이 된다(법률신문, ‘대법원,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 위한 연구회 출범’, 2024.05.03.). (최종방문 2025.05.12.)

<<https://www.lawtimes.co.kr/news/198069>>

222) 윤태준, “(시론) 상사전문법원 도입, 상법개정 의 마지막 단추”, 뉴스토마토, 2025.06.12. (최종방문

대하여 각기 이해를 달리하고 있을 뿐 정립된 바는 없다.223)

특히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의 누적 수도 상당하지만,224)225) 본 장에서는

2025.06.15.)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4755>>

223)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은 소송의 절차, 법리의 구성, 실제적 권리관계의 복잡성 등에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원에서는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을 동시에 담당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가령 소송 누적에 따른 지연, 일관성 없는 사건 관리, 회사장부를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하고, 회사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며 사건의 긴급성에 대한 이해 부족, 사외이사·대표이사·감사 등의 책임과 의무에 있어 실무활동에 대한 이해 부재, 회사구조의 다각화에 따른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법리해석의 오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상사소송의 개별화된 절차 확보 및 그에 관한 논의가 그동안 진행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고은정, 앞의 논문, 199면).

224) 2025. 06. 29.자 기준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9건이었으며 이 중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에 관한 안건은 6건,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포괄하여 담당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관한 안건은 1건이었다. 이하에서 각 법원의 소재지, 관할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표-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22대 국회)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진행단계	내용
1	2200452	2024.06.13.	곽규택	소관위 (비용추계기간 : 2029년)	부산광역시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 (안 제2조 제1항, 제4조 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2	2201023	2024.06.27.	전재수		
3	2209263	2025.03.21.	윤상현	소관위 비용추계서 제출됨	
4	2210124	2025.04.25.	정일영	소관위 비용추계서 제출됨	인천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 (안 제2조 제1항, 제4조 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5	2210181	2025.04.28.	박찬대	소관위 비용추계서 제출됨	① 인천광역시에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할구역은 서울/인천/경기도/대전/충북/충남으로 함 ② 부산광역시에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할구역은 부산/광주/전북/전남/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로 함 (안 제2조 제1항, 제4조 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6	2210427	2025.05.08.	배준영	소관위 비용추계서 제출됨	① 인천광역시에 해사법원 본원 : 전폭 관할 ② 해사법원 부산지원 :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③ 해사법원 광주지원 : 광주/전북/전남/제주 ④ 2심은 해사법원 본원 전속 관할 (안 제2조 제1항, 제4조 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대체로 부산과 인천지역을 해사법원의 소재지로 제시하면서 둘 중 한 곳을 지정하여 관할권이 전국에 미치게 하는 방안도 있고, 인천과 부산으로 나누어 2개 이상의 소재지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법원별 관할구역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여러 대안들이 실현가능하도록 제시되고 진척이 되었

앞서 검토한 해사사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회사 관련 상사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상사법원의 설립 유형 등을 참고하여 국내로 제도 도입시 시사점과 그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 2절 | 상사법원 도입시 시사점과 개정 제안

1. 상사사건의 범위 확정

1. 내용

외국의 상사법원은 상사적인 성격을 가진 사건들을 심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상사(commercial matters)’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가별로 법적 해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가령 ‘보험’과 관련하여 뉴욕주 상사재판부에서는 환경보험과 상사보험을 관할 대상으로 하지만 비상업용 보험은 관할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영국 상사법원은 보험을 관할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²²⁶⁾ 그러므로 우리 또한 상사사건 전문법원을 도입할 경우 관할사건의 범위를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사’로 표현하고 있고, 상사소송도 채권적 사안과 회사법상 확인의 성격을 가지는 등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

으나, 관련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해사사건은 160건 중 123건이 처리되었고, 2023년의 경우 접수된 121건 중 96건이 처리되는 등 해사사건의 증가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별도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지지만 배준영 의안과 같이 해사사건의 수와 기본 인력 등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요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수를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국회예산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의안번호 2210124, 2025.04.30., 2면 [표 17] 해사·해상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의 해사사건의 수’ 참조).

225) 동작신문, “이수진 의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7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21.02.13. (최종방문 2025.06.28.)

<<https://www.thed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89>>

226) 김효정, 앞의 논문, 163-164면.

다. 앞서 언급해 왔던 것처럼 ‘기업과 관련한 분쟁’으로서 회사소송으로 포섭되는 사안들을 상사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2. 개정 제안

상사사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사법원의 형태에 따른 관할권을 확정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국내·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소송 여부를 불문하고 상사사건의 범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을 일본과 같이 ‘사건목록’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 사건배당 기준을 참고하여 상사사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텍사스 상사법원과 같이 특정지역에 소송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거래로 구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들은 배제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가령 텍사스 주에서는 보험 관련 소송, 의료소송, 변호사 비용 등에 관한 소송은 관할에서 제외하였고, 일리노이 주에서는 전문가 보수, 주거용 부동산, 일반보험 등에 관한 소송을 제외시켰으며,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개인의 불법행위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집단소송, 강제중재에 관한 소송, 근로관계나 신분관계 등에 관한 소송은 제외한 것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사사건은 ‘상사’ 즉 상인의 거래와 관련된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회사법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고, 소송당사자는 대체로 법인이라는 조직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그러한 준거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허용한다면 국제상사사건 및 국내상사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미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나아가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나 텍사스 상사법원에서 중재합의를 진행하거나, 중재인의 임명, 중재판정의 검토를 위한 소송, 중재합의에 따라 허가된 기타 사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도 심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상사중재제도와 상사법원의 기능을 겸한 국제분쟁 허브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목적을 지향한다면 중재 또한 관할사건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II. 상사법원의 유형

1. 내용

상사사건의 범위를 확정한다는 것은 결국 상사법원을 어떠한 유형으로 도입할 것인지와 연관된다. 즉 ① 독일의 경우와 같이 각 법원별 지역산업에 부합하는 전문분야를 확정하는 경우, ② 일본의 경우와 같이 특정 지역의 법원 산하에 ‘부(部)’로 설정하여 전문분야의 집약체인 법원을 분쟁허브로 기능하게 하는 경우,²²⁷⁾ ③ 미국, 싱가포르 등과 같이 고등법원 산하의 독립된 특별법원으로 지위를 부여하거나 각 지방(고등)법원의 상사재판부로서 국제상사법원이 병존하는 형태로 두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겠다.²²⁸⁾

①의 경우 각 법원별 전문분야를 확정하여 관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도 재고해 볼 만하다. 이는 상사법원이 모든 상사거래를 포섭한다고 할 경우 상사거래와 관련된 전(全)분야의 전문법관을 확보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전문성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상사법원별로 전문분야를 특정한다면 동일 및 유사사건의 축적에 따라 전문성을 기를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송당사자들도 승소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등 유용할 수 있다.

②의 경우 법제 정비, 공간 확보, 업무분담 등에 있어 기존과 큰 차이가 없기에 현재의 시스템에서 무리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상사사건의 경우 각 법원 민사부에서 상사전담 내지 기업전담 재판부의 소관 하에 있으므로 지역별, 법원별 분산되어 있는 부서를 전문분야별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면 ①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낮은 범위에서 동일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③의 경우 기존의 법원조직과 사법시스템의 변화를 크게 가져오는 방안일 수 있지만 주요 관할지역에 집중하여 상사법원을 설치한다면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등이

227) 국내 법관들 또한 일본 비즈니스 코트에 주목하고 있다(머니투데이, “[단독]법원, '日 상사법원' 공부...국내 효율성 연구 탐방”, 2023.09.06.). (최종방문 2025.04.11.)

<<https://v.daum.net/v/20230906132501607>>

228) 박준선, 앞의 논문, 227면.

점이 되는 요소가 존재한다.

2. 개정 제안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③유형의 상사법원을 도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제안한다. 주로 텍사스 상사법원의 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국내에서는 상사법원의 도입을 두고 특정지역에 특정전문영역의 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가령 국제상사법원의 형태, 해사법원으로서의 형태, 회사사건을 전담하는 상사법원의 형태, 국내·외 및 해사를 포함한 상사 전반에 관한 사건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상사법원의 형태 등 다양하다. 이는 흡사 독일의 상사법원이 각 지방법원 별로 전문분야를 달리하는 특성화된 법원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과 유사하다.

물론 상사거래 중에서도 국제적 분쟁은 해사사건의 비중과 중요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업의 국제화가 당연해 졌고, 해사사건도 결국 회사의 분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덩치싸움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설치되는 상사법원은 국내·외를 불문한 상사거래, 해사와 회사 등의 분쟁을 포괄하는 상사거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① 관할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사법원의 업무를 분장하여 설치하는 방식이 있다. 가령 관할지역에 항만시설이 있고 해사거래가 빈번한 지역의 경우 해사사건 중심의 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주요 법원을 중심으로 회사 등 보편적 상사거래일반을 중심으로 하는 상사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상사 전반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주요 관할지역에 집중하여 상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국제상사소송(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국제재판부')·회사소송·해사소송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어느 방식을 취하든 상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 구축됨으로써 전문성, 체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후술한다.

Ⅲ. 상사법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법정

1. 내용

텍사스 상사법원의 경우 상사법원과 제15항소법원 관할 확정에 관한 헌법상 근거규정 충분하지 못하여 전문(특별)법원의 설립과 관할에 관한 재량권을 의회에 부여하였고, 이후 하원 및 상원 법안발의를 통해 제도도입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헌법에서도 전문법원의 설립에 관한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제101조 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됨을 정하고 있으며(제101조 제2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02조 제3항). 그에 따라 법원조직법에서는 법원의 종류를 7개로 구분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각 법원의 설치와 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3항). 즉 제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우리 법원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제외하고 특별(전문)법원으로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사법원의 설립을 위해서는 본 조의 개정을 통해 설립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개정 제안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법원의 종류를 상사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7종류에서 8종류로 변경하고, 제3조 제3항에 상사법원을 추가함으로써 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표-12] 법원조직법 제3조 개정 제안

현행	개정 제안
<p>제3조(법원의 종류)</p> <p>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8. <신 설> <p>② (생략)</p> <p>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법원의 종류)</p> <p>① ----- 8----- 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8. 상사법원</p> <p>② (생략)</p> <p>③ ----- -----·상사법원----- ----- ----- -----</p>

이 외에도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제5조 제2항), 판사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제6조 제1항), 심판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제7조), 판사회의에 관한 사항(제9조의2 제1항), 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에 관한 사항(제10조)을 개정하고, 제40조의7 이하의 규정으로 하여 '제3편 제7장 상사법원'을 편제함으로써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정할 필요가 있다.

IV. 법정용어의 확대

1. 내용

법원조직법 제62조에서는 법정용어를 국어로 한정하고 있으며(제1항),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 이는 소송의 신속성과 의견전달의 명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상사법원에 심리하는 사건은 국제적 상사분쟁도 포함하여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법정용어로 확대한다면²²⁹⁾ 소송관계인에게 유리한 변론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2. 개정 제안

법정용어의 확대와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2가지의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법원조직법 제62조를 개정하는 방안이고, 다음으로 제62조의2를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우선 제62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법관들도 대체로 내국인이라는 점, 국제적 분쟁사건만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사법원에서 사용하는 법정용어는 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일의 민사소송법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영어의 사용을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하고, 제62조의2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영어변론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즉 법원조직법 제6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사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가 영어로 변론하는 것에 동의한 때에는 그 동의내용을 소장에 명시해야 하며, 이때 상사법원은 당사자가 영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소송당사자에게 영어사용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면서도 일방적인 영어사용으로 인하여 재판부와 상대방이 소송대응에 미흡해지지 않도록 상호 합의를 전제로 재판부에 소장을 통한 인지 및 재판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다.

229) 같은 견해로는, 김효정, 앞의 논문, 180면.

[표-13] 법원조직법 제62조 개정 제안

현행	개정 제안
제62조(법정의 용어)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③ <신 설>	제62조(법정의 용어)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사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가 영어로 변론하는 것에 동의한 때에는 그 동의내용을 소장에 명시해야 하며, 이때 상사법원은 당사자가 영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62조의2 개정과 관련하여, 이미 특허법원이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송)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한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제1항),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²³⁰⁾를 통해 사건이 심리되는 때에도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²³¹⁾ 등을 대법원규칙²³²⁾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및 제3항). 그러므로 상사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국제사건 전담재판부의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상사법원은 국제상사법원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 아닌, 상업적인 사안과 관련된 사건이면서도 국내 또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사건 전담재판부와 국제

230) 국제사건 전담재판부는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소송환경에서 외국 당사자에 의해 보다 선호되는 법정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원이 Global IP Hub Court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당해 전담재판부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전담하는 민사합의부인 제61민사부, 제62민사부, 제63-1민사부, 제63-2민사부, 제63-3민사부가 모두 국제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어 국제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법원이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사건에 관하여 내린 판결의 항소심인 특허법원에도 국제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참조).

<https://seoul.scourt.go.kr/seoul/info_03.jsp#>

231) 이때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이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허용할 수 있다(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232)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8.05.29. 제정, 2018.06.13. 시행, 대법원규칙 제2789호).

사건 전담재판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본조의 개정시 '상사법원'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³³⁾

[표-14] 법원조직법 제62조의2 개정 제안

현행	개정 제안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및 제2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그 밖에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_____, 상사법원에 제기된 사건 ----- ----- ----- ----- ----- ----- ② _____, 상사법원장 ----- ----- ----- ----- ----- ③ 현행과 동일

V. 상사법원 내 국제재판부 설치

1.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사법원장의 허가가 있는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국제재판부)로 하여금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제62조의2 제2항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법원규칙인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국

233) 같은 견해로는, 김효정, 앞의 논문, 178면.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으로 상사법원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2. 개정 제안

실상 국내에 상사법원을 도입한다면 국제사건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지만, 소송절차를 공정·신속·경제적으로 진행시키고²³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동일·유사한 유형의 사건을 집중·구분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 관할이 미치지 않는 상사사건은 일반재판부, 국제적 관할이 미치는 상사사건에 대해서는 상사법원 내 설치된 국제재판부를 통하여 사건이 심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표-15]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개정 제안

현행	개정 제안
<p>제3조 【설치】</p> <p>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3. <신 설> <p>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지방법원 2. 대구지방법원 3. 부산지방법원 4. 광주지방법원 	<p>제3조 【설치】</p> <p>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3. 상사법원 <p>② (생략)</p>

반면 위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상사법원을 독립된 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재판부로 두는 경우에는 기존 법률에 따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에 국제상사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국내에서는 국제해사법원을 인천에

234)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설치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상당수 발의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그 수요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제3조 제2항의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원으로 ‘인천지방법원(제5호 신설)’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VI. 법관의 전문성 구축을 위한 전문가 지원제도의 내실화

1. 내용

앞서 살펴본 각국의 상사법원제도는 저마다의 필요성에 의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써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점(利點)만 부각된 듯하다. 실질적으로 국내에 상사법원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과연 상사법원의 그 이면에서 우려되는 사항이 무엇일지 고려해야 한다. 한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²³⁵⁾ ① 기업 관련 분쟁에 전문화된 법관은 기업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오히려 기업에 우호적인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조계나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게 될 것이고, 상사법원의 1심 판결을 일반 민사법관으로 구성된 2심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결들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선례나 다른 주의 동일·유사사건의 판결과 체계적으로 다르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② 재판부를 상사전문 법관들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엘리트 의식을 가지거나 다른 일반 법관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부재할 뿐더러 상사법원 이외에도 현재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전문법원과 그에 관한 전문법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우려들은 ‘전문법관’을 ‘반드시’ 임명하여 ‘상사전문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매몰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지금도 많은 법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집중도 높은 유사업무의 반복을 통해 전문성을 확장해 가고

235) 송옥렬 외 2, 앞의 보고서, 127-128면.

있다. 다만 이러한 전문적인 역량이 법관마다 차이가 있고,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이 저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까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의구심이 들게 하는 요인은 제거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²³⁶⁾ 그러므로 일본의 「재판의 신속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관이 심리에 충실’하고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는 것을 중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과정에서 법관이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설전문심리위원회²³⁷⁾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이면의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²³⁸⁾

물론 우리 특허법원의 경우에도 일본 비즈니스 코트 중 지식재산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이미 적극 활용하고 있기에 국내 사법시스템이 뒤쳐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상사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사사건은 특허분야와는 달리 기술적 요소가 두드러지는 부분이 상당하다기 보다는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을 중첩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환경변화를 읽어내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의 상사분쟁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춘 자들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및 재판연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제도의 운영현황과

236) 가령 소송지연의 문제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므로, 결국 사건을 대하는 재판부의 인식이나 성실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판사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책임감과 소명의식 때문이다’라는 매커니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송옥렬 외 2, 앞의 보고서, 25-28면).

237)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내지 제164조의8에서는 전문심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둬으로써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164조의2 제1항).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소문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164조의2 제2항),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으며(제164조의2 제3항),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64조의6). 또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 함에 있어서 전문심리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제164조의8).

238)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민·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2024, 174면.

활성화를 위한 개정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 개정 제안

(1) 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은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면서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에 따라 각급 법원은 재판연구원을 둬으로써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이를 통해 법관의 실제적 판단작용을 실질적으로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한 판결 초고 또는 최종 의견서를 작성하고, 속행사건에 관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통해 재판부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건 기일지정 무렵 재판부가 신건에 대한 심리 방향을 결정하거나 기일을 지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신건메모 및 검토보고서 등의 작성업무를 수행한다.²³⁹⁾ 그러나 재판연구원의 지위를 재판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만 국한시켜야 할지, 법관임용시 유력한 후보자적 지위자에 맞게 의견서 작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지에 관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별 편차 등에 따라 재판연구원의 전문성이 제한적으로 발휘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²⁴⁰⁾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사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정용어를 영어로 확장하고, 국제재판부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앞서 살펴본 법원조직법과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상사법원 내 국제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면, 상사법원 내 국제재판부에도 외국어 능력과 국제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대법원규칙 제4조 제2항 개정) 재판연구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

239)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참조.

<https://lawclerk.scourt.go.kr/appresearch/intro/sub1_02.work>

240) 문선주/김효정,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0, 30-31면.

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재판연구원은 텍사스 주에서도 여타의 지방법원 등의 법관과는 달리 상사법원의 법관에 한하여 재판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 이는 대규모 상사소송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력할 수 있는 자로서 재판연구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상사법원을 설치할 때에는 상사 관련 전담 재판연구원을 임명하여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은 재판연구 업무를 담당하며, 대법관을 보좌하여 보고 및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5년 11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관으로만 구성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판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들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판지원 인력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확보하였다.²⁴¹⁾ 그에 따라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며(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원조직법 제24조 제3항).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내지 석사학위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32명을 정원으로 하여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3조).²⁴²⁾

241) 「법원조직법」 개정(2005년 12월 14일 시행)에 따라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이 2006년 2월 21일 제정 및 시행되었다.

242)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2022. 1. 1. 시행)에 따르면,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 경력경쟁채용등에 의한 임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명하고(제2조 제3항)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즉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있는 사람이거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법률사무중사경력 있는 사람(제1호 각목),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있는 사람이거나 변호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중사경력 있는 사람(제2호 각목),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있는 사람이거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제3호 각목)이어야 한다. 또

상사사건도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며, 대체로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매년 4만 건 이상을 차지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재판연구관의 증원과 운용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²⁴³⁾ 그러므로 내부 법관들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그 인원을 증원시킴으로써 상사사건에 관한 전문가 조력을 통해 재판의 신속화를 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국제재판부의 재판연구원의 배치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상사 관련 학술적 연구능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재판연구관을 중심으로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자를 배치하도록 한다면 능력의 고른 분배를 통하여 제도의 효용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표-16]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개정 제안

현행	개정 제안
제4조 【운영】 ① (생략) ② 국제재판부에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53조의2에 따른 <u>재판 연구원</u> 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생략) ② ----- ----- 재판 연구원 또는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 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판연구관-----

한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가급으로 보하는 경우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중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제2조 제4항 제1호), 나급으로 보하는 경우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2조 제4항 제2호) 이어야 한다.

243) 법률신문, “[단독] 재판연구관 운용 손볼 때 됐다”, 2024.06.05. (최종방문 2025.06.15.)
<<https://www.lawtimes.co.kr/news/198801>>

Ⅶ. 검토

이상으로 상사법원 도입을 대비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토대로 개정 제안을 하였다. 많은 관할권에서 혼란을 가져왔던 상사사건의 범주를 어떻게 구획할 것인지, 상사법원 내지 상사재판부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때 기존 사건배당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법관의 양성이나 임명은 그 증명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전문성은 소송절차부터 판결시까지 전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기에 시의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텍사스 상사법원이 원격소송절차를 허용하고 있어 재판의 신속과 참여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상사법원의 도입시 이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국내에서는 2021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제287조의2 신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²⁴⁴⁾ 별도의 중복되는 내용으로 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법원조직법 제40조의7 이하의 규정으로 하여 ‘제3편 제7장 상사법원’을 편제하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정할 때 ‘상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제3절 | 소결

상사법원은 아직까지는 국내 사건 위주의 상사법원보다는 국제상사중재와 상호보완적 관계로 기능할 수 있는 국제상사법원이 국제성, 성장가능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다. 다만 국내에서는 기업분쟁에 관한 전담 내지 전문부서로서

244)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항),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2항).

가능할 수 있는 소송제도와 그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법적 전문성 향상을 기반으로 한 국내 상사법원의 설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국제적 경쟁력과 국민보호라는 사법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²⁴⁵⁾ 현재까지는 해사전문법원에 관한 논의와 정책이 선두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에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방식의 상사법원의 형태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45) 고은정, 앞의 논문, 222면.

제5장 결론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전문법원, 그 중에서도 상사법원의 설치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재와 소송의 개념과 그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사중재는 국제적 상사분쟁을 포함한 해결방식으로 기능하기에 국제협약을 기초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상사법원에서 상사사건을 소송으로써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상사중재제도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떠한 분쟁해결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분쟁사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을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중재제도와 소송제도는 양립하여 존재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상사법원의 일부를 포함하여 상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싱가포르, 독일, 일본의 경우 상사법원이나 상사재판부를 둬으로써 상사사건을 전문으로 심리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국제상사법원과는 달리 국내 상사분쟁을 수렴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상사법원은 대체로 사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재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사중재가 가지는 중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고자 한 점이 공통되지만, 다음의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우선 미국의 경우 ① 뉴욕 상사법원은 사건관리의 효율성과 절차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

기 위해 전문법관, 차등적 사건관리(예비회의, 컴플라이언스 회의, 기일 전 회의), 전자소송 제도 등 실무 중심의 운영체계를 조기 확립하였다. 특히 뉴욕 주 카운티 별로 최저소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소송목적물의 가치(value of the object of the action)', 즉 소송이 의도하는 이익의 가치, 보호되는 권리의 가치,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 중 가장 높은 가치를 소송목적물의 가치로 판단하고 있다.

② 델라웨어 주에는 형평법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 간 민사소송을 전담하는 복잡상사소송부를 설치함으로써 통일된 절차와 사건관리방식을 갖추었다. 또한 사건을 배당 받은 법관은 사건에 관한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전담하는데 이는 법관의 임기 3년이 종료되더라도 유지된다는 점에서 법관의 변경에 의한 소송의 지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문성을 연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심리한 사건 등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투명성, 재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였다.

③ 미국 내에서는 가장 최근에 상사법원을 설치하여 2024년 9월 1일 출범시킨 텍사스 상사법원은 텍사스 주 전역에 관할권을 가지는 11개의 상사법원부를 두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동시에 관할권이 적용된다. 또한 상사법원의 항소법원으로 제15항소법원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절차를 구축하여 상사사건의 전담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하였다. 텍사스 상사법원은 지방법원의 지위를 가지며 민사관할권 및 보충관할권이 적용되도록 하여 가급적 상사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나 논쟁의 일부를 형성하는 다른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상사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과 같이 상사중재가 가능하다. 즉 중재합의의 진행, 중재인의 임명, 중재판정의 검토를 위한 소송, 중재합의에 의해 허가된 기타 사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상사법원의 법관들이 상사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에 관하여 서로를 대신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일정한 요건 하에 원격소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텍사스 상사법원은 상사사건의 재판 효율성과 효과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질서 있고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지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송당사자를 국내 및 국제 법인을 불문하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법원의 법관은 미국 시민권자로 제한하고 있고, 방문법관 제도 이외의 국제법관 등의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성

요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중재기관인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등과는 달리 국제적이고, 상업적인 사건만을 심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싱가포르 대법원의 일부인 고등법원 산하 특별부서로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독립된 법원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국제법관의 임명을 인정함으로써 국제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확장시켰으며, 판결문의 공개가 중요한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제도의 이점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상사법원의 법적 지위를 상위의 조직으로 인정한다 즉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산하에 상사법원을 설립할 수 있고, 한 주에 수 개의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다면 법률에 근거하여 고등법원의 지위를 넘어서는 상사법원을 둘 수 있으며, 여러 주에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형태로 (합의에 기초하여 국경을 넘어서는 관할권을 인정하는) 공동 상사법원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지방법원 내 전문부서인 상사부로도 설치할 수 있다. 독일의 상사법원은 고등법원 산하에 4개의 주에 설치되어 있는데, 각 사법구역 내 각 지방법원별로 전문분야를 달리하는 특성화된 법원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색과 주력산업 등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전문분야(기업인수 및 기업법 분야, 건설 및 건축법 분야, 항공우주 및 해상무역 분야, 기업법·건설법·보험법 분야)를 관할 대상 사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법원의 취지에 부합하게 전문성 강화를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일본 동경지방법관소는 지적재산(지적재산권부), 상사 및 공정거래(상사부), 도산(도산부)에 관한 소송을 관할하는 'Business Court'를 개원하였는데, 이는 상사법원을 도입하는 것을 논하는 것보다도 기존 법원청사를 활용하여 주요 분과를 집약시킴으로써 국제적 법률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상사법원 운영례 및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내로 도입시 시사점과 개정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하였다. 즉 ① 상사사건의 범위 확정에 관한 사항, ② 상사법원의 유형에 관한 사항, ③ 상사법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법원조직법 제3조 개정 제안), ④ 소송절차에 있어 법정용어의 외국어 허용에 관한 사항(법원조직법 제62조 개정 제안), ⑤ 외국어 변론이 허용되는 전담재판부(국제재판부)에 관한 사항(법원조직법 제62조의2 개정 제안), ⑥ 상사법원 내 국제재판부 설치에 관한 사항(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개정 제안), ⑦ 법관의 전문성 구축을 위한 재판연구원 및 재판연구관의 인원 증대·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개정 제안)이다.

①과 관련하여, 국내·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소송 여부를 불문하고 상사사건의 범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을 일본과 같이 ‘사건목록’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 사건배당 기준을 참고하여 상사사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며, 상사법원이 국제분쟁허브로서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상사중재를 관할사건으로 다루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②와 관련하여, 주요 관할지역에 집중하여 상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국제상사소송(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국제재판부’)·회사소송·해사소송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③과 관련하여,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법원의 종류를 상사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7종류에서 8종류로 변경하고, 제3조 제3항에 상사법원을 추가함으로써 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40조의7 이하의 규정으로 하는 ‘제3편 제7장 상사법원’을 편제하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정할 때 ‘상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④와 관련하여, 법원조직법 제6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사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가 영어로 변론하는 것에 동의한 때에는 그 동의내용을 소장에 명시해야 하며, 이때 상사법원은 당사자가 영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소송당사자에게 영어사용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면서도 일방적인 영어사용으로 인하여 재판부와 상대방이 소송대응에 미흡해지지 않도록 상호 합의를 전제로 재판부에 소장을 통한 인지 및 재판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⑤ 및 ⑥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상사법원은 국제상사법원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 아닌, 상업적인 사안과 관련된 사건이면서도 국내 또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사건 전담재판부와 국제사건 전담재판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조직법 제62조의2 규정에 '상사법원'의 문구를 삽입하고,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원으로 '상사법원'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상사법원을 독립된 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재판부로 두는 경우에는 기존 법률에 따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에 국제상사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국내에서는 국제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상당수 발의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그 수요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제3조 제2항의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원으로 '인천지방법원(제5호 신설)'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⑦과 관련하여, 텍사스 상사법원 등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상사소송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력할 수 있는 자로서 재판연구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상사 관련 전담 재판연구원의 임명 활성화, 국제재판부의 재판연구원의 배치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상사 관련 학술적 연구능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재판연구

관을 중심으로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자를 배치하도록 한다면 능력의 고른 분배를 통하여 제도의 효용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상사법원의 도입을 기대하며 지역적으로나마 관련 법률의 개정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상사사건은 민사사건과 연결지어 다루어 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민사사건으로만 획일적으로 다루어 소송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사법원의 상사사건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인정하고, 전문법관과 재판연구원 및 재판연구관의 임명을 통해 전문성에 기한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소송당사자와 거래의 국제성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상사법원이 전문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건수요와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기에 상사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방향으로 사법제도의 개편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단행본

임재연, 『회사소송』 개정판, 박영사, 2014.

연구논문

강동욱/박성민, “상사비송사건의 소송화와 그 문제점”, 인권과 정의, 통권 431호, 대한변호사협회, 2013.

고은정, “한국의 상사법원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0호, 법무부, 2022.

김광수,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주요 기능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대한상사중재원, vol.129 Winter 2013.

김민경,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적 강행규정”,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김봉철,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2020-12, 사법정책연구원, 2020.

김정환,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20-11, 사법정책연구원, 2020.

_____, “국제상사분쟁의 해결과 국제상사법원 -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29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김정환/박준선,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연구총서 2017-15, 사법정책연구원, 2017.

김주경,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7-06, 사법정책연구원, 2017.

김준기,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와 전망- 국제상사법원, 국제투자법원 및 국제중재의 비교고찰과 그 함의 -”, 비교사법 제28권 제3호, 한국사법학회, 2021.

김효정, “상사법원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44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25.

박준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소고”, 경제법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경제법학회, 2018.

- 송옥렬 외 2, “기업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소송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23-0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
- 윤은경, “회사소송연구 - 회사가처분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제8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민·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2024,.
- 이주원/신군재, “중재인의 중재절차 진행상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 대한상사중재원의 절차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2.
- 이진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 장원규, “일본의 도산관련 법제 및 절차의 비교”,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최장호, “우리나라 기업의 상사분쟁 관리와 ADR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 한창완/김준우, “투자분쟁, 상사중재, 국내소송의 병행적 활용에 관한 소고”, 통상법률 통권 제160호, 법무부, 2023.

기타자료

- 국회예산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의안번호 2210124, 2025.04.30.
- 대법원, “2024 사법연감”.
- 대한민국 법원, “법원행정처-DIFC 법원 간 MOG 체결”, 2015.11.04. (최종방문 2025.06.25.)
- 대한상사중재원, “2024년 클레임 통계”, 2025.03.03.
- 동작신문, “이수진 의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7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21.02.13. (최종방문 2025.06.28.)
- 머니투데이, “[단독]법원, '日 상사법원' 공부…국내 효용성 연구 탐방”, 2023.09.06.
- 법률신문, “대법원,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 위한 연구회 출범”, 2024.05.03.). (최종방문 2025.05.12.)

_____, “[단독] 재판연구관 운용 손볼 때 됐다”, 2024.06.05. (최종방문 2025.06.15.)

윤태준, “(시론) 상사전문법원 도입, 상법개정의 마지막 단추”, 뉴스토마토, 2025.06.12. (최종방문 2025.06.15.)

이유리나, “일본 아사히 신문 등, 최초 비즈니스 분야 법원 ‘비즈니스 코트’ 업무 개시 보도”, 지식재산동향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최종방문 2025.06.15.)

주함부르크총영사관, “북독일 4개주 정세 및 경제동향(2024.7.8.-7.21)”, 2024.07.23.

특허법원, “창의적인 기술과 공정한 법의 만남, 특허법원”, 20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독일, 항공우주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 2006.05.04. (최종방문 2025.06.12.)

한국일보, “엘로스톤 출입금지 구역 들어갔다 징역형”, 2021.08.31. (최종방문 2025.06.20.)

2. 영미문헌

ABA Business Law Section, Specialized Business Courts in the United States, 2021.

_____, “Recent Developments in Business Courts 2024”, Mar 07, 2024.

ALFA International, “Connecticut_Business-Litigation_Compedium”, 2020.

Connecticut Judicial Branch, “FACTS ABOUT THE CONNECTICUT JUDICIAL BRANCH COMPLEX LITIGATION DOCKET”, Rev. 6/5/18, 2018.

Dalma R. DEMETER/Kayleigh M. SMITH, “The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on Arbit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October 2016.

Jack Buckley DiSorbo, “A Primer on the Texas Business Court”, Baylor Law Review Vol. 76:2, 2024.

Joseph R. Slights III/Elizabeth A. Powers, “Delaware Courts Continue to Excel in Business Litigation with the Success of the 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of the Superior Court”, The Business Lawyer; Vol. 70, Fall 2015.

Man Yip/Giesela Rühl, “New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A Comparative Analysis - and a Tentative Look at Their Success”, UNIVERSITY OF OXFORD, 17 June 2024.

_____, “Success and Impac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A First Assessment”, Yearbook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24 (2022-2023).

Report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Committee, November 2013.

Section 202.70 Rules of the Commercial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Preamble.

Stephan Wilsk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AND ARBITRATION — ALTERNATIVES, SUBSTITUTES OR TROJAN HORSE?”, 11(2) CONTEMP. ASIA ARB. J. 153, 2018.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Delaware, Administrative Directive of the President Judge of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Delaware, No. 2010-3, 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2010.

_____, Administrative Directive of the President Judge of the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Delaware No. 2025-3, Amended Assignment of Judges to the 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Effective June 1, 2025.

Texas Courts, “Local Rules of the Texas Business Court Effective March 1, 2025”, 2025.

Texas Judicial Council, “2022 Civil Justice Committee - Report and Recommendations”, 2022.

UNCITRAL, “UNCITRAL Arbitration Rules (2021)”, UNITED NATIONS Vienna, 2021.

Viraj Fulena/Hemant Chitto, “International Commercial Litigation and Arbitration Research Essa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 Research Volume 06 Issue 02, IJSSHR, February 2023.

Weixia Gu/Jacky Tam, “The Global Ri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Typology and Power Dynamics”,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No. 2, The University of Chicago, 2022

3. 독일문헌

Caroline Meller-Hannich/Armin Höland/Monika Nöhre Et al, “Erforschung der Ursachen des Rückgangs der Eingangszahlen bei den Zivilgerichten”, Abschlussbericht zum Forschungsvorhaben, Berlin, 21. April 2023.

Eberhard Kramer, “Die Geschichte der Handelsgerichtsbarkeit”, 17. Oktober 2002.

Gesetzblatt der Freien Hansestadt Bremen, “Verordnung zur Errichtung und Ausgestaltung des Hanseatic Commercial Court for Aerospace, Logistics and Maritime Trade der Freien Hansestadt Bremen (Bremische Commercial Court Verordnung - BremCCVO)”, vom 2. April 2025.

Verordnung über die Einrichtung eines Commercial Courts und von Commercial Chambers (Commercial-Court- und Commercial-Chambers-Verordnung), Vom 1. April 2025.

4. 일본문헌

最高裁判所事務総局, “裁判の迅速化に係る 検証に関する報告書”, 令和5年7月.

裁判の迅速化に係る検証に関する報告書(第1回), 2005. 07. 15.

上西拓也, “ビジネス・コート (東京地方裁判所中目黒庁舎) の開庁”, 2022.10.13. (최종방문 2025.06.15.)

知的財産高等裁判所, “コンテンツ「知財高裁って何?」を新設しました。本コンテ

知的財産高等裁判所, “知財高裁って何?”, 2025.05.12. (최종방문 2025.06.15.)

[별지3] 델라웨어 복잡상사소송부, 민사사건 정보진술서(1/2)

**SUPERIOR COURT
CIVIL CASE INFORMATION STATEMENT (CIS)**

COUNTY: N K S CIVIL ACTION NUMBER: _____

Caption: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Civil Case Code: _____ Civil Case Type: _____ <small>(SEE REVERSE SIDE FOR CODE AND TYPE)</small> MANDATORY NON-BINDING ARBITRATION (MNA) _____ Name and Status of Party filing document: _____ Document Type: (E.G.; COMPLAINT; ANSWER WITH COUNTERCLAIM) _____ _____ JURY DEMAND: YES _____ NO _____
ATTORNEY NAME(S): _____ ATTORNEY ID(S): _____ FIRM NAME: _____ ADDRESS: _____ _____ TELEPHONE NUMBER: _____ FAX NUMBER: _____ E-MAIL ADDRESS: _____ _____	IDENTIFY ANY RELATED CASES NOW PENDING IN THE SUPERIOR COURT OR ANY RELATED CASES THAT HAVE BEEN CLOSED IN THIS COURT WITHIN THE LAST TWO YEARS BY CAPTION AND CIVIL ACTION NUMBER INCLUDING JUDGE'S INITIALS: _____ _____ EXPLAIN THE RELATIONSHIP(S): _____ _____ _____ _____ OTHER UNUSUAL ISSUES THAT AFFECT CASE MANAGEMENT: _____ _____ _____ _____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PLEASE ATTACH PAGE)
THE PROTHONOTARY WILL NOT PROCESS THE COMPLAINT, ANSWER, OR FIRST RESPONSIVE PLEADING IN THIS MATTER FOR SERVICE UNTIL THE CASE INFORMATION STATEMENT (CIS) IS FILED. THE FAILURE TO FILE THE CIS AND HAVE THE PLEADING PROCESSED FOR SERVICE MAY RESULT IN THE DISMISSAL OF THE COMPLAINT OR MAY RESULT IN THE ANSWER OR FIRST RESPONSIVE PLEADING BEING STRICKEN.	

Revised 06/2025

SUPERIOR COURT CIVIL CASE INFORMATION STATEMENT (CIS) INSTRUCTIONS

CIVIL CASE TYPE

Please select the appropriate civil case code and case type (e.g., **CODE - AADM** and **TYPE - Administrative Agency**) from the list below. Enter this information in the designated spaces on the Case Information Statement.

<p>APPEALS AADM - Administrative Agency ACER - Certiorari ACMB - Commission Marijuana Board ACCP - Court of Common Pleas AIAB - Industrial Accident Board APSC - Public Service Commission APCA - Purchaser Card JP Court Appeal AUIB -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 Board</p> <p>COMPLAINTS CABT - Abatement CASB - Asbestos CAAA - Auto Arb Appeal CMIS - Civil Miscellaneous CACT - Class Action CCON - Condemnation CCLD - 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Division (NCC ONLY) CDBT - Debt / Breach of Contract CDEJ - Declaratory Judgment CDEF - Defamation CEJM - Ejectment CATT - Foreign & Domestic Attachment CFJG - Foreign Judgment CFRD - Fraud Enforcement CINT - Interpleader CLEM - Lemon Law CLJB - Libel CMAL - Malpractice CMED - Medical Malpractice CPIN - Personal Injury CPIA - Personal Injury Auto CPRL - Products Liability CPRD - Property Damage CRPV - Replevin CSPD - Summary Proceedings Dispute CSCP - Transfer from CCP CCHA - Transfer from Chancery CWCC - Wrongful Conviction Compensation</p> <p>MASS TORT CABI - Ability Cases CBEN - Benzene Cases CFAR - Farxiga Cases CFIB - FiberCel Cases CHON - Honeywell Cases COMON - Monsanto Cases COCC - Occidental Chemical Cases CPML - Pelvic Mesh Cases CPLX - Plavix Cases CPPI - PPI Cases CPQI - Paraquat Cases CTAL - Talc Cases CTAX - Taxotere Cases CXAR - Xarelto Cases CZAN - Zantac Cases</p>	<p>INVOLUNTARY COMMITMENTS INVC - Involuntary Commitment</p> <p>MISCELLANEOUS MAGM - AG Motion - Civil/Criminal Investigations * MADB - Appeal from Disability Board * MAFF - Application for Forfeiture MAAT - Appointment of Attorney MGAK - Appointment of Guardianship MCED - Cease and Desist Order MCON - Civil Contempt/Capias MCVF - Civil Penalty MSOJ - Compel Satisfaction of Judgment MSAM - Compel Satisfaction of Mortgage MCTO - Consent Order MIND - Destruction of Indicia of Arrest * MESP - Excess Sheriff Proceeds MHAC - Habeas Corpus MTOX - Hazardous Substance Cleanup MFDR - Intercept of Forfeited Money MISS - Issuance of Subpoena MLEX - Lien Extension MMAN - Mandamus MWIT - Material Witness * MWOT - Material Witness - Out of State MRAT - Motion for Risk Assessment MRDP - Petition for Return of Property MCRO - Petition Requesting Order MROD - Road Resolution MSEL - Sell Real Estate for Property Tax MSEM - Set Aside Satisfaction of Mortgage MSSS - Set Aside Sheriff's Sale MSET - Structured Settlement MTAX - Tax Ditches MRFF - Tax Intercept MLAG - Tax Lagoons MVAC - Vacate Public Road MPOS - Writ of Possession MPRO - Writ of Prohibition</p> <p>MORTGAGES MCOM - Mortgage Commercial MMED - Mortgage Mediation MORT - Mortgage Non-Mediation (Res.)</p> <p>MECHANICS LIENS LIEN - Mechanics Lien</p>
--	--

* Not eFiled

DUTY OF THE PLAINTIFF

Each plaintiff/counsel shall complete the attached Civil Case Information Statement (CIS) and file with the complaint.

DUTY OF THE DEFENDANT

Each defendant/counsel shall complete the attached Civil Case Information Statement (CIS) and file with the answer and/or first responsive pleading.

한국법학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연도	일련번호	제목
2016	민-16-01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에 관한 법적 규율의 통합 방안
	민-16-02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규율 정비 방안
	상-16-01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16-02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민-17-01	개정 민법(여행계약) 시행에 따른 여행표준약관의 개선 방안
	민-17-0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개념 및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상-17-01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결권 제도 최근 논의 동향
	상-17-02	소수주주 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2018	민-18-01	민법상 변동 법정이율제 도입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
	민-18-02	가격하락손해 인정기준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연구
	상-18-01	최근 해외 보험법 개정 동향
	상-18-02	다중대표소송 관련 최근 논의 동향
2019	민-19-01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上)
	민-19-02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下)
	민-19-03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기준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연구
	상-19-01	상법상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규정 정비 필요성에 관한 연구
	상-19-02	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 제도의 한국 상법에의 도입에 관한 연구
	상-19-03	국내 도산절차에서의 ADR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2020	민-20-01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도입 검토
	민-20-0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민사소송 체계 정비
	민-20-03	위법하게 취득한 이득 반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구
	상-20-01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판례 분석 및 활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상-20-02	상법상 소멸시효 제도의 개선 방향 검토 - 민법 개정논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20-03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효력 및 한계에 대한 연구
	상-20-04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개인파산제도 및 개인회생제도 활성화 방안

연도	일련번호	제목
2021	민-21-01	민법상 유치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21-02	민법상 인격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민-21-03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연구
	민-21-04	민법 제482조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21-01	소비자의 집단적 구제 절차에 관한 EU 지침(2020)의 내용과 시사점
	상-21-02	상법상 물적분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물적분할제도의 쟁점을 중심으로
	상-21-03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서 상사신탁의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상-21-04	2020년 개정상법의 회사법 실무에의 영향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22	민-22-01	관습법에 대한 법원의 조사 방법과 관습법의 실효에 관한 연구
	민-22-02	가상자산에 대한 보전 및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민-22-03	집합건물법의 조문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민-22-04	면접교섭권 확대를 위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대한 개정 검토
	민-22-05	불법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에 관한 연구
	민-22-06	신체장애에 따른 장애평가기준에 대한 연구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의 대체가능성을 중심으로 -
	상-22-01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연구
	상-22-02	주주행동주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상-22-03	금융신기술을 활용한 명의개서 대리인의 자격 요건에 관한 연구
	상-22-04	ESG 관련 해외 입법례 연구
	상-22-05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개념 정립 및 합리적인 상법 규율 방안 연구
	상-22-06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상법 보험편(제638조의3)의 개정 방안
2023	민-23-01	사정변경의 법리에 대한 연구
	민-23-02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
	민-23-03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
	민-23-04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 검토
	민-23-05	대리모계약에서의 모자관계 결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민-23-06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중심으로 -
	상-23-0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연구 - 최근 입법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상-23-02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
	상-23-03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연도	일련번호	제목
	상-23-04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방안 연구
	상-23-05	SPAC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상-23-06	ESG 경영 관련 기업의 책임과 이사의 의무
2024	민-24-01	배우자 상속분 확대를 위한 개정 검토
	민-24-02	전자인격의 도입에 관한 연구
	민-24-0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민-24-04	반려동물에 관한 민사적 쟁점에 대한 연구
	민-24-05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연구
	민-24-06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상-24-01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에 관한 법제 연구
	상-24-02	D&O보험과 회사보상계약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상-24-03	상호보험(相互保險), 공제(共濟) 준용규정(상법 제664조)의 합리적 정비방안
	상-24-04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전자문서법 개정방안 연구
	상-24-05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상-24-06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방안
2025	민-25-01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제한에 대한 검토
	민-25-0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분쟁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민-25-03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에 대한 검토 - 현행 의료법 체계와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상-25-01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연구
	상-25-02	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해외 입법례 연구 - 상사법원을 중심으로 -
	상-25-03	손해사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학원 발간 현안보고서 목록

연도	일련번호	제목
2022	제2022-01호	NFT의 현황과 쟁점
	제2022-02호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
	제2022-03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비준과 우리의 현황·개선방안
	제2022-04호	물적분할에 대한 상법 개정 방향
	제2022-05호	유채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최근의 동향
	제2022-06호	경영판단원칙의 법제화에 관한 시론
	제2022-07호	보험료와 금융환경변화에 관한 법적 연구
	제2022-08호	미혼부(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연구
	제2022-09호	긴급조치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제2022-10호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한 소고
	제2022-11호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관련 법률문제
	제2022-12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최근의 이슈
2022년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합본)		
2023	제2023-01호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에 관한 연구
	제2023-02호	퍼블리시티권의 도입과 전망
	제2023-03호	회사 법인격의 형해화에 관한 판례 동향
	제2023-04호	21대 국회 인공지능 관련 법안 현황 및 쟁점
	제2023-05호	실손의료보험의 운영현황과 쟁점에 관한 검토
	제2023-06호	친권 개념의 변화 - 이혼한 부모의 공동친권을 중심으로 -
	제2023-07호	학교법인의 도산 관련 쟁점
	제2023-08호	제사주재자의 결정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과 쟁점
	제2023-09호	'디지털자산 및 사법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개관
	제2023-10호	프랑스의 양육비이행제도
	제2023-11호	인공지능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 검토
	제2023-12호	노란봉투법에 관한 쟁점과 동향
2023년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합본)		

연도	일련번호	제목
2024	제2024-01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배경과 세부내용의 검토
	제2024-02호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사정변경과 불안의 항변권
	제2024-03호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및 법적 쟁점
	제2024-04호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폐지와 체벌금지법의 도입 필요성
	제2024-05호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제2024-06호	제3자를 위한 계약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을 중심으로 -
	제2024-07호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이슈
	제2024-08호	유류분 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2024-09호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제2024-10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도입 방안 검토
	제2024-11호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
	제2024-12호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검토 -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두36800)을 중심으로 - 2024년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합본)
2025	제2025-01호	2024년 상법 판례 정리
	제2025-02호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을 중심으로 -
	제2025-03호	보험계약재매입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의 현황
	제2025-04호	임차권등기 의무화에 관한 논의
	제2025-05호	한국형 CBDC 프로젝트 한강의 법적 쟁점
	제2025-06호	프랑스의 법정벌거제도

한국법학원 연구보고서 상-25-02

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해외 입법례 연구
- 상사법원을 중심으로 -

2025년 6월 28일 인쇄

2025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 기 수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길 32, 2층

전화 : 02-752-7481/02-753-6002, Fax : 02-773-0823

e-mail : ksl@lawsociety.or.kr

인쇄 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 전화 02-2275-8106

종이책 ISBN 979-11-992417-8-7 (93360)

전자책 ISBN 979-11-992417-9-4 (95360)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90길 32, 2층
전화 : (02) 753-6002, 752-7481 팩스 : (02) 773-0823
홈페이지 : www.lawsociety.or.kr

